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12. 20.(수) 12:00	 통계청 법무부
	배포일시	2017. 12. 19.(화) 14:00	
	담당부서	통계청 고용통계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담당자	통계청 과 장: 빈현준(042-481-2264) 사 무 관: 박소현(042-481-2339) 법무부 과 장: 강성환(02-2110-4108) 서 기 관: 반재열(02-2110-4106)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고용·교육·주거 및 생활환경·소득과 소비 ·자녀교육·체류사항·비전문취업·유학생)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1만명)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4천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7개 부문(기본 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과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 D-4-1, 7)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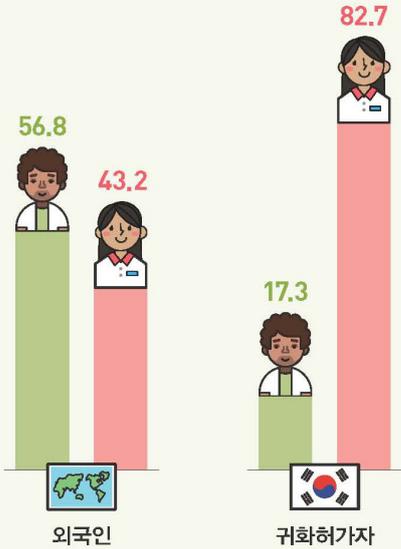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 처음 실시한 조사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조사개요』 참조가 필요
 - 모집단은 2017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이민자 중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거주한 상주인구 기준
 - 이민자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
 -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불법체류자들은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통계 작성에서 제외
 - 귀화허가자란 외국인으로 법무부로부터 한국으로 귀화를 허가 받은 자를 의미(국적법 4조~8조에 해당)
 - 본 조사는 귀화허가자 중 최근 5년 이내(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5월 15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
 - 통계표에 2016년 숫자가 있는 경우는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결과를 상주인구 기준으로 재집계하여 만든 것으로 2016년 10월 발표 하였던 『2016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된 것으로 전체 수치와 통계표 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숫자 없음, 「0」은 단위 미만을 나타냄
-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8년)와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2007년) 기준을 적용함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세부 통계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해 제공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상주인구 | 성별

■ 남자 ■ 여자 단위:%



고용

1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2 임금근로자의 직장만족도

■ 외국인 ■ 귀화허가자 단위:%

60.9



외국인

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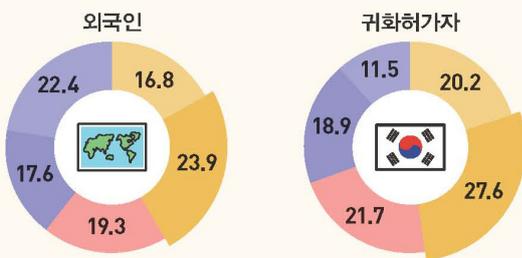


귀화허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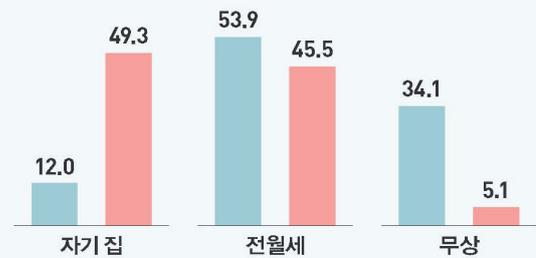
자녀교육 | 자녀 학교에 참여 정도

■ 적극적으로 참여 ■ 참여하는 편임 ■ 보통 ■ 참여하지 않는 편임 ■ 전혀 참여하지 않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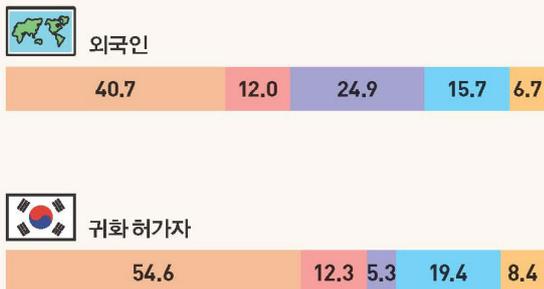
주거 및 생활환경 | 점유형태

■ 외국인 ■ 귀화허가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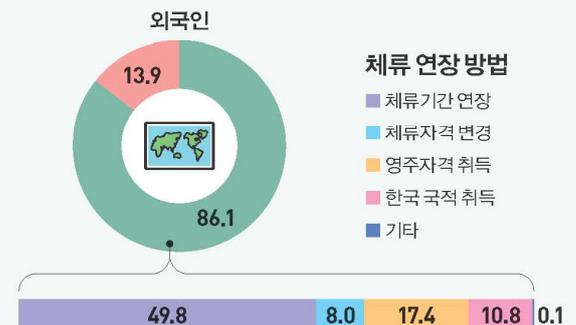
소득과 소비 | 소득대비 지출 비율

■ 생활비 ■ 주거비 ■ 국내외송금 ■ 저축 ■ 기타 단위:%



체류사항 | 계속 체류 희망 및 연장방법

■ 계속 체류 희망 ■ 계속 체류 희망하지 않음 단위:%



목 차

□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요약	1
□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4
I. 15세 이상 국내 상주 이민자 특성	4
1. 15세 이상 국내 상주인구	4
2. 이민자 가구 특성	7
II. 고용	9
3. 경제활동인구	9
4. 취업자	11
5. 임금근로자	20
6. 실업자	27
7.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29
III. 교육	30
8.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유·무 및 목적(복수응답)	30
9. 한국에서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복수응답)	31
IV. 주거 및 생활환경	33
10. 거쳐종류 및 점유형태	33
11. 전세보증금 규모별 전세 거주자	34
12. 월세 보증금 및 월세액 규모별 월세 거주자	34
13.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 유·무 및 이동 지역	36
14.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	37
V. 소득과 소비	38
15.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	38
16. 연간 해외 송금 횟수	39
17. 연간 해외 송금액	40
18. 총소득대비 지출부문별 구성비	41
19.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및 유형(복수응답)	42
20.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무	43

목 차

VI. 자녀교육	44
21.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서 어려웠던 사항(복수응답)	44
22. 자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참여 정도	45
23. 소득대비 자녀 교육비의 부담 정도	46
24.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 종류	46
VII. 체류사항	47
25. 한국 체류기간	47
26.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연장방법	47
VIII.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48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상주인구(만 15세 이상)	48
28. 해외 취업지로 한국 선택 이유	49
29.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	50
30. 지난 1년간 한국 내 직장에서 경험한 사항들(복수응답)	50
31. 지난 1년간 경험한 부상의 주된 원인 및 치료비 지불방법	51
32. 이전 직장 퇴사 사유	51
IX. 유학생(D-2, D-4-1, D-4-7) 체류자격 외국인	52
33. 유학생 체류자격 상주인구(만 15세 이상)	52
34.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1순위)	53
35.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	53
36. 한국에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 방법(1순위)	54
37.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5
38. 졸업 후 향후 계획	55
<input type="checkbox"/> 통계표	57
<input type="checkbox"/> 부록	93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요약)

1.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17년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상주인구 기준)는 83만 4천명(고용률 68.1%),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3만 4천명(고용률 64.1%)임
 - * '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은 61.3%
- 전년대비 외국인 취업자는 1천명 감소(-1.0%), 고용률은 1.5%p 하락
-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이 가장 많음
 -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한국계중국인 비중은 43.7%(36만 5천명), 귀화허가자 취업자 중 한국계중국인 비중은 37.6%(1만 3천명)임
-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음(외국인: 45.9%, 귀화허가자: 38.5%)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외국인: 59.1%, 귀화허가자: 47.0%)
- 직무수준별로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가장 많이 종사(외국인: 51.0%, 귀화허가자: 51.9%)
- (외국인 임금) 전년대비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중은(46.5%→57.3%) 10.8%p 상승하고, 『2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임금근로자 비중(53.5%→42.7%)은 10.8%p 하락
- (만족도) 임금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외국인이 60.9%, 귀화허가자가 54.2%임
 - 세부 항목별로는 작업장 청결 및 안전정도(외국인: 58.9%, 귀화허가자: 56.7%), 한국인 직장 동료와의 관계(외국인: 64.7%, 귀화허가자: 65.3%), 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관계(외국인: 63.8%, 귀화허가자: 60.9%)에서 만족도가 높음

2. 체류실태

- (국적) '17년 5월 기준, 국내에 체류(상주인구 기준)하는 외국인(40.0%)과 귀화허가자(38.7%) 모두 『한국계중국』이 가장 많음

<국적별 국내 상주인구 비중>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아시아 이외
		아시아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외국인	100.0%	91.8%	40.0%	11.5%	10.9%	29.3%	8.2%
귀화허가자*	100.0%	98.7%	38.7%	14.0%	31.7%	14.4%	1.3%

*귀화허가자는 귀화 이전 국적을 의미

- (교육) 한국에서 받은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에 대해 외국인은 『없음』(41.4%), 귀화허가자는 『한국어 교육』(47.4%)이 가장 많음
 - 받고 싶은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는 외국인(38.8%)과 귀화허가자(32.4%) 모두 『한국어 교육』임
- (총소득)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이 외국인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2.2%)이 가장 많고 귀화허가자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5.3%)이 가장 많음
- (해외 송금) 해외에 송금하는 외국인은 40.3%, 귀화허가자는 21.8%임
 - 연간 송금 횟수의 경우 외국인은 『연 12회 이상』(22.3%), 귀화허가자는 『연 2회』(5.7%)가 가장 많음
 - 연간 송금액의 경우 외국인은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25.1%) 귀화허가자는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30.4%)이 가장 많음
- (자녀 교육)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의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참여정도가 외국인은 40.7%, 귀화허가자는 47.8%임
- (계속 체류)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의 86.1%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하며, 체류 연장방법으로는 『체류기간 연장』(49.8%), 『영주자격 취득』(17.4%), 『한국 국적 취득』(10.8%) 순으로 많음

3. 비전문취업(E-9) 외국인

- (국적) '17년 5월 기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 (14.5%)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 (13.2%), 『인도네시아』 (11.4%), 『네팔』 (10.6%), 『필리핀』 (9.7%) 순으로 많음
- (산업) 산업별로는 취업자의 82.5%가 『광·제조업』에 종사
- (한국 선택 이유)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 (73.1%)가 가장 많고, 『작업환경이 좋아서』 (10.4%) 순으로 많음
- (부상 경험 및 치료비) 지난 1년간 취업자의 6.1%가 부상을 경험하였고, 부상의 주된 원인은 『실수로』 (70.1%)가 가장 많고, 『한국말을 몰라서』 (11.5%) 순으로 많음
 - 부상 치료비의 지불방법으로는 『사업주 전액 부담』 (40.8%)이 가장 많고, 『산업재해 보상금』 (29.3%), 『기타』 (29.9%) 순으로 많음

4. 유학생(D-2, D-4-1,7) 외국인

- (국적) '17년 5월 기준, 유학생(D-2, D-4-1, 7)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8.5%)이 가장 많고, 『베트남』 (18.2%) 순으로 많음
- (한국 선택 이유)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는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 (23.4%)가 가장 많고,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21.6%), 『기타』 (13.6%) 순으로 많음
- (전공)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은 『사회과학』 (30.8%)이 가장 많고, 『교육, 예술 및 인문학』 (17.0%), 『어학연수』 (16.5%) 순으로 많음
- (학교 만족도)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유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6.0%)이 가장 높고, 『약간 만족』 (39.0%), 『보통』 (12.8%) 순으로 높음

I. 15세 이상 국내 상주 이민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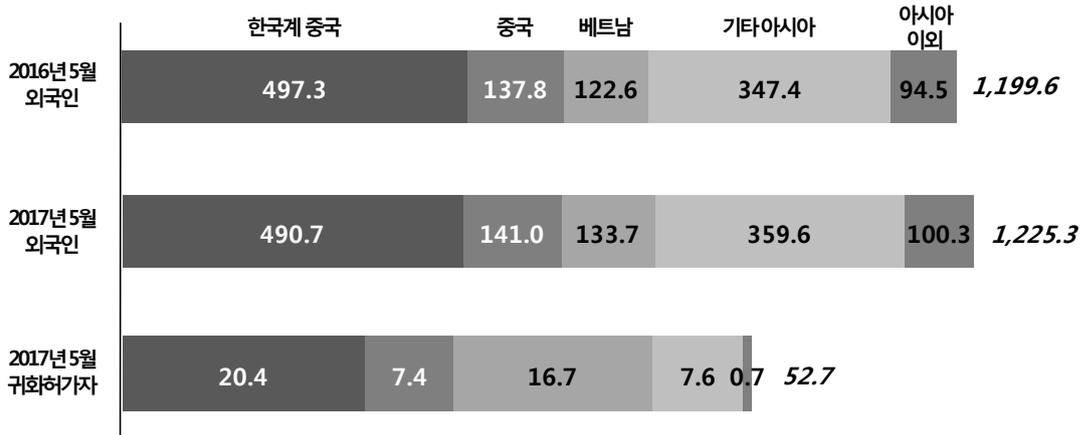
1. 15세 이상 국내 상주인구

◇ 국내 상주 외국인은 122만 5천명,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5만 3천명

- (이민자) '17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이민자(상주인구 기준)는 127만 8천명으로, 이 중 남자는 70만 5천명(55.1%), 여자는 57만 3천명(44.9%)임
- 이민자 중 외국인(상주인구 기준)은 122만 5천명이고,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상주인구 기준)는 5만 3천명임

<국적별 이민자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성별·국적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아시아 이외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이민자 전체 (구성비)	1,278.0 (100.0)	1,177.0 (92.1)	511.0 (40.0)	148.4 (11.6)	150.4 (11.8)	367.2 (28.7)	101.0 (7.9)
남자 (구성비)	704.8 (100.0)	650.5 (92.3)	267.7 (38.0)	57.6 (8.2)	64.5 (9.2)	260.8 (37.0)	54.3 (7.7)
여자 (구성비)	573.2 (100.0)	526.5 (91.9)	243.4 (42.5)	90.8 (15.8)	85.9 (15.0)	106.4 (18.6)	46.7 (8.1)
외국인 (구성비)	1,225.3 (100.0)	1,124.9 (91.8)	490.7 (40.0)	141.0 (11.5)	133.7 (10.9)	359.6 (29.3)	100.3 (8.2)
귀화허가자* (구성비)	52.7 (100.0)	52.0 (98.7)	20.4 (38.7)	7.4 (14.0)	16.7 (31.7)	7.6 (14.4)	0.7 (1.3)

*귀화허가자는 귀화 이전 국적을 의미

- (외국인) '17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상주인구 기준)은 122만 5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6천명(2.1%) 증가
 - 이 중 남자 69만 6천명(56.8%), 여자 53만명(43.2%)으로 전년대비 1만 1천명(1.7%), 1만 4천명(2.8%) 각각 증가
 - 국적별로 『한국계중국』은 전년대비 7천명(-1.3%) 감소하였으나, 『베트남』은 1만 1천명(9.1%), 『기타 아시아』는 1만 2천명(3.5%) 증가

<성별·국적별 외국인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한국계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아시아 이외
'16년 5월(A)	1,199.6	1,105.1	497.3	137.8	122.6	347.4	94.5
(구성비)	(100.0)	(92.1)	(41.5)	(11.5)	(10.2)	(29.0)	(7.9)
남자	684.4	633.2	267.1	55.6	58.7	251.8	51.2
(구성비)	(100.0)	(92.5)	(39.0)	(8.1)	(8.6)	(36.8)	(7.5)
여자	515.2	471.9	230.2	82.2	63.9	95.6	43.3
(구성비)	(100.0)	(91.6)	(44.7)	(16.0)	(12.4)	(18.6)	(8.4)
'17년 5월(B)	1,225.3	1,124.9	490.7	141.0	133.7	359.6	100.3
(구성비)	(100.0)	(91.8)	(40.0)	(11.5)	(10.9)	(29.3)	(8.2)
남자	695.7	641.5	261.2	56.4	64.4	259.6	54.1
(구성비)	(100.0)	(92.2)	(37.5)	(8.1)	(9.3)	(37.3)	(7.8)
여자	529.6	483.4	229.5	84.6	69.3	100.0	46.2
(구성비)	(100.0)	(91.3)	(43.3)	(16.0)	(13.1)	(18.9)	(8.7)
증감(B-A)	25.7	19.8	-6.6	3.2	11.1	12.2	5.8
증감률	2.1	1.8	-1.3	2.3	9.1	3.5	6.1

- (귀화허가자) '17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상주인구 기준)은 5만 3천명으로, 이 중 남자는 9천명(17.3%), 여자는 4만 4천명(82.7%)임
 - 귀화허가자의 귀화 전 국적은 『한국계중국』 38.7%, 『베트남』 31.7%임

<귀화 전 국적별 귀화허가자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한국계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아시아 이외
전체	52.7	52.0	20.4	7.4	16.7	7.6	0.7
(구성비)	(100.0)	(98.7)	(38.7)	(14.0)	(31.7)	(14.4)	(1.3)

□ (거주 지역) 외국인(39.1%)과 귀화허가자(34.0%) 모두 『경기·인천』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

○ 외국인 63.3%, 귀화허가자의 56.0%가 『수도권』에 거주

<거주 지역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남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
이민자	전체	1,278.0	805.2	308.1	497.1	472.8	144.1	131.5	80.7	82.8	33.8
	(구성비)	(100.0)	(63.0)	(24.1)	(38.9)	(37.0)	(11.3)	(10.3)	(6.3)	(6.5)	(2.6)
외국인	전체	1,225.3	775.6	296.4	479.2	449.6	137.7	125.9	76.8	77.5	31.7
	(구성비)	(100.0)	(63.3)	(24.2)	(39.1)	(36.7)	(11.2)	(10.3)	(6.3)	(6.3)	(2.6)
귀화 허가자	전체	52.7	29.5	11.6	17.9	23.2	6.4	5.5	3.9	5.3	2.0
	(구성비)	(100.0)	(56.0)	(22.0)	(34.0)	(44.0)	(12.1)	(10.4)	(7.4)	(10.1)	(3.8)

□ (연령) 외국인은 20대 이하(30.4%)가, 귀화허가자는 30대(36.1%)가 가장 많이 국내 거주

<연령대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이민자	전체	1,278.0	388.1	345.8	211.8	205.1	127.2
	(구성비)	(100.0)	(30.4)	(27.1)	(16.6)	(16.0)	(10.0)
외국인	전체	1,225.3	372.1	326.8	203.8	199.2	123.4
	(구성비)	(100.0)	(30.4)	(26.7)	(16.6)	(16.3)	(10.1)
귀화허가자	전체	52.7	16.0	19.0	8.0	6.0	3.7
	(구성비)	(100.0)	(30.4)	(36.1)	(15.2)	(11.4)	(7.0)

□ (체류자격) 외국인 중 『재외동포(F-4)』(22.7%)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20.9%), 『방문취업(H-2)』(16.4%) 순임

<체류자격별 외국인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D-4-1, 7)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외국인	전체	1,225.3	255.9	201.5	38.5	98.6	277.9	102.7	108.5	141.7
	(구성비)	(100.0)	(20.9)	(16.4)	(3.1)	(8.0)	(22.7)	(8.4)	(8.9)	(11.6)

2. 이민자 가구 특성

◇ 외국인이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 귀화허가자는 3.6명

- (배우자) 배우자 있는 외국인은 78만명(63.6%)이고, 귀화허가자는 4만 3천명(82.4%)임
- 배우자가 『국내 함께 거주』 하는 외국인은 41.9%이고, 귀화허가자는 80.3%임

<배우자 유·무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배우자 있음	배우자의 거주지별			배우자 없음
				국외 거주	국내 함께 거주	국내 따로 거주	
외국인	전체	1,225.3	779.8	247.7	513.5	18.7	445.4
	(구성비)	(100.0)	(63.6)	(20.2)	(41.9)	(1.5)	(36.4)
귀화 허가자	전체	52.7	43.4	0.5	42.3	0.6	9.4
	(구성비)	(100.0)	(82.4)	(0.9)	(80.3)	(1.1)	(17.8)

- (자녀)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73만 8천명(60.2%)이고 귀화허가자는 4만 4천명(83.7%)임
- 『자녀 모두 국내 거주』 하는 외국인은 27.9%이고, 귀화허가자는 73.8%임
- 평균 자녀 수가 외국인은 1.6명, 귀화허가자는 1.7명임

<자녀 유·무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명, 천명, %)

		15세 이상 인구	평균 자녀 수	자녀 있음	자녀의 거주지별			자녀 없음
					자녀 모두 국내 거주	자녀 일부 국내 나머지 국외 거주	자녀 모두 국외 거주	
외국인	전체	1,225.3	1.6	737.5	341.9	83.7	311.9	487.7
	(구성비)	(100.0)	-	(60.2)	(27.9)	(6.8)	(25.5)	(39.8)
귀화 허가자	전체	52.7	1.7	44.1	38.9	2.1	3.1	8.6
	(구성비)	(100.0)	-	(83.7)	(73.8)	(4.0)	(5.9)	(16.3)

□ (가구원 수) 외국인은 『2인 가구』 (29.1%)에 가장 많이 거주하며, 귀화허가자는 『4인 이상 가구』 (49.9%)에 가장 많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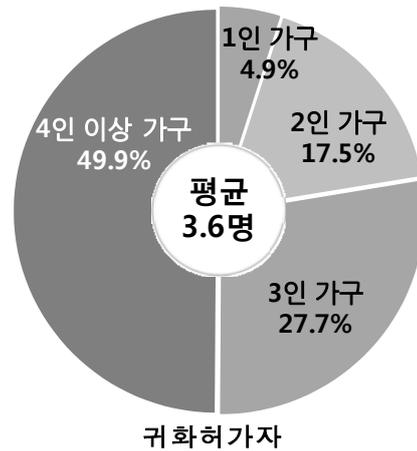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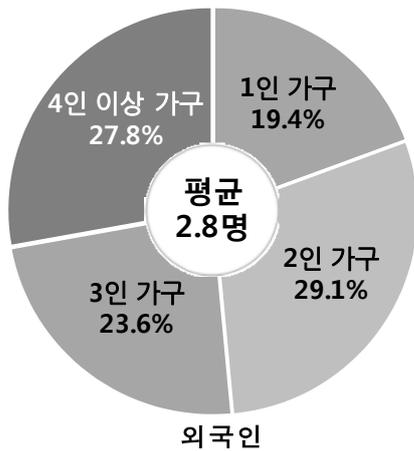
○ 평균 가구원 수가 외국인은 2.8명, 귀화허가자 3.6명임

<가구원 수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명, %)

		1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 수
외국인	전체	1,225.3	237.4	357.1	289.7	341.1	2.8
	(구성비)	(100.0)	(19.4)	(29.1)	(23.6)	(27.8)	-
귀화 허가자	전체	52.7	2.6	9.2	14.6	26.3	3.6
	(구성비)	(100.0)	(4.9)	(17.5)	(27.7)	(49.9)	-

<가구원 수별 이민자 국내 상주인구>



II. 고용

3.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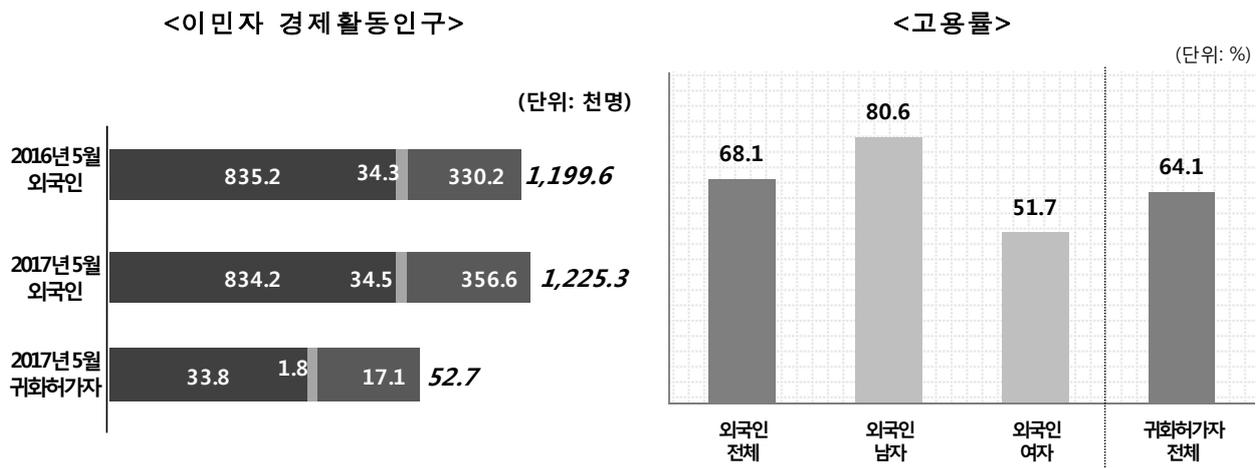
◇ 외국인 경제 활동인구는 86만 9천명, 귀화허가자는 3만 6천명

□ (경제활동인구) '17년 5월 기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86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천명(-0.1%) 감소

○ 외국인 경제활동참가율은 70.9%로 전년대비 1.6%p 하락

* '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63.6%

○ 귀화허가자 경제활동인구는 3만 6천명, 경제활동인구참가율은 67.6%임



<이민자 경제 활동인구>

(단위: 천명, %, %p)

구분	연월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이민자		1,278.0	904.3	868.0	36.3	373.7	70.8	67.9	4.0
	외국인	1,225.3	868.7	834.2	34.5	356.6	70.9	68.1	4.0
	남자	695.7	576.1	560.5	15.6	119.5	82.8	80.6	2.7
	여자	529.6	292.6	273.7	18.8	237.0	55.2	51.7	6.4
	귀화허가자	52.7	35.6	33.8	1.8	17.1	67.6	64.1	5.1
외국인 ¹⁾	'16년 5월(A)	1,199.6	869.5	835.2	34.3	330.2	72.5	69.6	3.9
	'17년 5월(B)	1,225.3	868.7	834.2	34.5	356.6	70.9	68.1	4.0
	증감(B-A)	25.7	-0.8	-1.0	0.2	26.4	-1.6	-1.5	0.1
	증감률	2.1	-0.1	-0.1	0.6	8.0	-	-	-
경제 활동 인구 조사 ²⁾	'16년 5월	43,387.0	27,455.0	26,450.0	1,005.0	15,932.0	63.3	61.0	3.7
	'17년 5월	43,735.0	27,828.0	26,824.0	1,003.0	15,907.0	63.6	61.3	3.6

1) 외국인 '16년 5월 자료는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상주인구모집단을 기초로 추계한 가중치를 이용 재집계한 결과

2) 『2017년 5월 고용동향』(2017.6.14. 공표, 통계청)에서 발취

- **(취업자)** 외국인 취업자는 83만 4천명으로 전년대비 1천명(-0.1%) 감소
 - 외국인 고용률은 68.1%로 전년대비 1.5%p 하락
 - 외국인 남자 취업자 56만 1천명, 여자 취업자 27만 4천명으로 남자 고용률 80.6%, 여자 고용률 51.7%임
 - 귀화허가자 취업자는 3만 4천명, 고용률 64.1%임
 - * 이민자 취업자(86만 8천명)은 '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2682만 4천명)의 3.2%에 해당
 - * '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은 61.3%

- **(실업자)** 외국인 실업자는 3만 5천명임
 - 외국인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1%p 증가
 - 외국인 남자 실업률 2.7%, 여자 실업률 6.4%임
 - 귀화허가자 실업자는 2천명으로 실업률은 5.1%임
 - * '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실업률은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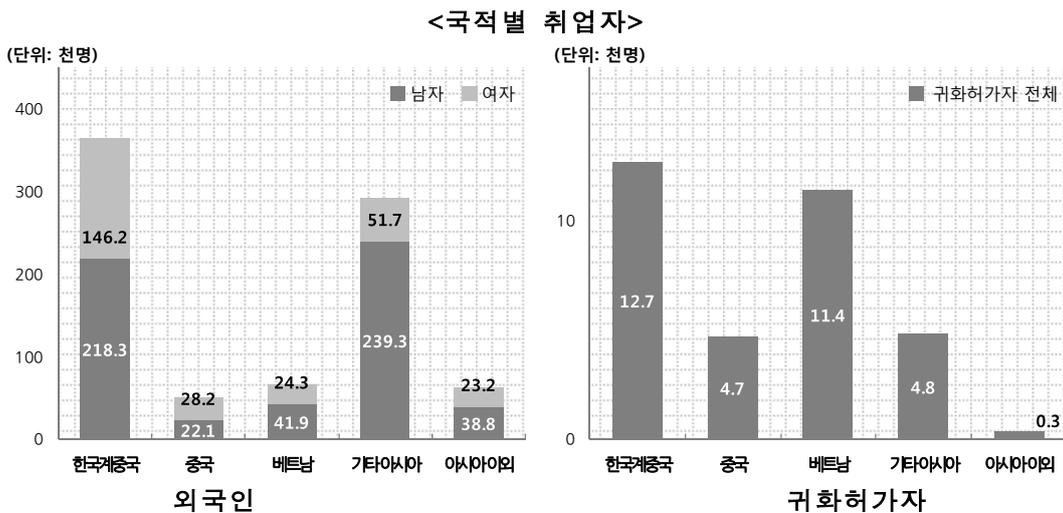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35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6천명(8.0%) 증가
 - 외국인 남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2만명, 여자 비경제활동인구는 23만 7천명임
 - 귀화허가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7천명임

4. 취업자

4-1. 국적별

◇ 취업자 중 『한국계중국』이 가장 많음

- (외국인) 국적별 취업자(83만 4천명)는 『한국계중국』이 36만 5천명(43.7%)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6만 6천명(7.9%)과 『중국』 5만명(6.0%) 등의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취업자는 『기타 아시아』가 6천명(1.9%), 『아시아 이외』가 5천명(9.5%) 증가하였으나, 『한국계중국』이 5천명(-1.5%), 『베트남』이 5천명(-6.4%), 『중국』이 2천명(-4.0%) 감소
- (귀화허가자) 국적별 취업자(3만 4천명)의 이전 국적은 『한국계중국』(1만 3천명, 37.6%)이 가장 많고, 『베트남』(1만 1천명, 33.7%), 『기타 아시아』(5천명, 14.2%) 등의 순으로 많음



<국적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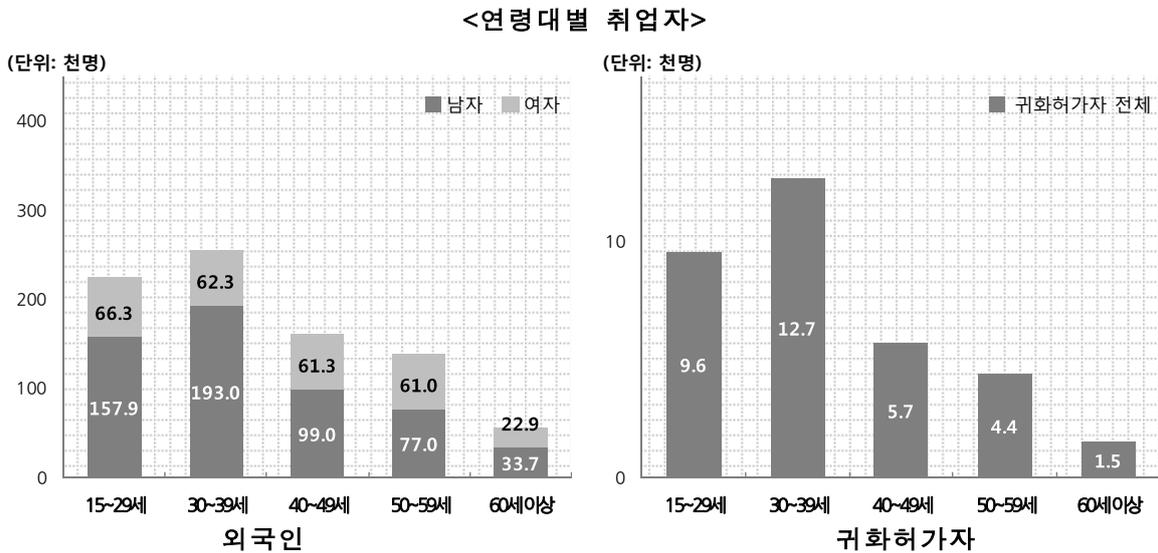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아시아	국적별				아시아 이외
			한국계 중국	중국	베트남	기타 아시아	
이민자	868.0	805.7	377.2	55.0	77.7	295.8	62.3
외국인	834.2	772.2	364.5	50.3	66.3	291.0	62.0
(구성비)	(100.0)	(92.6)	(43.7)	(6.0)	(7.9)	(34.9)	(7.4)
남자	560.5	521.7	218.3	22.1	41.9	239.3	38.8
여자	273.7	250.5	146.2	28.2	24.3	51.7	23.2
귀화허가자	33.8	33.5	12.7	4.7	11.4	4.8	0.3
(구성비)	(100.0)	(99.1)	(37.6)	(13.9)	(33.7)	(14.2)	(0.9)
외국인	835.2	778.6	369.9	52.4	70.8	285.5	56.6
'17년 5월(B)	834.2	772.2	364.5	50.3	66.3	291.0	62.0
증감(B-A)	-1.0	-6.4	-5.4	-2.1	-4.5	5.5	5.4
증감률	-0.1	-0.8	-1.5	-4.0	-6.4	1.9	9.5

4-2. 연령대별

◇ 취업자 중 『30대』가 가장 많음

- (외국인) 연령대별 취업자는 『30대』 (25만 5천명, 30.6%)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 (22만 4천명, 26.9%)와 『40대』 (16만명, 19.2%)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60세 이상』 과 『30대』 에서 1만 3천명(28.3%), 8천명(3.2%) 각각 증가 하였으나, 『20대 이하』 와 『50대』 에서 1만 1천명(4.7%), 9천명(-6.1%) 각각 감소
- (귀화허가자) 연령대별 취업자는 『30대』 (1만 3천명, 37.6%)가 가장 많고, 『20대 이하』 (1만명, 28.4%)와 『40대』 (6천명, 16.9%) 순으로 많음



<연령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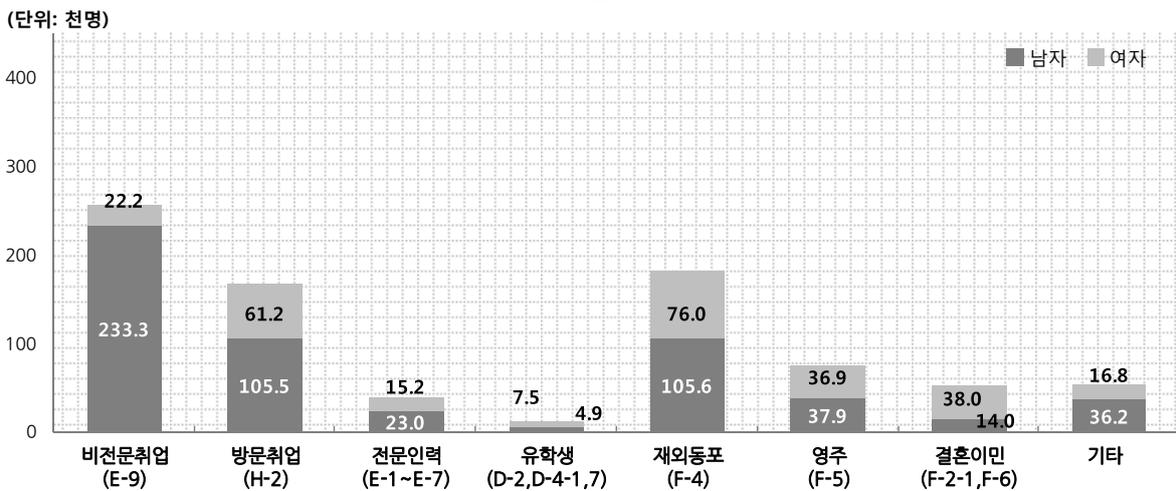
	취업자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이민자	868.0	233.8	267.9	166.0	142.3	58.0
외국인	834.2	224.2	255.2	160.3	137.9	56.6
(구성비)	(100.0)	(26.9)	(30.6)	(19.2)	(16.5)	(6.8)
남자	560.5	157.9	193.0	99.0	77.0	33.7
여자	273.7	66.3	62.3	61.3	61.0	22.9
귀화허가자	33.8	9.6	12.7	5.7	4.4	1.5
(구성비)	(100.0)	(28.4)	(37.6)	(16.9)	(13.0)	(4.4)
외국인	835.2	235.2	247.4	161.6	146.9	44.1
‘16년 5월(A)	834.2	224.2	255.2	160.3	137.9	56.6
‘17년 5월(B)	-1.0	-11.0	7.8	-1.3	-9.0	12.5
증감(B-A)	-0.1	-4.7	3.2	-0.8	-6.1	28.3
증감률						

4-3. 체류자격별

◇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소지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체류자격별 취업자는 『비전문취업』 (25만 6천명, 30.6%)이 가장 많고 『재외동포』 (18만 2천명, 21.8%), 『방문취업』 (16만 7천명, 20.0%) 순으로 많음
- 남자 취업자는 『비전문취업』 (23만 3천명)이 가장 많고 『재외동포』 (10만 6천명), 『방문취업』 (10만 6천명) 순임
- 여자 취업자는 『재외동포』 (7만 6천명)가 가장 많고 『방문취업』 (6만 1천명), 『결혼이민』 (3만 8천명) 순임
- 전년대비 『재외동포』 취업자는 3만 2천명(21.1%) 증가, 『방문취업』 은 2만 5천명(-13.2%) 감소

<체류자격별 취업자>



<체류자격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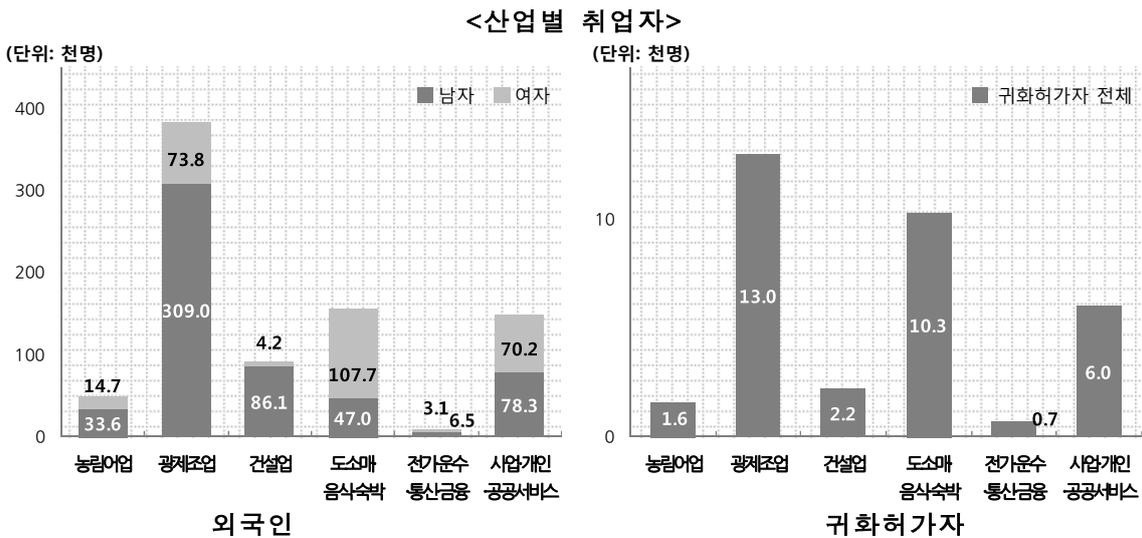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전문인력 (E-1~E-7)	유학생 (D-2, D-4-1, 7)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2-1, F-6)	기타
외국인	834.2	255.6	166.7	38.2	12.4	181.6	74.8	52.0	53.0
(구성비)	(100.0)	(30.6)	(20.0)	(4.6)	(1.5)	(21.8)	(9.0)	(6.2)	(6.4)
남자	560.5	233.3	105.5	23.0	4.9	105.6	37.9	14.0	36.2
여자	273.7	22.2	61.2	15.2	7.5	76.0	36.9	38.0	16.8
‘16년 5월(A)	835.2	257.8	192.0	39.6	11.2	149.9	73.9	54.6	56.3
‘17년 5월(B)	834.2	255.6	166.7	38.2	12.4	181.6	74.8	52.0	53.0
증감(B-A)	-1.0	-2.2	-25.3	-1.4	1.2	31.7	0.9	-2.6	-3.3
증감률	-0.1	-0.9	-13.2	-3.5	10.7	21.1	1.2	-4.8	-5.9

4-4. 산업별

◇ 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38만 2천명, 45.7%)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숙박업』(15만 5천명, 18.5%)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 8천명, 17.8%)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건설업』에서 1만 8천명(24.9%), 『농림어업』에서 3천명(6.9%)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에서 1만 9천명(-4.6%),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천명(-1.3%) 감소
- (귀화허가자) 산업별 취업자 중 『제조업』(1만 3천명, 38.5%)이 가장 많고, 『도소매·음식·숙박업』(1만명, 30.5%)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천명, 17.8%) 순으로 많음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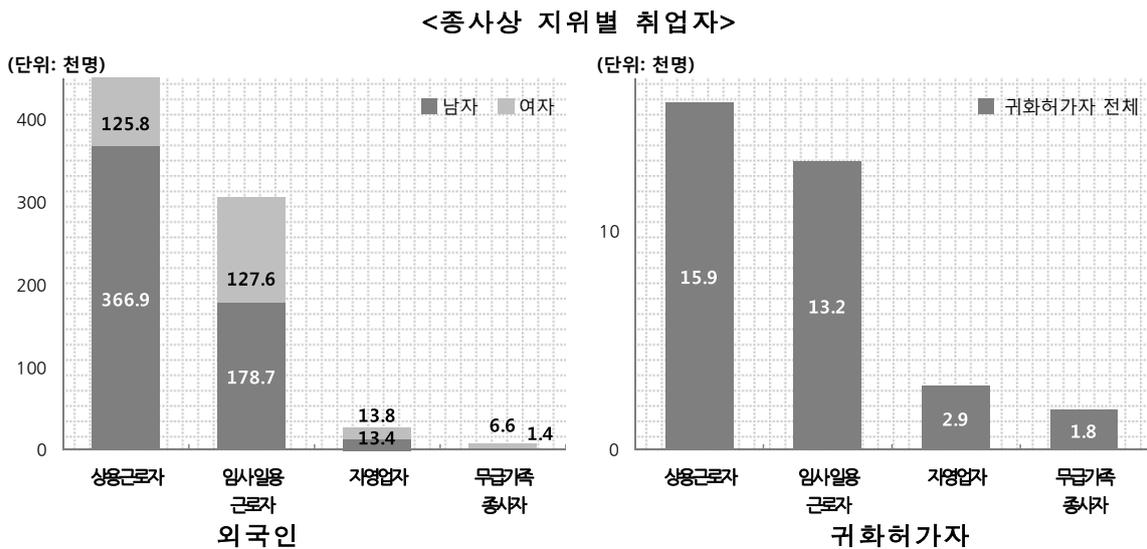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이민자	868.0	50.0	395.9	394.6	92.5	165.0	10.2	154.4
외국인	834.2	48.3	382.9	381.6	90.3	154.7	9.5	148.4
(구성비)	(100.0)	(5.8)	(45.9)	(45.7)	(10.8)	(18.5)	(1.1)	(17.8)
남자	560.5	33.6	309.0	307.8	86.1	47.0	6.5	78.3
여자	273.7	14.7	73.8	73.8	4.2	107.7	3.1	70.2
귀화허가자	33.8	1.6	13.0	13.0	2.2	10.3	0.7	6.0
(구성비)	(100.0)	(4.7)	(38.5)	(38.5)	(6.5)	(30.5)	(2.1)	(17.8)
외국인	835.2	45.2	400.7	400.2	72.3	156.7	11.1	149.1
'16년 5월(A)	834.2	48.3	382.9	381.6	90.3	154.7	9.5	148.4
'17년 5월(B)	증감(B-A)	3.1	-17.8	-18.6	18.0	-2.0	-1.6	-0.7
증감률	-0.1	6.9	-4.4	-4.6	24.9	-1.3	-14.4	-0.5

4-5. 종사상 지위별

◇ 취업자 중 『상용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는 『상용근로자』(49만 3천명, 59.1%)가 가장 많고, 『임시·일용근로자』(30만 6천명, 36.7%), 『비임금근로자』(3만 5천명, 4.2%)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임시·일용근로자』가 1만 9천명(6.8%), 『비임금근로자』가 2천명(5.7%) 증가하였으나, 『상용근로자』는 2만 2천명(-4.3%) 감소
- (귀화허가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는 『상용근로자』(1만 6천명, 47.0%)가 가장 많고, 『임시·일용근로자』(1만 3천명, 39.1%), 『비임금근로자』(5천명, 13.9%) 순으로 많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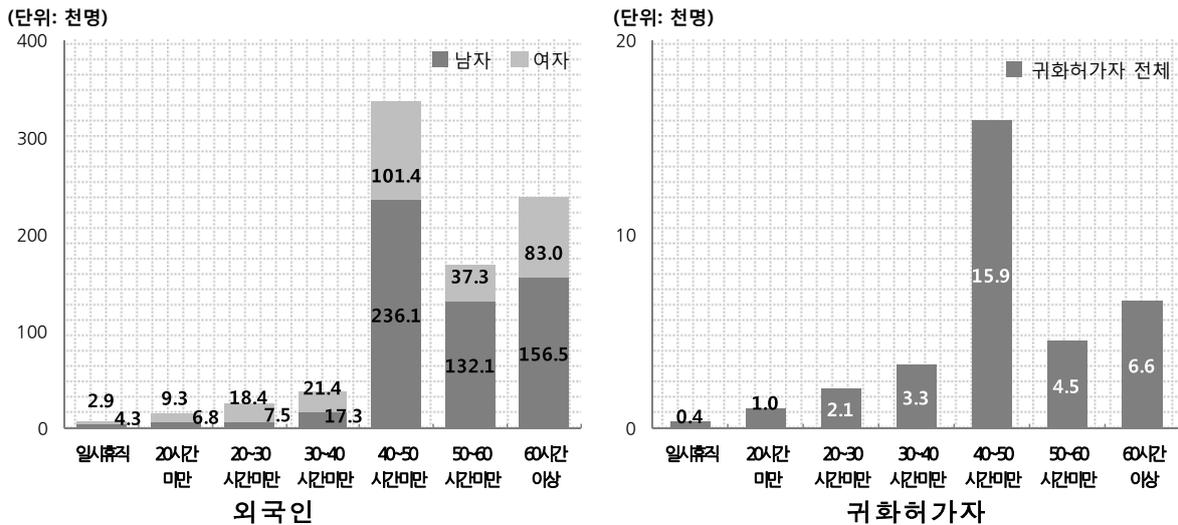
	취업자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이민자	868.0	828.1	508.6	319.5	39.9	30.1	9.8
외국인 (구성비)	834.2 (100.0)	799.0 (95.8)	492.7 (59.1)	306.3 (36.7)	35.2 (4.2)	27.2 (3.3)	8.0 (1.0)
남자	560.5	545.7	366.9	178.7	14.8	13.4	1.4
여자	273.7	253.3	125.8	127.6	20.4	13.8	6.6
귀화허가자 (구성비)	33.8 (100.0)	29.1 (86.1)	15.9 (47.0)	13.2 (39.1)	4.7 (13.9)	2.9 (8.6)	1.8 (5.3)
외국인	835.2	801.9	515.0	286.9	33.3	-	-
'16년 5월(A)	834.2	799.0	492.7	306.3	35.2	27.2	8.0
'17년 5월(B)	835.2	801.9	515.0	286.9	33.3	-	-
증감(B-A)	-1.0	-2.9	-22.3	19.4	1.9	-	-
증감률	-0.1	-0.4	-4.3	6.8	5.7	-	-

4-6. 취업시간대별

◇ 조사대상 1주간에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는 주당 『40시간 이상~50시간 미만』 (33만 8천명, 40.5%)이 가장 많고, 『60시간 이상』 (23만 9천명, 28.7%),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16만 9천명, 20.3%)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60시간 이상』 은 3만 1천명(14.8%),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은 5천명(14.2%) 증가하였으나,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은 2만 7천명(-13.5%) 감소
- (귀화허가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는 주당 『40시간 이상~50시간미만』 (1만 6천명, 47.0%)이 가장 많고, 『60시간 이상』 (7천명, 19.5%), 『50시간 이상~60시간 미만』 (5천명, 13.3%) 순으로 많음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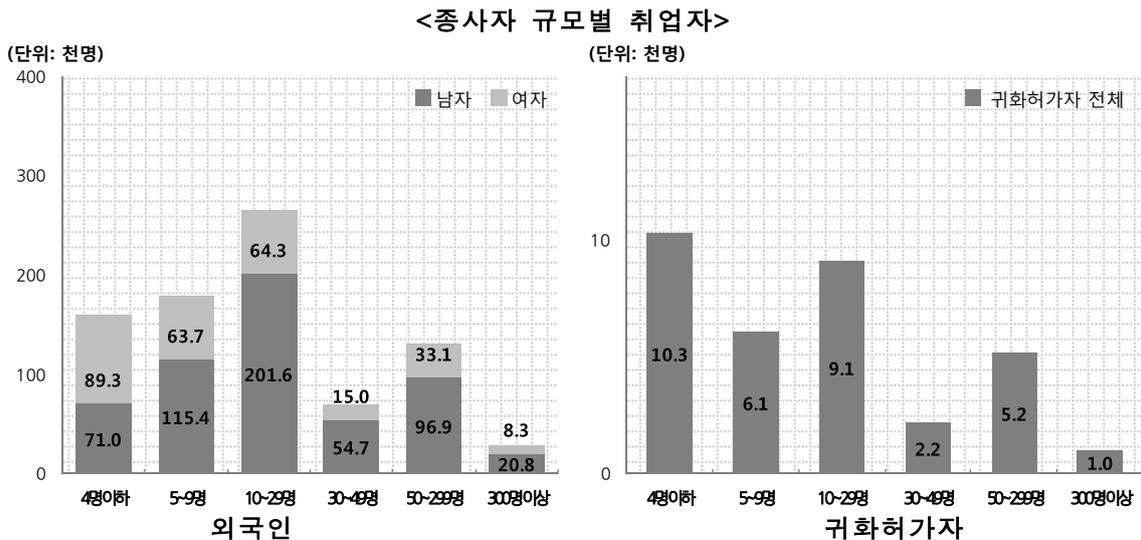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취업시간대별 (%)						
		일시휴직	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이민자	868.0	7.5	17.1	28.0	42.0	353.4	173.9	246.0
외국인 (구성비)	834.2 (100.0)	7.1 (0.9)	16.1 (1.9)	25.9 (3.1)	38.7 (4.6)	337.5 (40.5)	169.4 (20.3)	239.4 (28.7)
남자	560.5	4.3	6.8	7.5	17.3	236.1	132.1	156.5
여자	273.7	2.9	9.3	18.4	21.4	101.4	37.3	83.0
귀화허가자 (구성비)	33.8 (100.0)	0.4 (1.2)	1.0 (3.0)	2.1 (6.2)	3.3 (9.8)	15.9 (47.0)	4.5 (13.3)	6.6 (19.5)
외국인	835.2	8.2	19.9	29.4	33.9	339.3	195.9	208.6
'17년 5월(B)	834.2	7.1	16.1	25.9	38.7	337.5	169.4	239.4
증감(B-A)	-1.0	-1.1	-3.8	-3.5	4.8	-1.8	-26.5	30.8
증감률	-0.1	-13.4	-19.1	-11.9	14.2	-0.5	-13.5	14.8

4-7. 종사자 규모별

◇ 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외국인은 『10명~29명』, 귀화허가자는 『4명 이하』 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근무함

- (외국인)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는 『10명 이상~29명 이하』 (26만 6천명, 31.9%)가 가장 많고, 『5명 이상~9명 이하』 (17만 9천명, 21.5%), 『4명 이하』 (16만명, 19.2%)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10명 이상~29명 이하』 는 3만 5천명(14.9%), 『5명 이상~9명 이하』 는 1만 4천명(8.7%) 증가하였으나, 『30명 이상~49명 이하』 는 3만 5천명(-33.2%), 『4명 이하』 1만 8천명(-9.9%) 감소
- (귀화허가자) 종사자규모별 취업자는 『4명 이하』 (1만명, 30.5%)가 가장 많고, 『10명 이상~29명 이하』 (9천명, 26.9%), 『5명 이상~9명 이하』 (6천명, 18.0%) 순으로 많음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4명 이하	5~9명	10~29명	30~49명	50~299명	300명 이상
이민자		868.0	170.6	185.2	274.9	71.9	135.2	30.1
	외국인 (구성비)	834.2 (100.0)	160.3 (19.2)	179.1 (21.5)	265.9 (31.9)	69.7 (8.4)	130.0 (15.6)	29.1 (3.5)
	남자	560.5	71.0	115.4	201.6	54.7	96.9	20.8
	여자	273.7	89.3	63.7	64.3	15.0	33.1	8.3
	귀화허가자 (구성비)	33.8 (100.0)	10.3 (30.5)	6.1 (18.0)	9.1 (26.9)	2.2 (6.5)	5.2 (15.4)	1.0 (3.0)
외국인	'16년 5월(A)	835.2	178.0	164.8	231.4	104.4	134.9	21.8
	'17년 5월(B)	834.2	160.3	179.1	265.9	69.7	130.0	29.1
	증감(B-A)	-1.0	-17.7	14.3	34.5	-34.7	-4.9	7.3
	증감률	-0.1	-9.9	8.7	14.9	-33.2	-3.6	33.5

4-8. 근무지역별

◇ 취업자는 『경기·인천』 지역에서 가장 많이 근무함

- (외국인) 근무지역별 취업자는 『경기·인천』 (37만 8천명, 45.3%)이 가장 많고, 『서울』 (14만 2천명, 17.0%)을 포함한 수도권에 62.4%가 근무
 - 비수도권 취업자(37.6%)는 『부산·울산·경남』 (9만 6천명, 11.5%)에서 가장 많이 근무
 - 전년대비 『경기·인천』 은 1만 7천명(4.6%), 『대전·세종·충남북』 은 9천명(10.8%) 증가하였으나, 『서울』 은 1만 9천명(-11.7%), 『부산·울산·경남』 은 1만 1천명(-9.9%) 감소
- (귀화허가자) 근무지역별 취업자는 『경기·인천』 (1만 1천명, 33.7%)이 가장 많고, 『서울』 (7천명, 20.7%)을 포함한 수도권에 54.4%가 근무
 - 비수도권 취업자(45.6%)는 『부산·울산·경남』 (4천명, 11.8%)과 『대전·세종·충남북』 (4천명, 11.8%)에서 가장 많이 근무

<근무지역별 취업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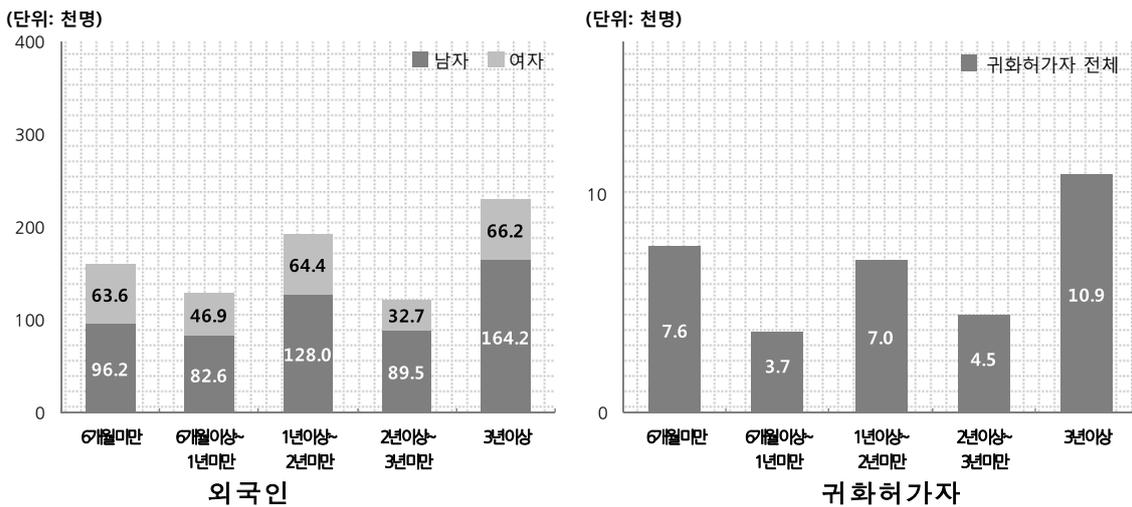
	취업자 전체	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남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이민자	868.0	538.6	149.2	389.5	329.4	100.0	99.5	52.8	53.5	23.6	
외국인	834.2	520.3	142.2	378.1	313.9	96.0	95.5	50.3	49.9	22.2	
(구성비)	(100.0)	(62.4)	(17.0)	(45.3)	(37.6)	(11.5)	(11.4)	(6.0)	(6.0)	(2.7)	
남자	560.5	329.1	66.0	263.1	231.4	75.0	69.0	38.1	34.4	14.9	
여자	273.7	191.2	76.2	115.0	82.5	21.0	26.5	12.2	15.5	7.3	
귀화허가자	33.8	18.4	7.0	11.4	15.4	4.0	4.0	2.5	3.5	1.4	
(구성비)	(100.0)	(54.4)	(20.7)	(33.7)	(45.6)	(11.8)	(11.8)	(7.4)	(10.4)	(4.1)	
외국인	'16년 5월(A)	835.2	522.6	161.1	361.4	312.6	106.5	86.2	50.8	47.3	21.8
'17년 5월(B)	834.2	520.3	142.2	378.1	313.9	96.0	95.5	50.3	49.9	22.2	
증감(B-A)	-1.0	-2.3	-18.9	16.7	1.3	-10.5	9.3	-0.5	2.6	0.4	
증감률	-0.1	-0.4	-11.7	4.6	0.4	-9.9	10.8	-1.0	5.5	1.8	

4-9. 동일 직장 근속기간별

◇ 조사대상주간에 근무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취업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근무기간별 취업자는 『3년 이상』 (23만명, 27.6%)이 가장 많고 『1년 이상~2년 미만』 (19만 2천명, 23.1%), 『6개월 미만』 (16만명, 19.2%)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3년 이상』 은 6만명(35.1%) 증가하였으나, 『1년 이상~2년 미만』 은 2만 9천명(-12.9%), 『6개월 이상~1년 미만』 은 1만 9천명(-12.7%), 『2년 이상 ~3년 미만』 은 1만 1천명(-8.5%) 감소
- (귀화허가자) 근무기간별 취업자는 『3년 이상』 (1만 1천명, 32.2%)이 가장 많고 『6개월 미만』 (8천명, 22.5%), 『1년 이상~2년 미만』 (7천명, 20.7%) 순으로 많음

<동일 직장 근속기간별 취업자>



<동일 직장 근속기간별 취업자>

(단위: 천명, %)

	취업자 전체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
이민자	868.0	167.4	133.2	199.3	126.7	241.4
외국인	834.2	159.8	129.5	192.3	122.2	230.4
(구성비)	(100.0)	(19.2)	(15.5)	(23.1)	(14.6)	(27.6)
남자	560.5	96.2	82.6	128.0	89.5	164.2
여자	273.7	63.6	46.9	64.4	32.7	66.2
귀화허가자	33.8	7.6	3.7	7.0	4.5	10.9
(구성비)	(100.0)	(22.5)	(10.9)	(20.7)	(13.3)	(32.2)
외국인						
'16년 5월(A)	835.2	162.1	148.3	220.8	133.6	170.5
'17년 5월(B)	834.2	159.8	129.5	192.3	122.2	230.4
증감(B-A)	-1.0	-2.3	-18.8	-28.5	-11.4	59.9
증감률	-0.1	-1.4	-12.7	-12.9	-8.5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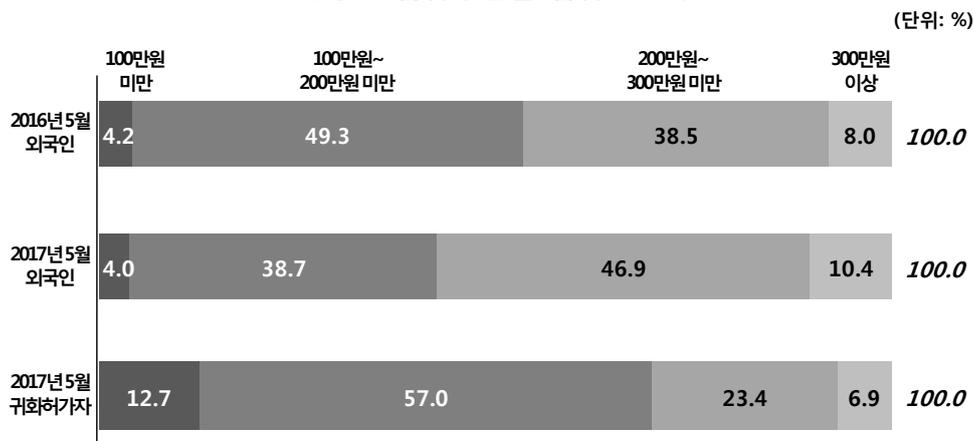
5. 임금근로자

5-1. 월평균 임금수준별

◇ 외국인은 월평균 임금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을 받는 자가 많고, 귀화허가자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을 받는 자가 많음

- (외국인)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80만명)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7만 5천명, 46.9%)이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0만 9천명, 38.7%), 『300만원 이상』 (8만 3천명, 10.4%) 순으로 많음
 - 전년대비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은 6만 6천명(21.4%) 증가하였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은 8만 6천명(21.7%) 감소
- (귀화허가자)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2만 9천명)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만 7천명, 57.0%)이 가장 많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천명, 23.4%) 순으로 많음

<월 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전체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이민자	외국인	828.1	35.6	325.8	381.9	84.8
	(구성비)	799.0	32.0	309.2	375.1	82.8
	남자	(100.0)	(4.0)	(38.7)	(46.9)	(10.4)
	여자	545.7	7.5	169.3	293.0	75.8
	귀화허가자	253.3	24.4	139.9	82.1	7.0
	(구성비)	29.1	3.7	16.6	6.8	2.0
외국인	'16년 5월(A)	(100.0)	(12.7)	(57.0)	(23.4)	(6.9)
	'17년 5월(B)	801.9	33.9	395.0	309.1	63.8
	증감(B-A)	799.0	32.0	309.2	375.1	82.8
	증감률	-2.9	-1.9	-85.8	66.0	19.0
		-0.4	-5.6	-21.7	21.4	29.8

5-2. 입국 전 취업경험 유·무 및 입국 전·후 보수차이별

◇ 입국 전보다 『2배 이상~3배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는 49.9%, 취업 경험이 없는 임금근로자는 50.1%임
 - 취업 경험자의 입국 전·후 보수를 비교*해 보면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음』이 76.4%, 『비슷함』이 16.8%, 『입국 전 보수가 더 많음』이 6.7%임
 - * 한국에서 첫 임금 또는 보수를 2011년 6월 이후 받은 자만 비교
 -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은 임금근로자의 입국 전·후 보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3배 미만』이 26.0%로 가장 많고, 『3배 이상~5배 미만』이 20.7%, 『5배 이상』은 14.9%임
- (귀화허가자) 한국 입국 전 취업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는 42.6%는 취업 경험이 없는 임금근로자는 57.4%임
 - 취업 경험자의 입국 전·후 보수를 비교*해 보면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음』이 73.2%, 『비슷함』이 16.1%, 『입국 전 보수가 더 많음』이 10.7%임
 - * 한국에서 첫 임금 또는 보수를 2011년 6월 이후 받은 자만 비교
 -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은 임금근로자의 입국 전·후 보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3배 미만』이 26.8%로 가장 많고, 『3배 이상~5배 미만』이 19.6%, 『5배 이상』은 16.1%임

<입국 전 취업경험 유·무 및 입국 전·후 보수차이별 임금근로자>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취업 경험 있음	입국 전·후 보수 차이						취업 경험 없음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음				비슷함	입국 전 보수가 더 많음	
			1.01~2.0배 미만	2.0~3.0배 미만	3.0~5.0배 미만	5.0배 이상			
외국인	100.0	49.9	14.8	26.0	20.7	14.9	16.8	6.7	50.1
남자	100.0	51.1	14.6	26.0	21.8	16.5	15.9	5.2	48.9
여자	100.0	47.4	15.4	26.0	18.0	11.1	18.9	10.7	52.6
귀화허가자	100.0	42.6	10.7	26.8	19.6	16.1	16.1	10.7	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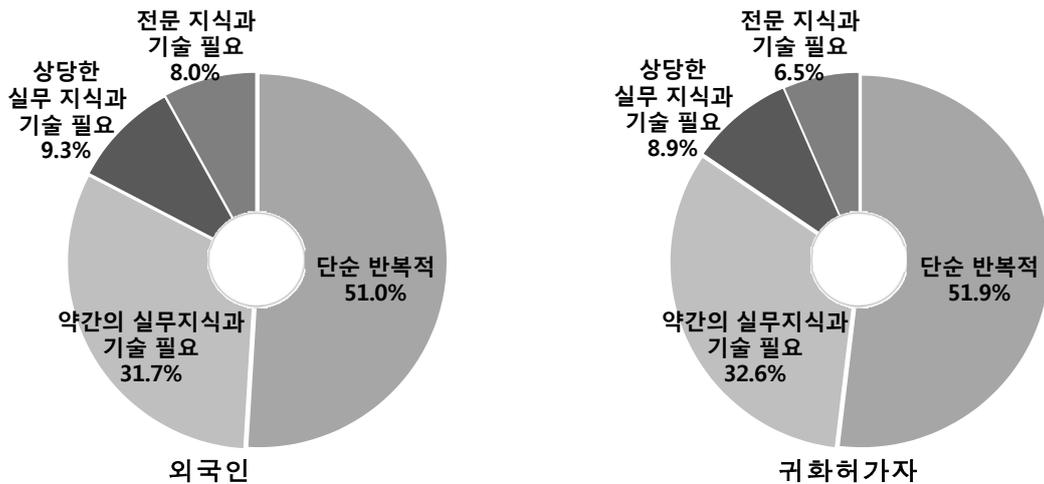
5-3. 직무 수준별

◇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가장 많이 종사

- (외국인) 직무 수준별 임금근로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51.0%로 가장 많고,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31.7%, 『상당한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9.3%,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8.0%임
- 남자(46.7%)와 여자(60.1%) 모두 『단순 반복적인 일』이 가장 많음

- (귀화허가자) 직무 수준별 임금근로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51.9%로 가장 많고,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32.6%, 『상당한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8.9%,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6.5%임

<담당 업무의 직무 수준별 임금근로자>



<직무 수준별 임금근로자>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외국인	100.0	51.0	31.7	9.3	8.0
남자	100.0	46.7	35.5	9.7	8.0
여자	100.0	60.1	23.6	8.4	8.0
귀화허가자	100.0	51.9	32.6	8.9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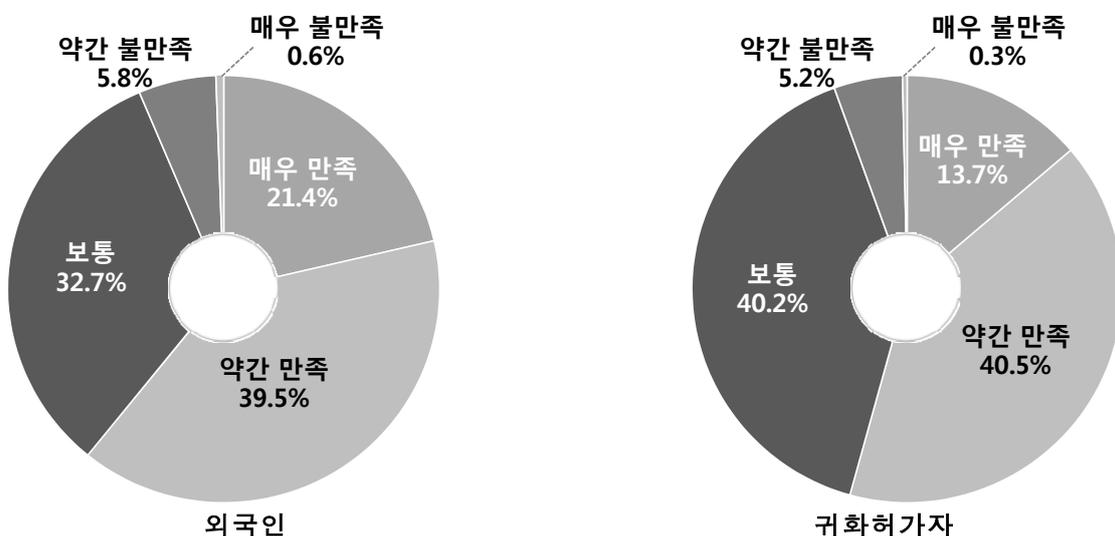
5-4. 직장만족도별

◇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외국인) 직장만족도별 임금근로자는 『약간 만족』이 39.5%로 가장 높고, 『보통』이 32.7%, 『매우만족』이 21.4%, 『약간 불만족』이 5.8%, 『매우 불만족』이 0.6%임 (만족 60.9%, 보통 32.7%, 불만족 6.4%)
 - 세부 항목별로는 작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34.3%), 한국인 직장동료와의 관계(37.3%), 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관계(37.2%)에서 『약간 만족』이 가장 높음
 - 임금 및 보수(33.3%), 근로시간(36.3%), 고충처리(37.7%), 복지제도(27.1%), 복지시설(32.4%)에서 『보통』이 가장 높음

- (귀화허가자) 직장만족도별 임금근로자는 『약간 만족』이 40.5%로 가장 높고, 『보통』이 40.2%, 『매우만족』이 13.7%, 『약간 불만족』이 5.2%, 『매우 불만족』이 0.3%임 (만족 54.2%, 보통 40.2%, 불만족 5.5%)
 - 작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37.5%), 한국인 직장동료와의 관계(43.3%), 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관계(39.9%)에서 『약간 만족』이 가장 높음
 - 임금 및 보수(41.9%), 근로시간(41.2%), 고충처리(40.9%), 복지제도(32.3%), 복지시설(37.8%)에서 『보통』이 가장 높음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별 임금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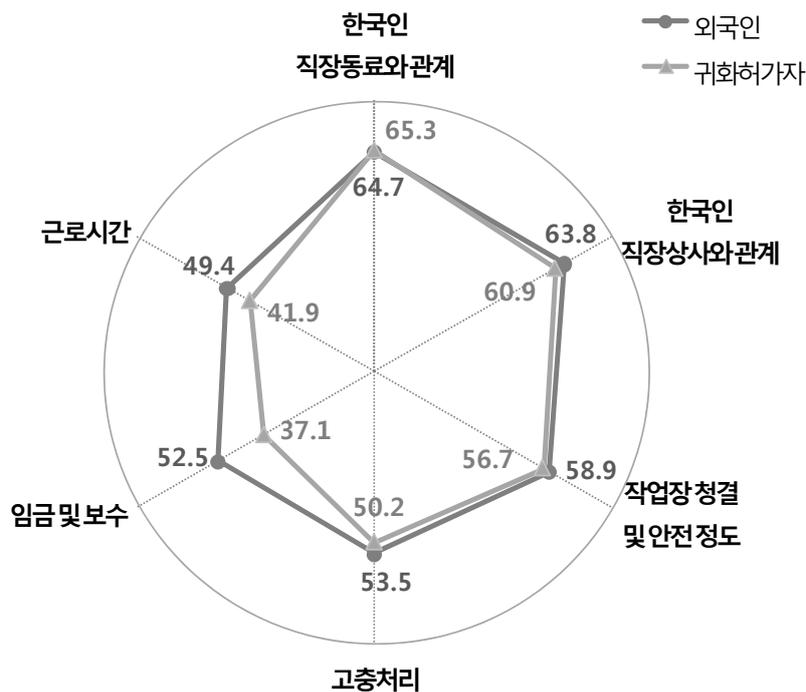
<직장만족도별 임금근로자>

(단위: %)

	외국인						귀화허가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직장 전반적인만족도	21.4	39.5	32.7	5.8	0.6	-	13.7	40.5	40.2	5.2	0.3	-
임금 및 보수	19.3	33.2	33.3	12.6	1.6	-	8.6	28.5	41.9	18.6	2.4	-
근로시간	17.2	32.2	36.3	12.6	1.7	-	10.3	31.6	41.2	15.1	1.7	-
작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	24.6	34.3	32.3	7.7	1.1	-	19.2	37.5	35.4	7.2	0.7	-
고충처리	19.9	33.6	37.7	7.4	1.4	-	14.1	36.1	40.9	7.9	1.4	-
승진기회	5.3	8.9	22.5	6.2	2.4	54.7	2.7	8.9	24.7	7.9	3.8	51.5
복지제도	13.3	21.1	27.1	9.3	2.5	26.7	7.6	22.3	32.3	10.3	2.7	25.1
복지시설	17.6	27.1	32.4	8.9	2.0	11.9	9.3	26.8	37.8	10.0	2.1	14.1
한국인 직장동료와 관계	27.4	37.3	28.1	2.9	0.5	3.7	22.0	43.3	28.2	2.4	0.3	3.8
한국인 직장상사와 관계	26.6	37.2	28.9	3.4	0.9	3.0	21.0	39.9	31.6	4.1	0.3	3.1

<이민자의 직장 관련 만족도*>

* 매우만족+약간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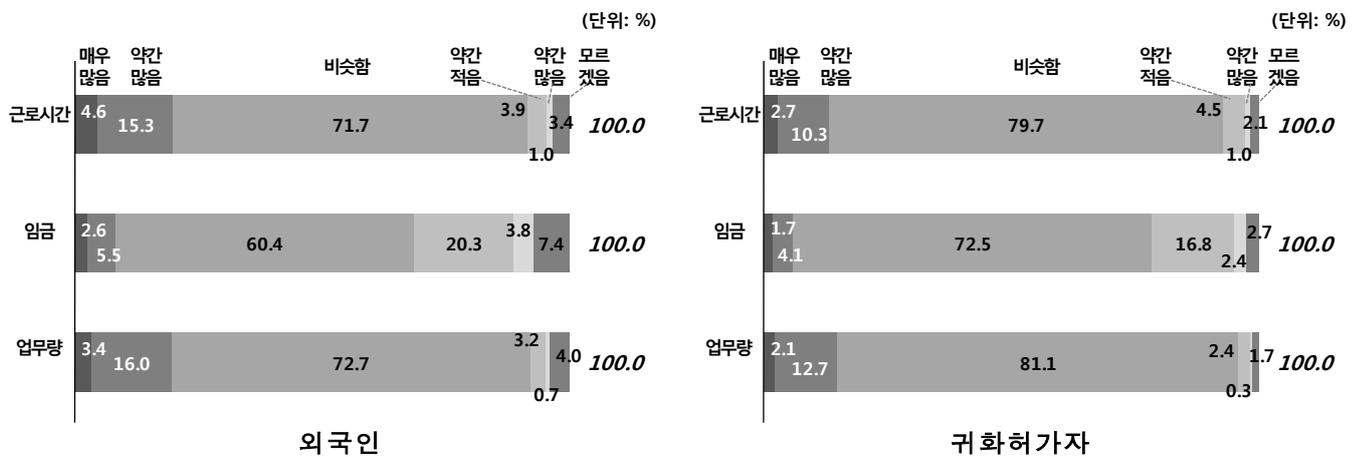


5-5.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별

◇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근로시간, 임금, 업무량이 비슷하다고 생각

-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과 근로시간(71.7%), 임금(60.4%), 업무량(72.7%)에 대해 『한국인과 비슷하다』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근로시간(15.3%)과 업무량(16.0%)은 『한국인 보다 약간 많다』가 많고, 임금(20.3%)은 『한국인 보다 약간 적다』가 많음
- (귀화허가자) 임금근로자는 근로시간(79.7%), 임금(72.5%), 업무량(81.1%)에 대해 『한국인과 비슷하다』가 가장 많음
 - 다음으로 근로시간(10.3%)과 업무량(12.7%)은 『한국인 보다 약간 많다』가 많고, 임금(16.8%)은 『한국인 보다 약간 적다』가 가장 많음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별 임금근로자>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별 임금근로자>

(단위: %)

	외국인						귀화허가자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비슷함	약간 적음	매우 적음	모르겠음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비슷함	약간 적음	매우 적음	모르겠음
근로시간	4.6	15.3	71.7	3.9	1.0	3.4	2.7	10.3	79.7	4.5	1.0	2.1
임금	2.6	5.5	60.4	20.3	3.8	7.4	1.7	4.1	72.5	16.8	2.4	2.7
업무량	3.4	16.0	72.7	3.2	0.7	4.0	2.1	12.7	81.1	2.4	0.3	1.7

5-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유·무별

◇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외국인 32.5%, 귀화허가자 58.4%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외국인 60.6%, 귀화허가자 59.8%

-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32.5%, 『미가입자』는 60.8%*이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60.6%, 『미가입자』는 34.9%임
 - 여자(고용: 65.9%, 산재: 52.5%)가 남자(고용: 58.4%, 산재: 26.7%)보다 『미가입』 비율이 높음
 - * 고용보험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와 같이 일부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만 가입대상이어서 미가입자 비율이 높음
- (귀화허가자)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8.4%, 『미가입자』는 39.9%이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59.8%, 『미가입자』는 38.5%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유·무별 임금근로자>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외국인	100.0	32.5	60.8	6.7	60.6	34.9	4.6
남자	100.0	34.3	58.4	7.4	68.8	26.7	4.5
여자	100.0	28.8	65.9	5.3	42.8	52.5	4.8
귀화허가자	100.0	58.4	39.9	1.7	59.8	38.5	1.7

6. 실업자

6-1. 구직기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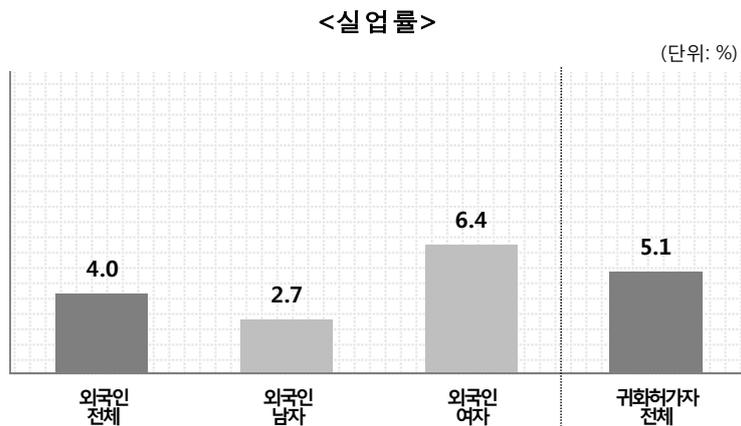
◇ 외국인 실업률 4.0%, 귀화허가자 실업률 5.1%

□ (외국인) '17년 5월 기준, 실업자는 3만 5천명, 실업률은 4.0%로 전년대비 0.1%p 증가

- 남자 실업률은 2.7%, 여자 실업률은 6.4%
-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2만 1천명, 62.0%)이 가장 많고, 『3개월~6개월 미만』 (8천명, 22.9%), 『6개월 이상~1년 미만』 (4천명, 12.5%)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실업자는 2천명, 실업률은 5.1%임

- 구직기간은 『3개월 미만』 (1천명, 55.6%)이 가장 많음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실업자 전체	실업률	구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이민자	36.3	4.0	22.4	8.5	4.5	0.9	
외국인 (구성비)	34.5 (100.0)	4.0 -	21.4 (62.0)	7.9 (22.9)	4.3 (12.5)	0.9 (2.6)	
남자	15.6	2.7	9.7	3.1	2.2	0.6	
여자	18.8	6.4	11.7	4.8	2.1	0.3	
귀화허가자 (구성비)	1.8 (100.0)	5.1 -	1.0 (55.6)	0.6 (33.3)	0.2 (11.1)	0.1 (5.6)	
외국인	'16년 5월(A)	34.3	3.9	-	-	-	
	'17년 5월(B)	34.5	4.0	21.4	7.9	4.3	0.9
	증감(B-A)	0.2	0.1	-	-	-	-
	증감률	0.6	-	-	-	-	-

6-2. 구직경로별(복수응답)

◇ 실업자는 『친척·친구·동료』를 통한 구직활동이 가장 많음

- (외국인)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친척·친구·동료』(51.0%)가 가장 많고, 『대중매체』(44.1%), 『민간직업 알선기관』(26.4%)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친척·친구·동료』(55.6%)가 가장 많고, 『대중매체』(38.9%), 『공공직업 알선기관』(33.3%) 순으로 많음

<구직경로별 실업자(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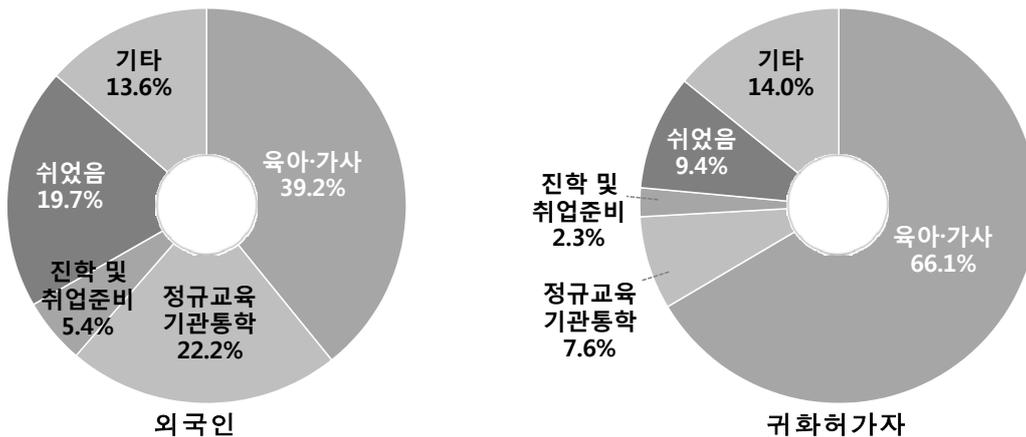
	공공직업 알선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대중매체	학교·학원	친척·친구 ·동료	외국인 동포 자원 단체 및 기관	기타
외국인	24.9	26.4	44.1	4.3	51.0	18.0	0.9
남자	23.7	31.4	29.5	3.8	58.3	23.1	1.3
여자	26.6	22.3	56.4	4.8	45.2	13.8	0.0
귀화허가자	33.3	22.2	38.9	11.1	55.6	16.7	0.0

7.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35만 7천명,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1만 7천명

- (외국인) 비경제활동인구는 35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2만 6천명(8.0%) 증가
 - 성별로는 남자가 12만명(33.5%), 여자가 23만 7천명(66.5%)임
 - 활동상태별로는 『육아·가사』 (39.2%)가 가장 많고, 『정규교육기관 통학』 (22.2%), 『쉬었음』 (19.7%)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7천명
 - 활동상태별로는 『육아·가사(66.1%)』가 가장 많고, 『기타』 (14.0%), 『쉬었음』 (9.4%) 순으로 많음

<활동상태별 비경제 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 활동인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육아·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진학 및 취업준비	쉬었음	기타
이민자	373.7	151.1	80.3	19.5	71.9	50.8
외국인 (구성비)	(100.0)	(39.2)	(22.2)	(5.4)	(19.7)	(13.6)
남자	119.5	10.5	36.0	9.7	40.4	23.0
여자	237.0	129.3	43.0	9.4	29.9	25.4
귀화허가자 (구성비)	(100.0)	(66.1)	(7.6)	(2.3)	(9.4)	(14.0)
외국인 '16년 5월(A)	330.2	133.3	70.3	17.5	85.3	23.7
외국인 '17년 5월(B)	356.6	139.8	79.0	19.1	70.3	48.4
증감(B-A)	26.4	6.5	8.7	1.6	-15.0	24.7
증감률	8.0	4.9	12.4	9.1	-17.6	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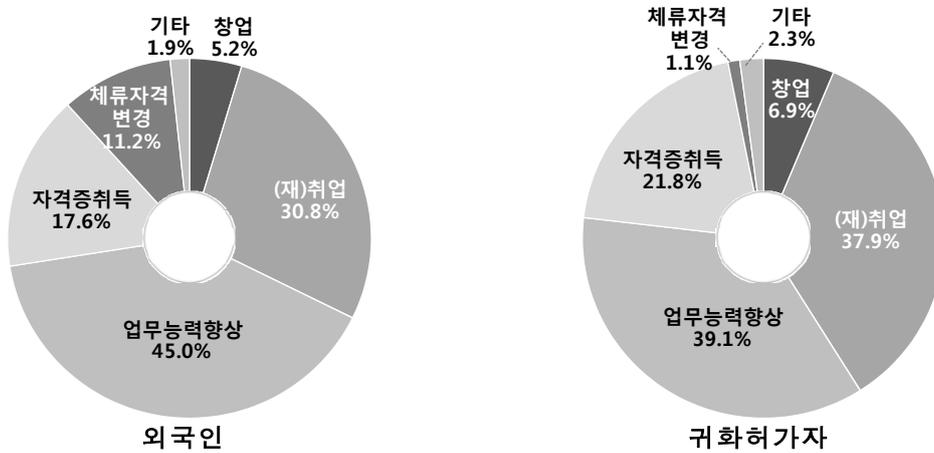
Ⅲ. 교육

8.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유·무 및 목적(복수응답)

◇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 (외국인)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15.4%, 받은 경험이 없는 외국인은 84.6%임
 -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45.0%)가 가장 많고, 『(재)취업』 (30.8%), 『자격증 취득』 (17.6%)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귀화허가자는 16.5%, 받은 경험이 없는 귀화허가자는 83.5%임
 -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목적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39.1%)가 가장 많고, 『(재)취업』 (37.9%), 『자격증 취득』 (21.8%) 순으로 많음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또는 훈련 목적>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유·무 및 목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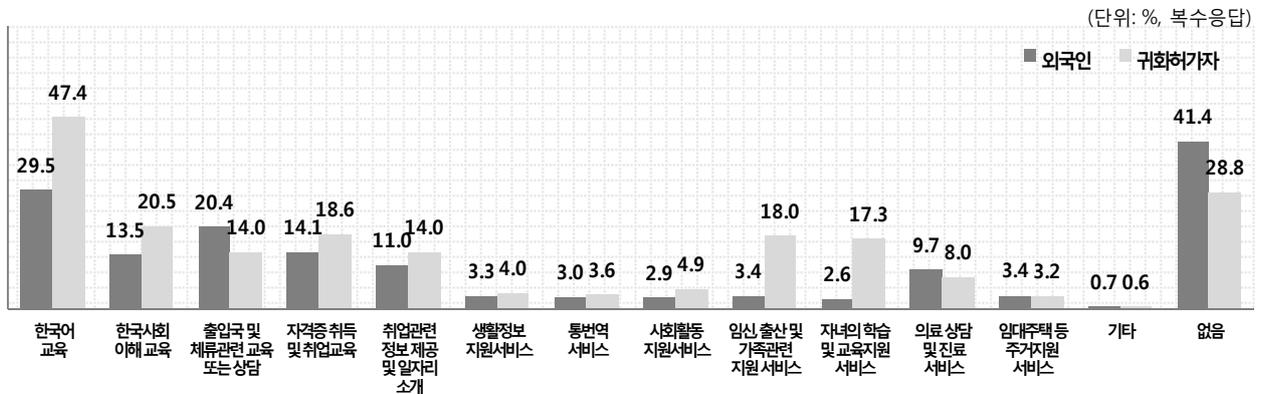
	합계	교육훈련 경험 있음	교육 또는 훈련 목적						교육훈련 경험 없음
			창업	(재)취업	업무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체류자격 변경	기타	
외국인	100.0	15.4	5.2	30.8	45.0	17.6	11.2	1.9	84.6
남자	100.0	15.9	6.1	28.6	52.3	14.6	8.0	1.2	84.1
여자	100.0	14.6	4.1	33.9	34.3	21.8	15.5	2.8	85.4
귀화허가자	100.0	16.5	6.9	37.9	39.1	21.8	1.1	2.3	83.5

9. 한국에서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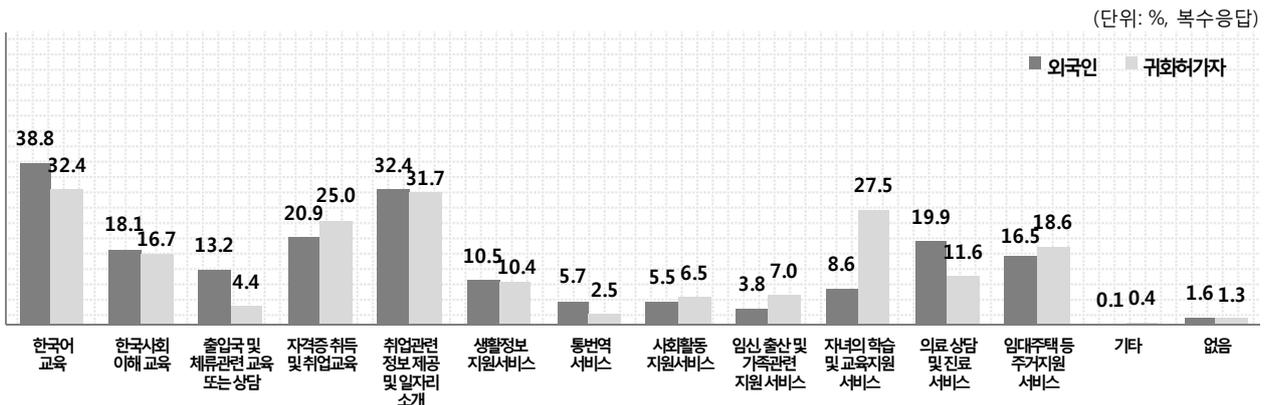
◇ 가장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 (외국인) 받은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는 『없음』 (41.4%)이 가장 많고, 『한국어 교육』 (29.5%),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또는 상담』 (20.4%) 순으로 많음
 - 받고 싶은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38.8%)이 가장 많고,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32.4%),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20.9%)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받은 교육이나 지원서비스로 『한국어교육』 (47.4%)이 가장 많고, 『없음』 (28.8%), 『한국사회 이해 교육』 (20.5%) 순으로 많음
 - 받고 싶은 교육이나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교육』 (32.4%),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31.7%),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서비스』 (27.5%) 순으로 많음

<받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

(단위: %)

	받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외국인			귀화 허가자	외국인			귀화 허가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전체	남자	여자	전체
한국어 교육	29.5	27.1	32.7	47.4	38.8	42.4	34.0	32.4
한국사회 이해 교육	13.5	12.9	14.2	20.5	18.1	18.4	17.7	16.7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또는 상담	20.4	21.0	19.6	14.0	13.2	14.4	11.7	4.4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14.1	14.0	14.3	18.6	20.9	22.2	19.2	25.0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11.0	11.9	9.8	14.0	32.4	33.3	31.2	31.7
생활정보 지원서비스	3.3	3.6	2.8	4.0	10.5	10.8	10.0	10.4
통번역서비스	3.0	3.5	2.4	3.6	5.7	6.5	4.6	2.5
사회활동지원서비스	2.9	2.8	3.0	4.9	5.5	4.7	6.6	6.5
임신, 출산 및 가족관련 지원 서비스	3.4	1.0	6.4	18.0	3.8	2.2	5.8	7.0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서비스	2.6	1.2	4.4	17.3	8.6	4.9	13.4	27.5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	9.7	10.5	8.6	8.0	19.9	18.8	21.5	11.6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3.4	4.3	2.3	3.2	16.5	15.4	18.0	18.6
기타	0.7	0.9	0.4	0.6	0.1	0.1	0.2	0.4
없음	41.4	43.7	38.3	28.8	1.6	1.8	1.4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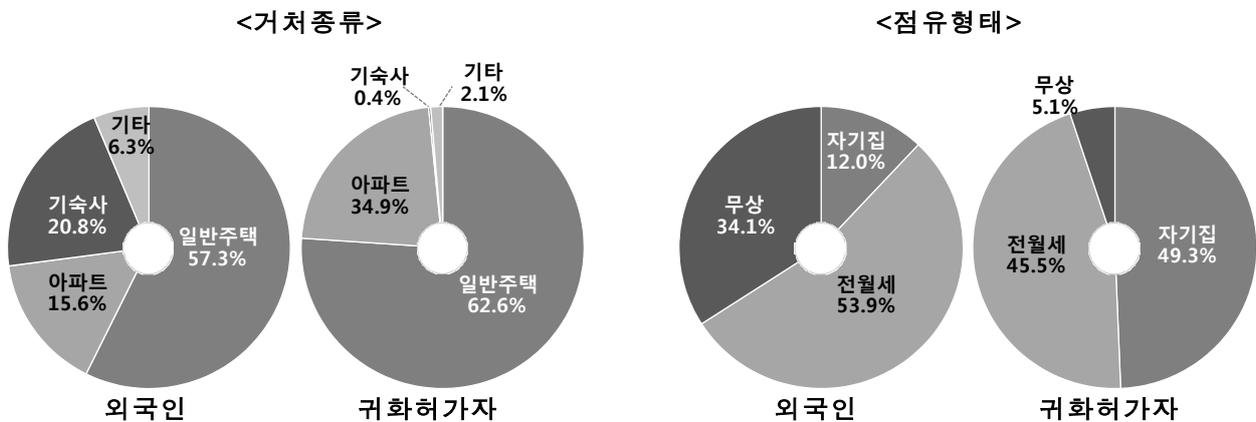
IV. 주거 및 생활환경

10.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

◇ 『일반주택』에 많이 거주

외국인은 『임차주택』, 귀화허가자는 『자기 집』에 많이 거주

- (외국인) 거처종류는 『일반주택』(70만 2천명, 57.3%)이 가장 많고, 점유형태는 『전·월세』(66만 1천명, 53.9%)가 가장 많음
 - 『일반주택』을 제외하면 남자 외국인은 『기숙사』(21만 5천명, 30.9%)에 여자 외국인은 『아파트』(10만 7천명, 20.2%)에 많이 거주
- (귀화허가자) 거처종류는 『일반주택』(3만 3천명, 62.6%)이 가장 많고, 점유형태는 『자기 집』(2만 6천명, 49.3%)과 『전·월세』(2만 4천명, 45.5%) 순으로 많음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

(단위: 천명, %)

	전체	거처종류				점유형태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자기 집	전월세	무상
외국인	1,225.3	701.7	191.5	255.1	76.9	146.6	661.0	417.7
(구성비)	(100.0)	(57.3)	(15.6)	(20.8)	(6.3)	(12.0)	(53.9)	(34.1)
남자	695.7	347.8	84.7	215.3	47.8	48.9	325.3	321.4
여자	529.6	353.9	106.8	39.8	29.1	97.7	335.6	96.3
귀화허가자	52.7	33.0	18.4	0.2	1.1	26.0	24.0	2.7
(구성비)	(100.0)	(62.6)	(34.9)	(0.4)	(2.1)	(49.3)	(45.5)	(5.1)

11. 전세보증금 규모별 전세 거주자

◇ 외국인은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귀화허가자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의 전세주택에 많이 거주

- (외국인) 전세 거주자(10만 1천명)의 전세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4만 1천명, 40.9%)이 가장 많고,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만명, 39.6%), 『1억원 이상』 (1만 9천명, 18.4%)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전세 거주자(8천명)의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천명, 41.8%)이 가장 많음

<전세보증금 규모별 전세 거주자>

(단위: 천명, %)

	전세 거주자 전체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외국인 (구성비)	100.9 (100.0)	1.1 (1.1)	41.3 (40.9)	40.0 (39.6)	18.6 (18.4)
남자	42.1	0.4	17.1	16.0	8.7
여자	58.8	0.7	24.2	23.9	9.9
귀화허가자 (구성비)	7.9 (100.0)	0.1 (1.3)	2.7 (34.2)	3.3 (41.8)	1.8 (22.8)

12. 월세 보증금 및 월세액 규모별 월세 거주자

◇ 외국인은 『보증금』 이 적고 『월세액』 이 많은 데,
귀화허가자는 『보증금』 이 많고 『월세액』 이 적은 데 많이 거주

- (외국인) 월세 거주자(56만 명)의 월세보증금은 『3백만원 미만』 (13만 9천명, 24.8%)이 가장 많고, 월세액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19만명, 34.0%)이 가장 많음
 - 외국인 월세 거주자 중 6만 7천명(11.9%)은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주택에 거주
- (귀화허가자) 월세 거주자(1만 6천명)의 월세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7천명, 44.1%)이 가장 많고, 월세액은 『20만원 미만』 (5천명, 28.0%)이 가장 많음

<월세보증금 및 월세액 규모별 월세 거주자>

(단위: 천명, %)

	월세 거주자 전체	월세 보증금					월세액					
		없음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외국인	560.1	66.8	138.9	76.4	133.3	124.2	20.4	68.2	146.4	190.4	83.5	71.7
(구성비)	(100.0)	(11.9)	(24.8)	(13.6)	(23.8)	(22.2)	(3.6)	(12.2)	(26.1)	(34.0)	(14.9)	(12.8)
남자	283.2	37.4	80.5	41.0	64.0	51.8	8.5	38.3	78.3	99.9	34.6	31.9
여자	276.9	29.4	58.5	35.5	69.2	72.4	11.9	29.8	68.0	90.4	48.9	39.7
귀화허가자	16.1	0.8	2.3	1.6	2.9	7.1	1.4	4.5	3.7	4.0	2.1	1.9
(구성비)	(100.0)	(5.0)	(14.3)	(9.9)	(18.0)	(44.1)	(8.7)	(28.0)	(23.0)	(24.8)	(13.0)	(11.8)

<전세보증금 규모>

(단위: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외국인	1.1	40.9	39.6	18.4	100.0
귀화허가자	1.3	34.2	41.8	22.8	100.0

<월세보증금 규모>

(단위: %)

	없음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외국인	11.9	24.8	13.6	23.8	22.2	3.6	100.0
귀화허가자	5.0	14.3	9.9	18.0	44.1	8.7	100.0

<월세액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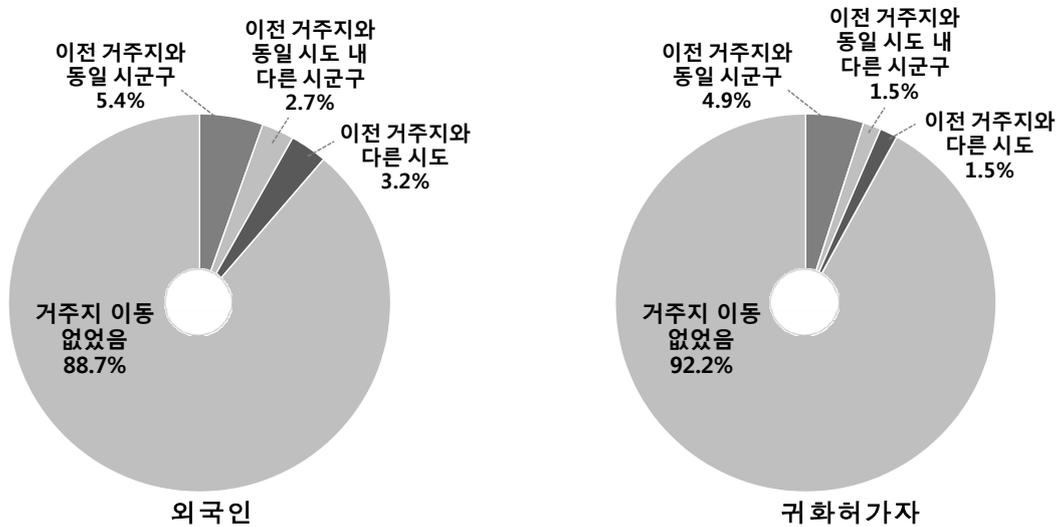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외국인	12.2	26.1	34.0	14.9	12.8	100.0
귀화허가자	28.0	23.0	24.8	13.0	11.8	100.0

13.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 유·무 및 이동 지역

◇ 지난 1년간 외국인 11.3%, 귀화허가자 8.0%만 거주지 이동

- (외국인) 지난 1년간 거주지를 이동한 외국인은 13만 8천명(11.3%)이고, 이중 6만 6천명(5.4%)은 『이전 거주지와 동일 시군구』로 이동
- (귀화허가자) 지난 1년간 거주지를 이동한 귀화허가자는 4천명(8.0%)임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 유·무 및 이동 지역>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 유·무 및 이동 지역>

(단위: 천명, %)

	전체	거주지 이동 있었음	거주지 이동 지역			거주지 이동 없었음
			이전 거주지와 동일 시군구	이전 거주지와 동일 시도 내 다른 시군구	이전 거주지와 다른 시도	
외국인	1,225.3	138.4	66.0	33.6	38.7	1,086.9
(구성비)	(100.0)	(11.3)	(5.4)	(2.7)	(3.2)	(88.7)
남자	695.7	73.4	31.2	18.0	24.2	622.3
여자	529.6	65.0	34.8	15.6	14.6	464.6
귀화허가자	52.7	4.2	2.6	0.8	0.8	48.6
(구성비)	(100.0)	(8.0)	(4.9)	(1.5)	(1.5)	(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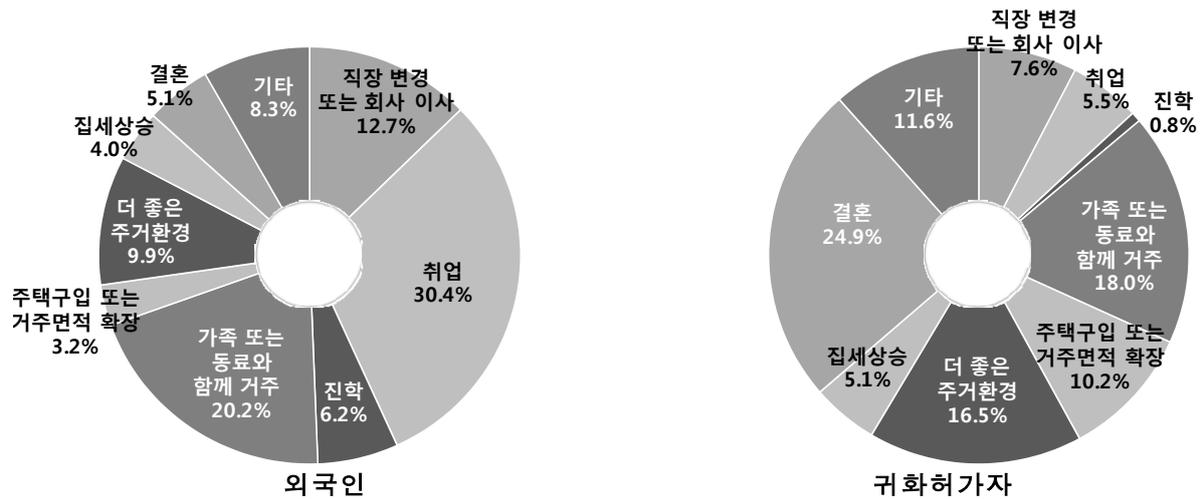
14.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

◇ 현재 거주지에 외국인은 『취업』, 귀화허가자는 『결혼』으로 거주

□ (외국인)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취업』 (37만 3천명, 30.4%)이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동료와 함께 거주』 (24만 8천명, 20.2%), 『직장 변경 또는 회사 이사』 (15만 6천명, 12.7%)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결혼』 (1만 3천명, 24.9%)이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동료와 함께 거주』 (1만명, 18.0%), 『더 좋은 주거 환경』 (9천명, 16.5%) 순으로 많음

<현재 거주지에 거주 이유>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

(단위: 천명, %)

	전체	직장 변경 또는 회사 이사	취업	진학	가족 또는 동료와 함께 거주	주택구입 또는 거주면적 확장	더 좋은 주거환경	집세상승	결혼	기타
외국인	1,225.3	156.0	373.0	76.0	247.6	38.7	121.9	48.8	62.1	101.2
(구성비)	(100.0)	(12.7)	(30.4)	(6.2)	(20.2)	(3.2)	(9.9)	(4.0)	(5.1)	(8.3)
남자	695.7	105.2	293.0	33.9	115.6	17.6	57.4	20.6	6.3	46.1
여자	529.6	50.8	80.0	42.1	132.0	21.1	64.5	28.2	55.8	55.0
귀화자	52.7	4.0	2.9	0.4	9.5	5.4	8.7	2.7	13.1	6.1
(구성비)	(100.0)	(7.6)	(5.5)	(0.8)	(18.0)	(10.2)	(16.5)	(5.1)	(24.9)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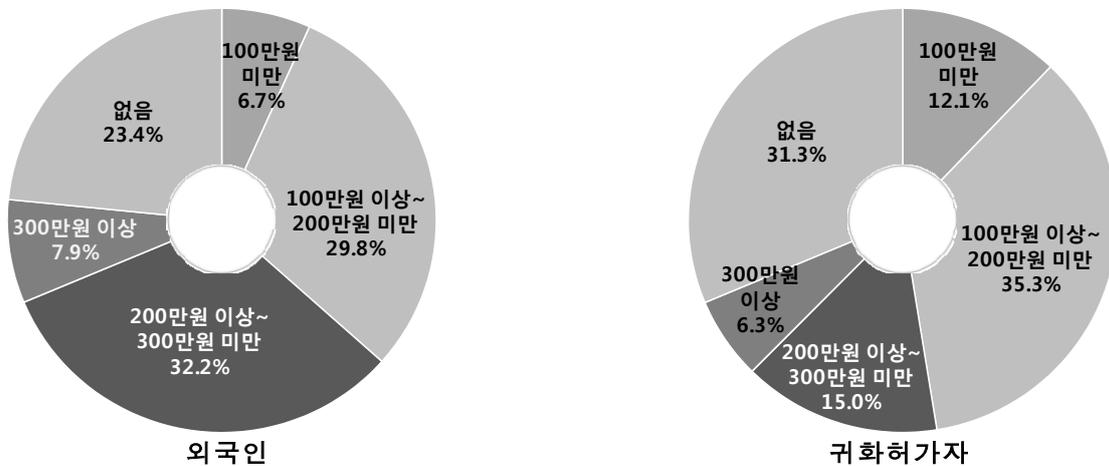
V. 소득과 소비

15.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소득

◇ 외국인은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인 자가 많고
귀화허가자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인 자가 많음

- (외국인)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9만 4천명, 32.2%)이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6만 6천명, 29.8%), 『지난 1년 동안 소득 없음』 (28만 7천명, 23.4%)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만 9천명, 35.3%)이 가장 많고, 『지난 1년 동안 소득 없음』 (1만 7천명, 31.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천명, 15.0%) 순으로 많음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소득>

(단위: 천명, %)

	전체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외국인	1,225.3	287.1	82.4	365.5	394.0	96.2
(구성비)	(100.0)	(23.4)	(6.7)	(29.8)	(32.2)	(7.9)
남자	695.7	85.5	28.9	193.5	302.7	85.0
여자	529.6	201.6	53.4	172.0	91.4	11.2
귀화허가자	52.7	16.5	6.4	18.6	7.9	3.3
(구성비)	(100.0)	(31.3)	(12.1)	(35.3)	(15.0)	(6.3)

16. 연간 해외 송금 횟수

◇ 외국인은 『연 12회 이상』, 귀화허가자는 『연 2회』 해외 송금자가 많음

- (외국인) 한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있는 외국인은 49만 4천명(40.3%)임
 - 송금 횟수는 『연 12회 이상』 (27만 3천명, 22.3%)이 가장 많고, 『연 2회』 (4만 7천명, 3.8%)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한국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송금하고 있는 귀화허가자는 1만 2천명(21.8%)이며, 송금 횟수는 『연 2회』 (3천명, 5.7%)가 가장 많음

<연간 해외 송금 횟수>



<연간 해외 송금 횟수>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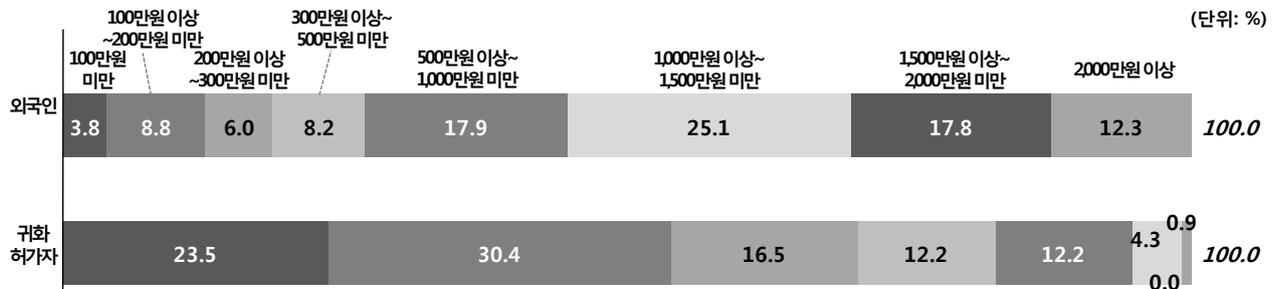
	전체	송금합	연간 해외 송금 횟수								송금하지 않음
			연 1회	연 2회	연 3회	연 4회	연 5회	연 6회	연 7회~11회	연 12회 이상	
외국인	1,225.3	494.2	35.4	47.1	32.3	26.5	17.7	29.3	33.2	272.8	731.1
(구성비)	(100.0)	(40.3)	(2.9)	(3.8)	(2.6)	(2.2)	(1.4)	(2.4)	(2.7)	(22.3)	(59.7)
남자	695.7	373.6	17.8	28.9	20.7	18.7	12.4	22.3	25.1	227.8	322.1
여자	529.6	120.6	17.6	18.2	11.6	7.8	5.3	7.0	8.1	44.9	409.0
귀화허가자	52.7	11.5	2.2	3.0	2.0	1.0	0.4	0.3	0.4	2.2	41.3
(구성비)	(100.0)	(21.8)	(4.2)	(5.7)	(3.8)	(1.9)	(0.8)	(0.6)	(0.8)	(4.2)	(78.4)

17. 연간 해외 송금액

◇ 외국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 ,
귀화허가자는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해외 송금자가 많음

- (외국인) 송금 규모는 연간 『1천만원 이상~1천 5백만원 미만』 (12만 4천명, 25.1%)이 가장 많고, 『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8만 9천, 17.9%), 『1천 5백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8만 8천명, 17.8%)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송금 규모는 연간 『1백만원 이상~2백만원 미만』 (4천명, 30.4%)이 가장 많고, 『1백만원 미만』 (3천명, 23.5%) 순으로 많음

<연간 해외 송금액>



<연간 해외 송금액>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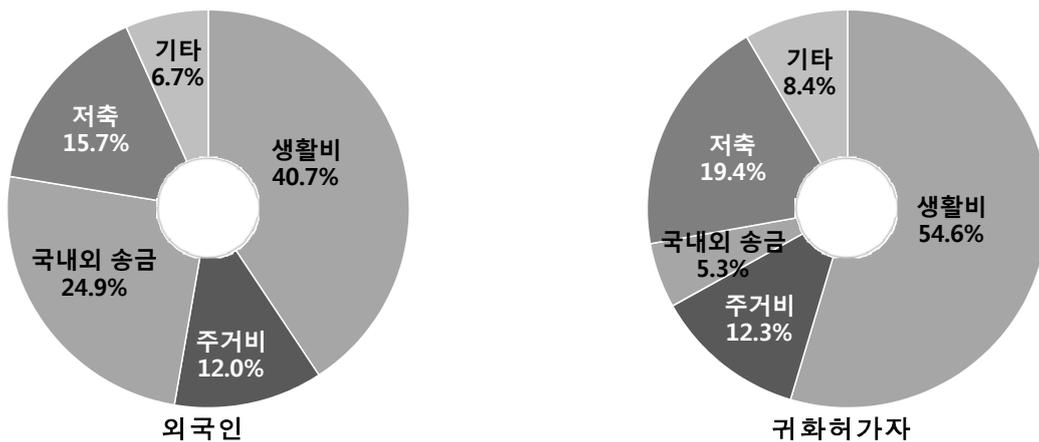
	송금자 전체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외국인	494.2	18.9	43.4	29.5	40.5	88.7	124.0	88.2	61.0
(구성비)	(100.0)	(3.8)	(8.8)	(6.0)	(8.2)	(17.9)	(25.1)	(17.8)	(12.3)
남자	373.6	8.3	24.4	15.4	22.5	59.1	103.5	81.4	59.0
여자	120.6	10.6	18.9	14.1	18.0	29.6	20.5	6.8	2.0
귀화허가자	11.5	2.7	3.5	1.9	1.4	1.4	0.5	0.0	0.1
(구성비)	(100.0)	(23.5)	(30.4)	(16.5)	(12.2)	(12.2)	(4.3)	(0.0)	(0.9)

18. 총소득대비 지출부문별 구성비

◇ 총소득은 『생활비』로 가장 많이 지출

- (외국인) 지출부문은 『생활비』 (40.7%)가 가장 많고, 『국내외 송금』 (24.9%), 『저축』 (15.7%), 『주거비』 (12.0%) 순으로 많음
 - 『국내외 송금』 비중은 남자(32.2%)가 여자(11.5%) 보다 높고, 『생활비』, 『주거비』, 『저축』의 비중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음
- (귀화허가자) 지출부문은 『생활비』 (54.6%)가 가장 많고, 『저축』 (19.4%), 『주거비』 (12.3%), 『기타』 (8.4%), 『국내외 송금』 (5.3%) 순으로 많음

<총소득대비 지출부문별 구성비>



<총소득대비 지출부문별 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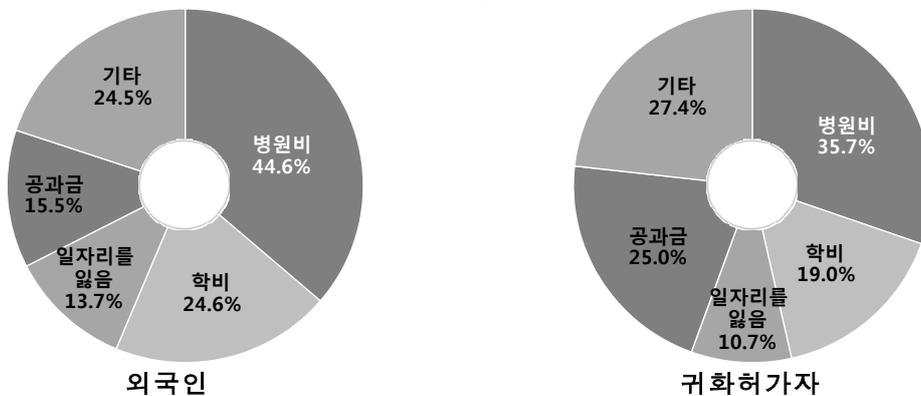
	합계	생활비	주거비	국내외 송금	저축	기타
외국인	100.0	40.7	12.0	24.9	15.7	6.7
남자	100.0	36.6	9.7	32.2	14.7	6.8
여자	100.0	48.2	16.2	11.5	17.6	6.5
귀화자	100.0	54.6	12.3	5.3	19.4	8.4

19.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및 유형(복수응답)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11.6%, 귀화허가자는 15.9%

- (외국인)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11.6%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외국인은 88.4%임
 -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은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44.6%)이 가장 많고,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 (24.6%), 『기타』 (24.5%)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귀화허가자는 15.9%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귀화허가자는 84.3%임
 -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은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35.7%)이 가장 많고, 『기타』 (27.4%),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25.0%) 순으로 많음

<지난 1년간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 유형>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및 유형>

(단위: %)

	합계	경험함	경제적 어려움 유형(복수응답)					경험하지 않음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음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기타	
외국인	100.0	11.6	44.6	24.6	13.7	15.5	24.5	88.4
남자	100.0	10.7	41.9	26.8	14.1	12.0	25.0	89.3
여자	100.0	12.8	47.6	22.3	13.3	19.3	23.9	87.2
귀화허가자	100.0	15.9	35.7	19.0	10.7	25.0	27.4	84.3

20.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무

◇ 건강보험 가입 비율이 외국인 73.3%, 귀화허가자 95.4%,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외국인 20.6%, 귀화허가자 39.8%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는 73.3%, 『미가입자』 는 24.5%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는 20.6%, 『미가입자』 는 73.2%임
 - 여자(건강보험: 27.7%, 국민연금: 81.3%)가 남자(건강보험: 22.0%, 국민연금: 67.0%)보다 『미가입』 비율이 높음
 - *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가입이 원칙이지만, 체류자격 또는 국가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미가입자 비율이 높음
- (귀화허가자) 건강보험 『가입자』 는 95.4%, 『미가입자』 는 4.0%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는 39.8%, 『미가입자』 는 57.7%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비율>

(단위: %)

	합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외국인	100.0	73.3	24.5	2.2	20.6	73.2	6.2
남자	100.0	75.7	22.0	2.3	25.4	67.0	7.6
여자	100.0	70.1	27.7	2.2	14.3	81.3	4.4
귀화허가자	100.0	95.4	4.0	0.6	39.8	57.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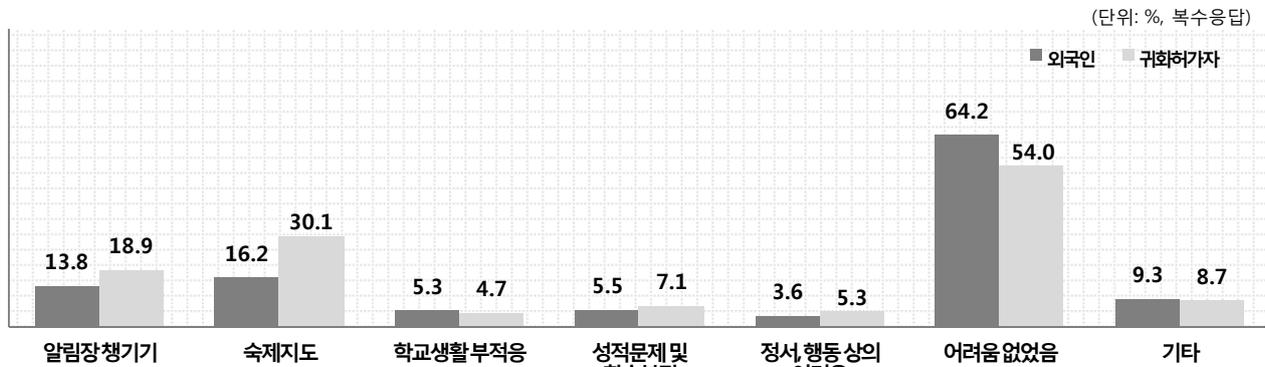
VI. 자녀교육

21.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서 어려웠던 사항[복수응답]

◇ 지난 1년간 자녀 교육에 『어려움 없었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외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이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서 어려웠던 사항은 『어려움 없었다』 (64.2%)이 가장 많고, 『숙제지도』 (16.2%), 『알림장 챙기기』 (13.8%) 순으로 많음
 - 남자(70.1%)가 여자(61.4%)보다 『어려움 없었다』 의 비중이 더 높음
- (귀화허가자)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귀화허가자가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서 어려웠던 사항은 『어려움 없었다』 (54.0%)이 가장 많고, 『숙제지도』 (30.1%) 『알림장 챙기기』 (18.9%) 순으로 많음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 어려웠던 사항>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 어려웠던 사항(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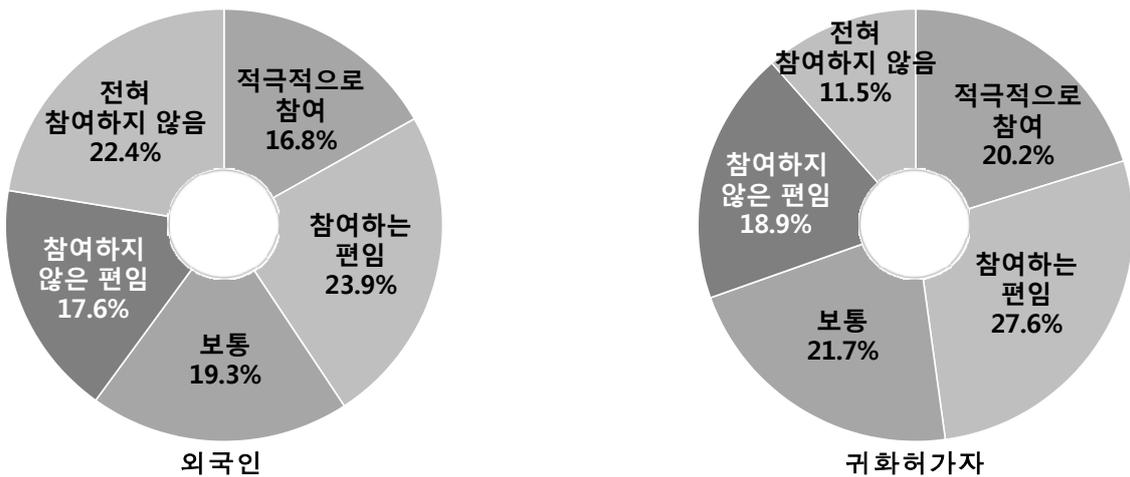
	알림장 챙기기	숙제지도	학교생활 부적응	성적문제 및 학습부진	정서, 행동 상의 어려움	어려움 없었음	기타
외국인	13.8	16.2	5.3	5.5	3.6	64.2	9.3
남자	8.6	12.8	3.9	4.9	2.6	70.1	8.1
여자	16.0	17.7	5.9	5.7	4.1	61.4	9.8
귀화허가자	18.9	30.1	4.7	7.1	5.3	54.0	8.7

22. 자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참여 정도

◇ 외국인은 자녀교육에 『참여자』 (40.7%)와 『미참여자』 (40.0%)가 비슷함
 귀화허가자는 『참여자』 (47.8%)가 『미참여자』 (30.4%)보다 많음

- (외국인) 자녀 학교에 참여하는 정도는 『참여하는 편임』 (23.9%)이 가장 많고, 『전혀 참여하지 않음』 (22.4%), 『보통』 (19.3%) 순으로 많음
 (참여: 40.7%, 미참여: 40.0%, 보통: 19.3%)
- (귀화허가자) 자녀 학교에 참여하는 정도는 『참여하는 편임』 (27.6%)이 가장 많고, 『보통』 (21.7%), 『적극 참여함』 (20.2%) 순으로 많음
 (참여: 47.8%, 미참여: 30.4%, 보통: 21.7%)

<자녀교육에 참여 정도>



<자녀교육에 참여 정도>

(단위: %)

	합계	적극적으로 참여	참여하는 편임	보통	참여하지 않은 편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외국인	100.0	16.8	23.9	19.3	17.6	22.4
남자	100.0	16.5	21.0	17.1	18.5	26.9
여자	100.0	17.1	25.2	20.3	17.1	20.4
귀화허가자	100.0	20.2	27.6	21.7	18.9	11.5

23. 소득대비 자녀 교육비의 부담 정도

◇ 소득대비 자녀 교육비는 『약간 부담』 이 됨

- (외국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약간 부담』 (24.2%)이 가장 많고, 『보통』 (23.7%), 『별로 부담되지 않음』 (18.5%) 순으로 많음
(부담됨: 41.2%, 부담되지 않음: 35.2%, 보통: 23.7%)
- (귀화허가자)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약간 부담』 (28.6%)이 가장 많고, 『보통』 (26.1%), 『별로 부담되지 않음』 (21.1%) 순으로 많음
(부담됨: 40.7%, 부담되지 않음: 33.2%, 보통: 26.1%)

<소득대비 교육비의 부담 정도>

(단위: %)

	합계	매우 부담 됨	약간 부담 됨	보통	별로 부담 되지 않음	전혀 부담 되지 않음
외국인	100.0	17.0	24.2	23.7	18.5	16.7
남자	100.0	19.6	27.3	21.6	15.3	16.1
여자	100.0	15.7	22.8	24.6	19.9	17.0
귀화허가자	100.0	12.1	28.6	26.1	21.1	12.1

24.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 종류

◇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는 『보충교육비』

- (외국인)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는 『보충교육비』 (67.4%), 『학교납입금』 (30.7%) 순으로 많음
- (귀화허가자)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는 『보충교육비』 (88.5%)임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 종류>

(단위: %)

	합계	학교 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	기타
외국인	100.0	30.7	67.4	0.6	1.3
남자	100.0	38.9	60.3	0.4	0.4
여자	100.0	26.1	71.4	0.7	1.8
귀화허가자	100.0	8.4	88.5	3.1	0.0

Ⅶ. 체류사항

25. 한국 체류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한국 체류자가 가장 많음

- (외국인) 한국 체류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26.4%)이 가장 많고, 『1년 이상~3년 미만』 (26.0%), 『3년 이상~5년 미만』 (21.5%)의 순으로 많음

* 관광, 출장, 친인척 방문 등의 단기 방문기간은 제외하고 91일 이상 장기체류기간만 해당

- (귀화허가자) 한국 체류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 (57.9%)이 가장 많고, 『10년 이상』 (34.3%) 순으로 많음

<한국 체류기간>

(단위: %)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외국인	100.0	1.8	8.6	26.0	21.5	26.4	15.7
남자	100.0	1.7	8.5	26.8	22.0	26.5	14.6
여자	100.0	1.9	8.7	25.0	20.9	26.3	17.3
귀화허가자	100.0	0.0	0.0	0.9	6.8	57.9	34.3

26.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연장방법

◇ 외국인은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기간 연장』의 방법으로 계속 체류를 희망

-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86.1%임

* 영주권 소지 외국인은 제외

- 체류 연장방법은 『체류기간 연장(49.8%)』이 가장 많고, 『영주자격 취득』 (17.4%), 『한국 국적 취득』 (10.8%)의 순으로 많음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 연장방법>

(단위: %)

	합계	계속 체류 희망	체류 연장방법					계속 체류 희망하지 않음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취득	한국 국적 취득	기타	
외국인	100.0	86.1	49.8	8.0	17.4	10.8	0.1	13.9
남자	100.0	84.6	55.4	8.0	15.4	5.8	0.1	15.4
여자	100.0	88.1	42.2	7.9	20.2	17.6	0.2	11.9

Ⅷ.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상주인구(만 15세 이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20대』 연령, 『경기·인천』 지역 거주,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음

□ (국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상주인구 기준)의 국적은 『베트남』 (14.5%)이 가장 많고, 『캄보디아』 (13.2%), 『인도네시아』 (11.4%), 『네팔』 (10.6%), 『필리핀』 (9.7%) 순으로 많음

<국적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전체	국적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기타
비전문취업	255.9	37.2	33.9	29.2	27.1	24.9	23.6	22.2	57.8
(구성비)	(100.0)	(14.5)	(13.2)	(11.4)	(10.6)	(9.7)	(9.2)	(8.7)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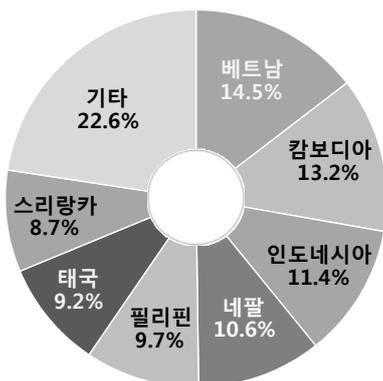
□ (거주 지역)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지역(43.7%)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부산·울산·경남』 (19.3%), 『대전·세종·충남·북』 (13.2%), 『대구·경북』 (10.5%) 순으로 많이 거주

<거주 지역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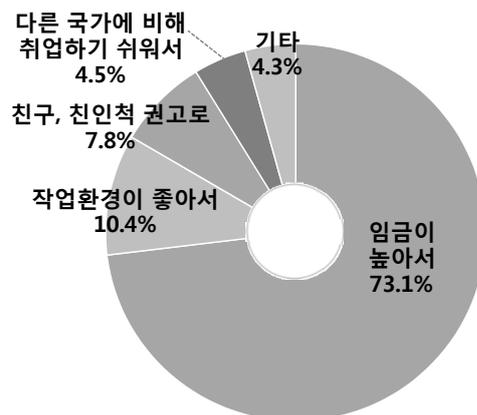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남·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비전문취업	255.9	115.3	3.4	111.9	140.6	49.5	33.9	26.9	23.7	6.7
(구성비)	(100.0)	(45.1)	(1.3)	(43.7)	(54.9)	(19.3)	(13.2)	(10.5)	(9.3)	(2.6)

<국적별 비전문 체류자격(E-9) 외국인>



<해외 취업지로 한국 선택 이유>



- (연령)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48.4%)가 가장 많고, 『30대』 (41.9%), 『40대』 (8.8%) 순으로 많음

<연령대별 비전문 취업자격(E-9) 외국인>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전체	연령대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비전문취업 (구성비)	255.9 (100.0)	123.8 (48.4)	107.3 (41.9)	22.6 (8.8)	1.8 (0.7)	0.4 (0.2)

- (산업) 산업별로는 대부분 『광제조업』 (82.5%)에 종사

<취업 중인 산업별 비전문 취업자격(E-9) 외국인>

(단위: %)

	비전문취업 전체	취업 중인 산업					
		농림어업	광제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기타
비전문취업	100.0	11.1	82.5	82.5	3.4	1.2	1.8

28. 해외 취업지로 한국 선택 이유

◇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가 가장 많음

- 비전문취업(E-9) 취업자격 외국인이 해외 취업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임금이 높아서』 (18만 7천명, 73.1%)가 가장 많고, 『작업환경이 좋아서』 (2만 7천명, 10.4%) 순으로 많음

<해외 취업지로 한국 선택 이유>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전체	임금이 높아서	작업환경이 좋아서	한국 취업 경험 있는 친구, 친인척 권고로	다른 국가에 비해 취업하기 쉬워서	기타
비전문취업 (구성비)	255.9 (100.0)	187.1 (73.1)	26.5 (10.4)	19.9 (7.8)	11.5 (4.5)	11.0 (4.3)

29.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

◇ 한국에 입국하기 전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다소 알고 있었음』 이 많음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조건에 대해 『다소 알고 있었음』 (13만 7천명, 53.6%)이 가장 많고, 『매우 잘 알고 있었음』 (7만 1천명, 27.5%), 『별로 알지 못했음』 (3만 9천명, 15.2%) 순으로 많음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전체	매우 잘 알고 있었음	다소 알고 있었음	별로 알지 못했음	전혀 몰랐음
비전문취업	255.9	70.5	137.2	39.0	9.2
(구성비)	(100.0)	(27.5)	(53.6)	(15.2)	(3.6)

30. 지난 1년간 한국 내 직장에서 경험한 사항들(복수응답)

◇ 지난 1년간 직장에서 부상, 해고, 갈등, 욕설과 같은 경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이 많음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은 지난 1년간 직장에서 부상, 임금체불, 해고, 갈등, 욕설 등의 경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75.2%)이 가장 많음
- 지난 1년간 경험한 사항들로는 『빠른 작업 속도에 기인한 어려움』 (8.1%), 『작업 중 부상』 (6.1%), 『욕설』 (5.2%) 등이 있음

<지난 1년간 한국 내 직장에서 경험한 사항들(복수응답)>

(단위: %)

	작업 중 부상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빠른 작업 속도에 기인한 어려움	직장 내 한국인과 갈등	욕설	기타	해당사항 없음
비전문취업	6.1	4.3	4.1	8.1	4.4	5.2	2.7	75.2

31. 지난 1년간 경험한 부상의 주된 원인 및 치료비 지불방법

◇ 경험한 부상의 주원인은 『실수』, 부상 치료비는 『사업주 전액 부담』 이 가장 많음

- (부상 원인)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이 지난 1년간 직장에서 경험한 부상의 주된 원인은 『실수로』 (70.1%)가 가장 많고, 『한국말을 몰라서』 (11.5%) 순으로 많음
- (치료비 지불) 부상 치료비는 『사업주 전액 부담』 (40.8%)이 가장 많고, 『산업재해 보상금』 (29.3%), 『기타』 (29.9%) 순으로 많음

<지난 1년간 부상의 주된 원인 및 치료비 지불방법>

(단위: %)

	합계	부상의 주된 원인					치료비 지불 방법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	한국말을 몰라서	실수로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처리	사업주 전액 부담	기타
비전문취업	100.0	6.4	5.1	7.0	11.5	70.1	29.3%	40.8%	29.9%

32. 이전 직장 퇴사 사유

◇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는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가 가장 많음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이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는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27.5%)가 가장 많고, 『임금이 낮아서』 (24.3%),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16.1%) 순으로 많음

<이전 직장 퇴사 사유>

(단위: %)

	합계	임금이 낮아서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숙소 또는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임금이 체불되어서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기타
비전문취업	100.0	24.3	16.1	5.2	5.9	5.5	27.5	15.5

IX. 유학생 체류자격 외국인 (D-2, D-4-1, D-4-7)

33. 유학생 체류자격 상주인구(만 15세 이상)

◇ 유학생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여자』, 『20대』, 『중국』 국적으로 『서울』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

- (성별 및 국적) 유학생(상주인구 기준)은 9만 9천명이며, 이중 남자는 4만 4천명(44.7%), 여자는 5만 5천명(55.3%)
 - 국적은 『중국』 이 4만 8천명(48.5%), 『베트남』 이 1만 8천명(18.2%)으로 2개국의 유학생이 전체의 66.7%임

<성별 및 국적별 유학생 상주인구>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성별		국적			
		남자	여자	중국	베트남	몽골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44.1 (44.7)	54.5 (55.3)	47.8 (48.5)	17.9 (18.2)	6.0 (6.1)	27.0 (27.4)

- (연령)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91.5%)가 9만 명으로 가장 많음

<연령대별 유학생 상주인구>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90.2 (91.5)	7.6 (7.7)	0.7 (0.7)	0.1 (0.1)	0 (0.0)

- (거주 지역) 지역별로는 『서울』 (3만 7천명, 37.6%)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경기·인천』 (1만 6천명, 15.7%), 『대전·세종·충남북』 (1만 3천명, 13.6%) 순으로 많이 거주

<거주 지역별 유학생 상주인구>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세종 충남북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52.5 (53.2)	37.1 (37.6)	15.5 (15.7)	46.1 (46.8)	10.6 (10.8)	13.4 (13.6)	8.9 (9.0)	9.4 (9.5)	3.7 (3.8)

34.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1순위)

◇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 중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분야와 잘 맞아서』가 23.4%

□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는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분야와 잘 맞아서』(2만 3천명, 23.4%)가 가장 많고, 『교육과정이 우수해서』(2만 1천명, 21.6%), 『기타』(1만 3천명, 13.6%) 순으로 많음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1순위)>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분야와 잘 맞아서	한국 관련 공부를 위해	한국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가족, 친구, 교수 등의 권유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21.3 (21.6)	23.1 (23.4)	9.9 (10.0)	10.8 (11.0)	5.2 (5.3)	7.6 (7.7)	7.3 (7.4)	13.4 (13.6)
남자	44.1	12.1	9.6	3.9	5.8	2.8	3.3	1.8	4.8
여자	54.5	9.2	13.5	6	4.9	2.4	4.3	5.6	8.7

35.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

◇ 한국에서 『사회과학』을 주전공으로 가장 많이 공부

□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은 『사회과학』(3만명, 30.8%)이 가장 많고, 『교육, 예술 및 인문학』(1만 7천명, 17.0%), 『어학연수』(1만 6천명 16.5%) 순으로 많음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한국학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어학연수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9.6 (9.7)	16.8 (17.0)	30.4 (30.8)	8.1 (8.2)	14.8 (15.0)	16.3 (16.5)	2.7 (2.7)
남자	44.1	2.3	5.0	13.3	3.7	10.9	7.5	1.4
여자	54.5	7.3	11.8	17	4.5	3.9	8.7	1.3

36. 한국에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 방법(1순위)

◇ 학비와 생활비 모두 『부모님의 지원』에 가장 많이 의존함

- (학비) 학비 마련 방법은 『부모님 지원』(5만 5천명, 56.1%)에 가장 많고, 『학교 장학금』(2만명, 19.9%), 『한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1만 3천명, 13.0%) 순으로 많음

<한국에서 학비 마련 방법(1순위)>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한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본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모아 놓은 돈	부모님 지원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12.8 (13.0)	4.2 (4.3)	19.6 (19.9)	4.6 (4.7)	55.3 (56.1)	2.1 (2.1)
남자	44.1	7.2	2.4	7.6	2.2	23.8	0.9
여자	54.5	5.6	1.8	12	2.5	31.5	1.2

- (생활비) 생활비 마련 방법은 『부모님 지원』(6만 1천명, 62.3%)이 가장 많고, 『한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1만 1천명, 10.9%), 『학교 장학금』(8천명, 8.4%) 순으로 많음

<한국에서 생활비 마련 방법(1순위)>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한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본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모아 놓은 돈	부모님 지원	아르바이트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10.7 (10.9)	2.9 (2.9)	8.3 (8.4)	8.1 (8.2)	61.4 (62.3)	5.3 (5.4)	1.8 (1.8)
남자	44.1	6.1	2.0	3.1	3.6	26.0	2.6	0.6
여자	54.5	4.6	0.9	5.1	4.5	35.4	2.7	1.3

37.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유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 함

□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유학생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 (46.0%)이 가장 높고, 『약간 만족』 (39.0%), 보통(12.8%) 순으로 높음
(만족: 85.0%, 보통: 12.8%, 불만족: 2.1%)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합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유학생	100.0	46.0	39.0	12.8	1.9	0.2
남자	100.0	44.4	39.5	13.2	2.7	0.2
여자	100.0	47.3	38.7	12.5	1.3	0.4

38. 졸업 후 향후 계획

◇ 졸업 후 『본국으로 출국』 계획이 가장 많음

□ 졸업 후 향후 계획은 『본국으로 출국』 (4만 7천명, 48.1%)이 가장 많고, 『한국에 계속 체류』 (4만 1천명, 41.2%), 『제3국으로 출국』 (1만 1천명, 10.8%) 순으로 많음
○ 졸업 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계획인 경우 『한국에서 취업』 (24.0%)하는 것을 『진학』 (16.8%) 보다 더 많이 희망하지만, 제3국으로 출국할 계획인 경우는 『진학』 (7.1%) 하는 것을 『취업』 (3.7%) 하는 것보다 더 희망함

<졸업 후 향후 계획>

(단위: 천명, %)

	유학생 전체	한국에 계속 체류	향후 계획			본국으로 출국	제3국으로 출국	향후 계획		
			취업	진학	기타			취업	진학	기타
유학생	98.6	40.6	23.7	16.6	0.2	47.4	10.6	3.6	7.0	0.0
(구성비)	(100.0)	(41.2)	(24.0)	(16.8)	(0.2)	(48.1)	(10.8)	(3.7)	(7.1)	(0.0)
남자	44.1	18.1	11.1	6.8	0.2	21.1	4.9	1.3	3.6	0.0
여자	54.5	22.5	12.6	9.9	0.0	26.3	5.7	2.3	3.5	0.0

I. 15세 이상 국내 상주 이민자 특성	59
II. 고용	63
III. 교육	74
IV. 주거 및 생활환경	75
V. 소득과 소비	78
VI. 자녀교육	83
VII. 체류사향	85
VIII.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국인	87
IX. 유학생(D-2, D-4-1, D-4-7) 체류자격 외국인	89

I. 15세 이상 국내 상주 이민자 특성

1. 15세 이상 국내 상주인구

1-1. 성별·국적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아시아				기타 아시아	아시아 이외
			아시아	한국계 중국인	중국	베트남		
이민자 2017년 합계 (구성비)		1,278.0 (100.0)	1,177.0 (92.1)	511.0 (40.0)	148.4 (11.6)	150.4 (11.8)	367.2 (28.7)	101.0 (7.9)
남자 (구성비)		704.8 (100.0)	650.5 (92.3)	267.7 (38.0)	57.6 (8.2)	64.5 (9.2)	260.8 (37.0)	54.3 (7.7)
여자 (구성비)		573.2 (100.0)	526.5 (91.9)	243.4 (42.5)	90.8 (15.8)	85.9 (15.0)	106.4 (18.6)	46.7 (8.1)
외국인	2016년 합계 (구성비)	1,199.6 (100.0)	1,105.1 (92.1)	497.3 (41.5)	137.8 (11.5)	122.6 (10.2)	347.4 (29.0)	94.5 (7.9)
	남자 (구성비)	684.4 (100.0)	633.2 (92.5)	267.1 (39.0)	55.6 (8.1)	58.7 (8.6)	251.8 (36.8)	51.2 (7.5)
	여자 (구성비)	515.2 (100.0)	471.9 (91.6)	230.2 (44.7)	82.2 (16.0)	63.9 (12.4)	95.6 (18.6)	43.3 (8.4)
	2017년 합계 (구성비)	1,225.3 (100.0)	1,124.9 (91.8)	490.7 (40.0)	141.0 (11.5)	133.7 (10.9)	359.6 (29.3)	100.3 (8.2)
	남자 (구성비)	695.7 (100.0)	641.5 (92.2)	261.2 (37.5)	56.4 (8.1)	64.4 (9.3)	259.6 (37.3)	54.1 (7.8)
	여자 (구성비)	529.6 (100.0)	483.4 (91.3)	229.5 (43.3)	84.6 (16.0)	69.3 (13.1)	100.0 (18.9)	46.2 (8.7)
귀화 허가자	2017년 합계 (구성비)	52.7 (100.0)	52.0 (98.7)	20.4 (38.7)	7.4 (14.0)	16.7 (31.7)	7.6 (14.4)	0.7 (1.3)
	남자 (구성비)	9.1 (100.0)	8.9 (97.8)	6.4 (70.3)	1.2 (13.2)	0.1 (1.1)	1.2 (13.2)	0.2 (2.2)
	여자 (구성비)	43.6 (100.0)	43.1 (98.9)	13.9 (31.9)	6.2 (14.2)	16.6 (38.1)	6.4 (14.7)	0.5 (1.1)

주) 귀화허가자는 귀화 이전 국적을 의미

1-2. 거주 지역별·연령별·체류자격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2016년	2017년		
		외국인	이민자	외국인	귀화허가자
전체		1,199.6	1,278.0	1,225.3	52.7
거주 지역	수도권	766.1	805.2	775.6	29.5
	서울	294.0	308.1	296.4	11.6
	경기·인천	472.1	497.1	479.2	17.9
	비수도권	433.5	472.8	449.6	23.2
	부산·울산·경남	139.5	144.1	137.7	6.4
	대전·세종·충남·북	116.9	131.5	125.9	5.5
	대구·경북	74.9	80.7	76.8	3.9
	광주·전남·북	73.6	82.8	77.5	5.3
강원·제주	28.7	33.8	31.7	2.0	
연령	15~29세	373.8	388.1	372.1	16.0
	30~39세	310.3	345.8	326.8	19.0
	40~49세	204.0	211.8	203.8	8.0
	50~59세	203.2	205.1	199.2	6.0
	60세 이상	108.3	127.2	123.4	3.7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258.3	-	255.9	-
	방문취업(H-2)	232.7	-	201.5	-
	전문인력(E-1~E-7)	39.8	-	38.5	-
	유학생(D-2, D-4-1, 7)	85.6	-	98.6	-
	재외동포(F-4)	242.5	-	277.9	-
	영주(F-5)	99.8	-	102.7	-
	결혼이민(F-2-1, F-6)	110.1	-	108.5	-
	기타	130.9	-	141.7	-

2. 이민자 가구 특성

2-1. 배우자 유·무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배우자 있음	배우자의 거주지별			배우자 없음
				국외 거주	국내 함께 거주	국내 따로 거주	
외국인	2016년 합계 (구성비)	1,199.6 (100.0)	766.2 (63.9)	256.8 (21.4)	480.4 (40.0)	29.0 (2.4)	433.4 (36.1)
	남자 (구성비)	684.4 (100.0)	413.0 (60.3)	198.2 (29.0)	201.0 (29.4)	13.7 (2.0)	271.4 (39.7)
	여자 (구성비)	515.2 (100.0)	353.3 (68.6)	58.6 (11.4)	279.4 (54.2)	15.3 (3.0)	161.9 (31.4)
	2017년 합계 (구성비)	1,225.3 (100.0)	779.8 (63.6)	247.7 (20.2)	513.5 (41.9)	18.7 (1.5)	445.4 (36.4)
	남자 (구성비)	695.7 (100.0)	433.2 (62.3)	198.4 (28.5)	224.1 (32.2)	10.7 (1.5)	262.5 (37.7)
	여자 (구성비)	529.6 (100.0)	346.7 (65.5)	49.3 (9.3)	289.4 (54.6)	8.0 (1.5)	182.9 (34.5)
귀화 허가자	2017년 합계 (구성비)	52.7 (100.0)	43.4 (82.4)	0.5 (0.9)	42.3 (80.3)	0.6 (1.1)	9.4 (17.8)
	남자 (구성비)	9.1 (100.0)	6.1 (67.0)	0.2* (2.2)	5.8 (63.7)	0.1* (1.1)	3.0 (33.0)
	여자 (구성비)	43.6 (100.0)	37.3 (85.6)	0.3 (0.7)	36.5 (83.7)	0.4 (0.9)	6.3 (14.4)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2-2. 자녀 유·무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명, %)

		15세 이상 인구	평균 자녀 수	자녀 있음	자녀의 거주지별			자녀 없음
					자녀 모두 국내 거주	자녀 일부 국내 나머지 국외 거주	자녀 모두 국외 거주	
외국인	합계 (구성비)	1,225.3 (100.0)	1.6 -	737.5 (60.2)	341.9 (27.9)	83.7 (6.8)	311.9 (25.5)	487.7 (39.8)
	남자 (구성비)	695.7 (100.0)	1.6 -	382.5 (55.0)	129.7 (18.6)	36.0 (5.2)	216.8 (31.2)	313.2 (45.0)
	여자 (구성비)	529.6 (100.0)	1.7 -	355.1 (67.1)	212.2 (40.1)	47.7 (9.0)	95.1 (18.0)	174.5 (32.9)
귀화 허가자	합계 (구성비)	52.7 (100.0)	1.7 -	44.1 (83.7)	38.9 (73.8)	2.1 (4.0)	3.1 (5.9)	8.6 (16.3)
	남자 (구성비)	9.1 (100.0)	1.6 -	5.9 (64.8)	4.4 (48.4)	0.7 (7.7)	0.9 (9.9)	3.2 (35.2)
	여자 (구성비)	43.6 (100.0)	1.7 -	38.1 (87.4)	34.5 (79.1)	1.4 (3.2)	2.3 (5.3)	5.5 (12.6)

2-3. 가구원 수별 국내 상주인구

(단위: 천명, 명, %)

	15세 이상 인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평균 가구원 수
외국인	1,225.3	237.4	357.1	289.7	341.1	2.8
(구성비)	(100.0)	(19.4)	(29.1)	(23.6)	(27.8)	-
남자	695.7	153.8	197.7	160.8	183.4	2.8
(구성비)	(100.0)	(22.1)	(28.4)	(23.1)	(26.4)	-
여자	529.6	83.5	159.4	128.9	157.7	2.9
(구성비)	(100.0)	(15.8)	(30.1)	(24.3)	(29.8)	-
귀화허가자	52.7	2.6	9.2	14.6	26.3	3.6
(구성비)	(100.0)	(4.9)	(17.5)	(27.7)	(49.9)	-
남자	9.1	0.9	2.3	2.8	3.1	3.2
(구성비)	(100.0)	(9.9)	(25.3)	(30.8)	(34.1)	-
여자	43.6	1.7	6.9	11.8	23.2	3.7
(구성비)	(100.0)	(3.9)	(15.8)	(27.1)	(53.2)	-

II. 고용

3.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이민자 2017년 합계	1,278.0	904.3	868.0	36.3	373.7	70.8	67.9	4.0	
남자	704.8	583.2	567.3	15.9	121.5	82.7	80.5	2.7	
여자	573.2	321.1	300.7	20.4	252.1	56.0	52.5	6.4	
외국인	2016년 합계	1,199.6	869.5	835.2	34.3	330.2	72.5	69.6	3.9
	남자	684.4	583.2	566.1	17.1	101.2	85.2	82.7	2.9
	여자	515.2	286.3	269.1	17.2	229.0	55.6	52.2	6.0
	2017년 합계	1,225.3	868.7	834.2	34.5	356.6	70.9	68.1	4.0
	남자	695.7	576.1	560.5	15.6	119.5	82.8	80.6	2.7
	여자	529.6	292.6	273.7	18.8	237.0	55.2	51.7	6.4
귀화 허가자	2017년 합계	52.7	35.6	33.8	1.8	17.1	67.6	64.1	5.1
	남자	9.1	7.1	6.9	0.2*	2.0	78.0	75.8	2.8*
	여자	43.6	28.5	26.9	1.6	15.1	65.4	61.7	5.6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1. 외국인 특성별 경제활동상태(1)

(단위: 천명, %)

	2016년					2017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전체	869.5	835.2	330.2	72.5	69.6	868.7	834.2	356.6	70.9	68.1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258.0	257.8	0.3*	99.9	99.8	255.7	255.6	0.2*	99.9	99.9
	방문취업(H-2)	199.9	192.0	32.8	85.9	82.5	174.4	166.7	27.1	86.6	82.7
	전문인력(E-1~E-7)	39.6	39.6	0.1*	99.5	99.5	38.2	38.2	0.4*	99.2	99.2
	유학생(D-2, D-4-1, 7)	14.6	11.2	71.0	17.1	13.1	15.4	12.4	83.2	15.6	12.6
	재외동포(F-4)	160.4	149.9	82.1	66.1	61.8	194.0	181.6	83.9	69.8	65.3
	영주(F-5)	77.2	73.9	22.6	77.4	74.0	78.1	74.8	24.5	76	72.8
	결혼이민(F-2-1, F-6)	58.4	54.6	51.7	53.0	49.6	54.0	52.0	54.5	49.8	47.9
	기타	61.3	56.3	69.6	46.8	43.0	58.9	53.0	82.8	41.6	37.4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1. 외국인 특성별 경제활동상태[2]

(단위: 천명, %)

	2016년					2017년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전체	869.5	835.2	330.2	72.5	69.6	868.7	834.2	356.6	70.9	68.1	
국적	아시아	809.5	778.6	295.6	73.3	70.5	802.6	772.2	322.4	71.3	68.6
	한국계 중국인	387.9	369.9	109.4	78.0	74.4	382.3	364.5	108.4	77.9	74.3
	중국	58.5	52.4	79.3	42.5	38.0	55.9	50.3	85.1	39.6	35.7
	베트남	72.2	70.8	50.4	58.9	57.7	68.8	66.3	64.9	51.5	49.6
	기타 아시아	290.9	285.5	56.5	83.7	82.2	295.7	291.0	63.9	82.2	80.9
	우즈베키스탄	32.8	31.2	6.2	84.1	80.0	36.6	34.8	6.2	85.5	81.3
	필리핀	31.9	31.4	9.3	77.4	76.2	31.3	31.2	11.1	73.8	73.6
	인도네시아	36.3	36.3	1.4*	96.3	96.3	33.9	33.9	1.7*	95.2	95.2
	일본	7.9	7.8	8.5	48.2	47.6	7.7	7.6	8.3	48.1	47.5
	태국	25.1	25.1	1.0*	96.2	96.2	25.7	25.3	2.4*	91.5	90.0
	몽골	10.2	9.5	6.9	59.6	55.6	9.6	9.2	8.3	53.6	51.4
	캄보디아	37.9	37.8	3.6	91.3	91.1	36.1	36.1	4.5	88.9	88.9
	네 팔	27.7	27.4	1.5	94.9	93.8	29.8	29.7	0.8*	97.4	97.1
	기타	81.1	79.0	18.1	81.8	79.6	84.9	83.2	20.7	80.4	78.8
	아시아 이외	60.0	56.6	34.5	63.5	59.9	66.1	62.0	34.2	65.9	61.8
	미국·캐나다	30.6	28.4	21.2	59.1	54.8	30.3	29.3	19.9	60.4	58.4
	유럽	17.0	16.6	7.9	68.3	66.7	22.8	21.2	8.1	73.8	68.6
	오세아니아	4.0	3.8	1.5*	72.7	69.1	4.1	3.4	1.2*	77.4	64.2
	기타	8.4	7.8	3.9*	68.3	63.4	8.9	8.1	5.1	63.6	57.9
거주 지역	수도권	554.2	529.4	211.9	72.3	69.1	558.4	535.5	217.2	72.0	69.0
	서울	186.7	175.9	107.3	63.5	59.8	185.3	174.2	111.1	62.5	58.8
	경기·인천	367.5	353.5	104.6	77.8	74.9	373.1	361.3	106.1	77.9	75.4
	비수도권	315.3	305.8	118.2	72.7	70.5	310.3	298.7	139.4	69.0	66.4
	부산·울산·경남	108.7	105.7	30.8	77.9	75.8	99.3	95.6	38.4	72.1	69.4
	대전·세종·충남·북	84.0	81.8	32.9	71.9	70.0	88.4	85.5	37.6	70.2	67.9
	대구·경북	52.3	50.5	22.7	69.7	67.3	51.0	48.6	25.8	66.4	63.3
	광주·전남·북	49.4	47.5	24.1	67.2	64.6	50.1	48.6	27.4	64.6	62.7
	강원·제주	20.9	20.4	7.8	72.8	71.1	21.5	20.4	10.3	67.6	64.2
연령	15~29세	247.6	235.2	126.2	66.2	62.9	237.2	224.2	134.9	63.7	60.3
	30~39세	256.1	247.4	54.2	82.5	79.7	262.4	255.2	64.4	80.3	78.1
	40~49세	167.2	161.6	36.9	81.9	79.2	166.2	160.3	37.6	81.6	78.7
	50~59세	151.9	146.9	51.3	74.8	72.3	143.5	137.9	55.6	72.0	69.2
	60세 이상	46.7	44.1	61.6	43.1	40.7	59.4	56.6	64.0	48.1	45.9
교육 정도	초졸이하	80.7	78.3	51.4	61.1	59.3	76.7	73.8	51.1	60.1	57.8
	중졸	183.0	177.9	59.1	75.6	73.5	184.9	180.2	62.0	74.9	73.0
	고졸	384.4	369.2	131.0	74.6	71.6	348.6	333.8	146.1	70.5	67.5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221.3	209.7	88.7	71.4	67.6	258.5	246.4	97.3	72.6	69.2

주) 상대 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2. 귀화허가자 특성별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

		2017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전체		35.6	33.8	17.1	67.6	64.1
국적	아시아	35.3	33.5	16.7	67.9	64.4
	한국계 중국인	13.4	12.7	6.9	65.7	62.3
	중국	4.9	4.7	2.5	66.2	63.5
	베트남	12.0	11.4	4.7	71.9	68.3
	기타 아시아	5.0	4.8	2.5	65.8	63.2
	아시아 이외	0.3	0.3	0.4	42.9	42.9
거주 지역	수도권	19.5	18.5	10.0	66.1	62.7
	서울	7.7	7.4	3.9	66.4	63.8
	경기·인천	11.8	11.1	6.1	65.9	62.0
	비수도권	16.1	15.3	7.1	69.4	65.9
	부산·울산·경남	4.3	4.0	2.1	67.2	62.5
	대전·세종·충남북	4.1	4.0	1.5	74.5	72.7
	대구·경북	2.5	2.5	1.3	64.1	64.1
	광주·전남북	3.7	3.5	1.6	69.8	66.0
	강원·제주	1.5	1.4	0.6	75.0	70.0
연령	15~29세	10.2	9.6	5.8	63.8	60.0
	30~39세	13.3	12.7	5.8	70.0	66.8
	40~49세	6.0	5.7	2.0	75.0	71.3
	50~59세	4.6	4.4	1.4	76.7	73.3
	60세 이상	1.6	1.5	2.1	43.2	40.5
교육정도	초졸 이하	3.3	3.2	2.5	56.9	55.2
	중졸	9.5	9.0	4.7	67.4	63.8
	고졸	16.0	15.2	7.3	68.4	65.0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6.8	6.5	2.6	72.3	69.1

4. 취업자(1)

(단위: 천명)

		외국인						귀화허가자		
		2016년 전체	남자	여자	2017년 전체	남자	여자	2017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835.2	566.1	269.1	834.2	560.5	273.7	33.8	6.9	26.9
국적	아시아	778.6	529.6	249.0	772.2	521.7	250.5	33.5	6.8	26.8
	한국계 중국인	369.9	220.4	149.5	364.5	218.3	146.2	12.7	4.9	7.8
	중국	52.4	25.9	26.4	50.3	22.1	28.2	4.7	0.9	3.7
	베트남	70.8	47.2	23.6	66.3	41.9	24.3	11.4	0.0*	11.4
	기타 아시아	285.5	236	49.4	291.0	239.3	51.7	4.8	0.9	3.9
	아시아 이외	56.6	36.4	20.1	62.0	38.8	23.2	0.3	0.1*	0.2
연령	15~29세	235.2	168.4	66.7	224.2	157.9	66.3	9.6	1.1	8.4
	30~39세	247.4	184.8	62.6	255.2	193.0	62.3	12.7	1.9	10.8
	40~49세	161.6	105.0	56.6	160.3	99.0	61.3	5.7	1.7	4.0
	50~59세	146.9	81.7	65.2	137.9	77.0	61.0	4.4	1.6	2.8
	60세 이상	44.1	26.2	17.9	56.6	33.7	22.9	1.5	0.6	0.9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257.8	234.8	23.0	255.6	233.3	22.2	-	-	-
	방문취업(H-2)	192.0	119.4	72.6	166.7	105.5	61.2	-	-	-
	전문인력(E-1~E-7)	39.6	23.9	15.7	38.2	23.0	15.2	-	-	-
	유학생(D-2, D-4-1, 7)	11.2	5.1	6.1	12.4	4.9	7.5	-	-	-
	재외동포(F-4)	149.9	88.2	61.7	181.6	105.6	76.0	-	-	-
	영주(F-5)	73.9	37.7	36.2	74.8	37.9	36.9	-	-	-
	결혼이민(F-2-1, F-6)	54.6	13.7	40.9	52.0	14.0	38.0	-	-	-
	기타	56.3	43.4	12.9	53.0	36.2	16.8	-	-	-
산업	농림어업	45.2	31.1	14.1	48.3	33.6	14.7	1.6	0.1*	1.6
	광·제조업	400.7	325.3	75.4	382.9	309.0	73.8	13.0	1.9	11.0
	제조업	400.2	324.8	75.4	381.6	307.8	73.8	13.0	1.9	11.0
	건설업	72.3	69.5	2.9*	90.3	86.1	4.2	2.2	1.9	0.2
	도소매·음식·숙박	156.7	51.6	105.1	154.7	47.0	107.7	10.3	1.4	8.8
	전기·운수·통신·금융	11.1	9.3	1.8*	9.5	6.5	3.1*	0.7	0.3*	0.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49.1	79.3	69.9	148.4	78.3	70.2	6.0	1.2	4.8
	기타	11.1	9.3	1.8*	9.5	6.5	3.1*	0.7	0.3*	0.4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801.9	548.8	253.0	799.0	545.7	253.3	29.1	6.1	23.0
	상용근로자	515.0	389.3	125.7	492.7	366.9	125.8	15.9	3.1	12.8
	임시·일용근로자	286.9	159.5	127.3	306.3	178.7	127.6	13.2	2.9	10.3
	비임금근로자	33.3	17.2	16.1	35.2	14.8	20.4	4.7	0.8	3.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4. 취업자(2)

(단위: 천명)

		외국인					귀화허가자				
		2016년 전체	남자	여자	2017년 전체	남자	여자	2017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835.2	566.1	269.1	834.2	560.5	273.7	33.8	6.9	26.9	
취업 시간	일시 휴직	8.2	4.9	3.3	7.1	4.3	2.9*	0.4	0.0*	0.3	
	20시간 미만	19.9	6.5	13.5	16.1	6.8	9.3	1.0	0.0*	1.0	
	20시간~30시간 미만	29.4	12.1	17.4	25.9	7.5	18.4	2.1	0.1*	2.0	
	30시간~40시간 미만	33.9	15.6	18.3	38.7	17.3	21.4	3.3	0.3*	3.0	
	40시간~50시간 미만	339.3	240.4	98.9	337.5	236.1	101.4	15.9	3.0	12.9	
	50시간~60시간 미만	195.9	156.3	39.6	169.4	132.1	37.3	4.5	1.3	3.2	
	60시간 이상	208.6	130.4	78.1	239.4	156.5	83.0	6.6	2.1	4.5	
사업체 종사자 규모	1~4명	178.0	83.3	94.7	160.3	71.0	89.3	10.3	1.6	8.7	
	5~9명	164.8	113.0	51.8	179.1	115.4	63.7	6.1	1.2	4.8	
	10~29명	231.4	175.2	56.2	265.9	201.6	64.3	9.1	1.9	7.1	
	30~49명	104.4	76.7	27.7	69.7	54.7	15.0	2.2	0.6	1.6	
	50~299명	134.9	100.4	34.5	130.0	96.9	33.1	5.2	1.1	4.1	
	300명 이상	21.8	17.5	4.3	29.1	20.8	8.3	1.0	0.3	0.6	
근무 지역	수도권	522.6	335.3	187.2	520.3	329.1	191.2	18.4	5.3	13.1	
	서울	161.1	82.4	78.7	142.2	66.0	76.2	7.0	2.0	5.0	
	경기·인천	361.4	252.9	108.6	378.1	263.1	115.0	11.4	3.3	8.1	
	비수도권	312.6	230.8	81.9	313.9	231.4	82.5	15.4	1.6	13.9	
	부산·울산·경남	106.5	82.9	23.6	96.0	75.0	21.0	4.0	0.4	3.6	
	대전·세종·충남·북	86.2	63.1	23.1	95.5	69.0	26.5	4.0	0.5	3.5	
	대구·경북	50.8	38.8	12.0	50.3	38.1	12.2	2.5	0.2	2.3	
	광주·전남·북	47.3	31.9	15.4	49.9	34.4	15.5	3.5	0.2	3.3	
강원·제주	21.8	14.1	7.7	22.2	14.9	7.3	1.4	0.2*	1.3		
동일 직장 근속 기간	6개월 미만	162.1	95.6	66.5	159.8	96.2	63.6	7.6	1.9	5.7	
	6개월~1년 미만	148.3	96.1	52.2	129.5	82.6	46.9	3.7	0.6	3.1	
	1년~2년 미만	220.8	150.4	70.4	192.3	128.0	64.4	7.0	1.0	6.0	
	2년~3년 미만	133.6	96.2	37.3	122.2	89.5	32.7	4.5	0.6	3.9	
	3년 이상	170.5	127.8	42.7	230.4	164.2	66.2	10.9	2.7	8.3	
지난 1년 직장 변경 사유	없었음	703.1	482.9	220.2	678.7	460.4	218.3	27.2	5.2	22.0	
	있었음	132.1	83.2	48.9	155.5	100.1	55.4	6.6	1.6	5.0	
	변 경	근로조건 불만족	57.7	37.2	20.5	50.3	32.3	18.0	2.6	0.7	1.9
	사 유	개인사정	28.6	14.1	14.6	35.1	18.4	16.7	2.0	0.3	1.7
	직장휴폐업	35.6	24.9	10.6	8.7	5.4	3.3*	0.4	0.0*	0.4	
	기타	10.2	7.0	3.3	61.4	43.9	17.4	1.7	0.6*	1.1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5. 임금근로자

5-1. 월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합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외국인	2016년 합계	801.9	33.9	395.0	309.1	63.8
	(구성비)	(100.0)	(4.2)	(49.3)	(38.5)	(8.0)
	남자	548.8	7.4	232.2	252.1	57.1
	(구성비)	(100.0)	(1.3)	(42.3)	(45.9)	(10.4)
	여자	253.0	26.6	162.8	57.0	6.7
	(구성비)	(100.0)	(10.5)	(64.3)	(22.5)	(2.6)
	2017년 합계	799.0	32.0	309.2	375.1	82.8
	(구성비)	(100.0)	(4.0)	(38.7)	(46.9)	(10.4)
귀화 허가자	남자	545.7	7.5	169.3	293.0	75.8
	(구성비)	(100.0)	(1.4)	(31.0)	(53.7)	(13.9)
	여자	253.3	24.4	139.9	82.1	7.0
	(구성비)	(100.0)	(9.6)	(55.2)	(32.4)	(2.8)
체류 자격 (외국인)	2017년 합계	29.1	3.7	16.6	6.8	2.0
	(구성비)	(100.0)	(12.7)	(57.0)	(23.4)	(6.9)
	남자	6.1	0.1*	1.1	3.1	1.7
	(구성비)	(100.0)	(1.7)	(18.0)	(50.8)	(27.9)
체류 자격 (외국인)	여자	23.0	3.6	15.5	3.7	0.3
	(구성비)	(100.0)	(15.7)	(67.4)	(16.1)	(1.3)
	2017년 합계	799.0	32.0	309.2	375.1	82.8
	비전문취업(E-9)	255.6	0.0	106.7	141.5	7.4
	방문취업(H-2)	165.4	1.8*	59.6	81.4	22.6
	전문인력(E-1~E-7)	38.2	0.3*	10.1	18.8	9.0
	유학생(D-2, D-4-1, 7)	12.2	8.6	3.0	0.6*	0.0
	재외동포(F-4)	170.8	6.6	62.5	80.8	20.9
	영주(F-5)	68.1	3.8	23.5	29.6	11.3
결혼이민(F-2-1, F-6)	45.3	6.1	23.5	9.9	5.7	
기타	43.5	4.8	20.2	12.5	5.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5-2. 한국 입국 전 취업 유·무 및 입국 전·후 보수 차이별 임금근로자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취업 경험 있음	입국 전·후 보수차이						취업 경험 없음
			입국 후 보수가 더 많음				비슷함	입국 전 보수가 더 적음	
			1.01~2.0배 미만	2.0~3.0배 미만	3.0~5.0배 미만	5.0배 이상			
외국인	100.0	49.9	14.8	26.0	20.7	14.9	16.8	6.7	50.1
남자	100.0	51.1	14.6	26.0	21.8	16.5	15.9	5.2	48.9
여자	100.0	47.4	15.3	26.0	18.0	11.1	18.9	10.7	52.6
귀화허가자	100.0	42.6	10.2*	26.8	19.6	16.1	16.1	10.7	57.4
남자	100.0	42.6	14.3*	28.6	14.3*	0.0*	28.6*	14.3*	57.4
여자	100.0	43.0	10.2*	26.5	20.4	18.4	16.3	10.2	57.4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5-3. 담당 업무의 직무 수준별 임금근로자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 필요한 일	상당한 실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
외국인	100.0	51.0	31.7	9.3	8.0
남자	100.0	46.7	35.5	9.7	8.0
여자	100.0	60.1	23.6	8.4	8.0
귀화허가자	100.0	51.9	32.6	8.9	6.5
남자	100.0	21.3	44.3	19.7	14.8
여자	100.0	60.0	29.6	6.1	4.8
외국인 전체	100.0	51.0	31.7	9.3	8.0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100.0	57.7	36.0	5.2	1.2*
방문취업(H-2)	100.0	59.4	30.2	8.5	1.9*
전문인력(E-1~E-7)	100.0	7.9*	20.4	21.2	50.8
유학생(D-2, D-4-1, 7)	100.0	50.0	24.6	4.1*	21.3
재외동포(F-4)	100.0	44.4	33.2	12.1	10.3
영주(F-5)	100.0	43.6	32.6	12.8	11.0
결혼이민(F-2-1, F-6)	100.0	54.5	26.0	10.4	9.1
기타	100.0	50.6	23.4	10.8	15.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5-4. 직장관련 만족도별 임금근로자

(단위: %)

		외국인						귀화허가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해당 없음
직장 전반적인 만족도	전체	21.4	39.5	32.7	5.8	0.6	-	13.7	40.5	40.2	5.2	0.3*	-
	남자	22.7	39.7	31.5	5.6	0.5	-	16.4	36.1	39.3	6.6	0.0*	-
	여자	18.5	39.0	35.4	6.2	0.9*	-	13.0	41.3	40.4	4.8	0.4*	-
임금 및 보수	전체	19.3	33.2	33.3	12.6	1.6	-	8.6	28.5	41.9	18.6	2.4	-
	남자	21.6	34.3	30.8	12.0	1.4	-	9.8	23.0	44.3	18.0	3.3*	-
	여자	14.4	30.8	38.8	14.0	2.0	-	8.3	30.0	41.3	18.7	2.2	-
근로 시간	전체	17.2	32.2	36.3	12.6	1.7	-	10.3	31.6	41.2	15.1	1.7	-
	남자	18.6	34.0	35.2	10.8	1.4	-	6.6	24.6	47.5	19.7	3.3*	-
	여자	14.2	28.3	38.6	16.5	2.4	-	10.9	33.9	40.0	13.9	1.7	-
작업장 청결 및 안전 정도	전체	24.6	34.3	32.3	7.7	1.1	-	19.2	37.5	35.4	7.2	0.7*	-
	남자	25.2	32.2	33.0	8.4	1.2	-	14.8	34.4	37.7	13.1	0.0*	-
	여자	23.3	38.8	30.8	6.2	1.0*	-	20.4	38.3	34.8	6.1	0.9*	-
고충 처리	전체	19.9	33.6	37.7	7.4	1.4	-	14.1	36.1	40.9	7.9	1.4	-
	남자	20.8	34.2	36.6	7.3	1.2	-	11.5	32.8	42.6	9.8	3.3*	-
	여자	18.1	32.3	40.3	7.6	1.9	-	14.3	37.0	40.4	7.4	0.9*	-
승진 기회	전체	5.3	8.9	22.5	6.2	2.4	54.7	2.7	8.9	24.7	7.9	3.8	51.5
	남자	5.5	10.0	22.8	6.6	2.7	52.4	4.9*	9.8	27.9	8.2	3.3*	44.3
	여자	4.7	6.6	21.8	5.4	1.9	59.6	2.6	8.7	23.9	7.8	3.9	53.5
복지 제도	전체	13.3	21.1	27.1	9.3	2.5	26.7	7.6	22.3	32.3	10.3	2.7	25.1
	남자	14.6	22.9	27.9	8.5	2.2	24.0	6.6	14.8	34.4	11.5	4.9*	27.9
	여자	10.5	17.2	25.3	11.1	3.3	32.6	7.4	24.3	31.7	10.0	2.2	24.8
복지 시설	전체	17.6	27.1	32.4	8.9	2.0	11.9	9.3	26.8	37.8	10.0	2.1	14.1
	남자	19.0	28.9	32.7	8.5	1.8	9.0	9.8	24.6	41.0	9.8	3.3*	11.5
	여자	14.6	23.3	31.9	9.7	2.5	18.1	9.1	27.4	37.0	10.0	2.2	14.8
한국인 직장동료와 관계	전체	27.4	37.3	28.1	2.9	0.5	3.7	22.0	43.3	28.2	2.4	0.3*	3.8
	남자	28.0	38.9	27.9	2.9	0.3*	2.0	21.3	44.3	29.5	3.3*	0.0*	1.6*
	여자	26.0	34.0	28.6	2.9	1.2*	7.4	22.2	42.6	27.8	2.6	0.4*	4.8
한국인 직장상사와 관계	전체	26.6	37.2	28.9	3.4	0.9	3.0	21.0	39.9	31.6	4.1	0.3*	3.1
	남자	26.7	38.6	28.2	3.3	0.8*	2.3	19.7	39.3	34.4	4.9*	1.6*	1.6*
	여자	26.4	34.1	30.3	3.6	1.1*	4.5	21.3	40.4	30.9	3.9	0.4*	3.5

주) 상대 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5-5.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별 임금근로자

(단위: %)

		외국인						귀화허가자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비슷함	약간 적음	매우 적음	모르겠음	매우 많음	약간 많음	비슷함	약간 적음	매우 적음	모르겠음
근로시간	전체	4.6	15.3	71.7	3.9	1.0	3.4	2.7	10.3	79.7	4.5	1.0*	2.1
	남자	5.1	16.7	70.9	3.5	0.9*	2.9	3.3*	13.1	80.3	3.3*	1.6*	0.0
	여자	3.6	12.4	73.6	4.9	1.2*	4.5	2.6	10.0	79.6	4.8	0.9*	2.6
임금	전체	2.6	5.5	60.4	20.3	3.8	7.4	1.7	4.1	72.5	16.8	2.4	2.7
	남자	3.0	5.8	58.8	21.8	4.0	6.6	1.6*	4.9	72.1	16.4	3.3*	0.0
	여자	1.8	4.9	64.0	17.1	3.3	8.9	1.7	3.9	72.6	17.0	2.2	3.5
업무량	전체	3.4	16.0	72.7	3.2	0.7	4.0	2.1	12.7	81.1	2.4	0.3*	1.7
	남자	4.0	17.3	71.7	2.7	0.7	3.5	3.3*	16.4	77.0	3.3*	0.0*	0.0*
	여자	2.1	13.1	75.0	4.1	0.8*	4.9	1.7	11.7	82.2	2.2	0.4*	1.7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5-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유·무별 임금근로자

(단위: %)

	임금근로자 합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외국인	100.0	32.5	60.8	6.7	60.6	34.9	4.6
남자	100.0	34.3	58.4	7.4	68.8	26.7	4.5
여자	100.0	28.8	65.9	5.3	42.8	52.5	4.8
귀화허가자	100.0	58.4	39.9	1.7	59.8	38.5	1.7
남자	100.0	57.4	41.0	1.6*	62.3	36.1	1.6*
여자	100.0	58.7	40.0	1.7	58.7	39.6	1.7
외국인 전체	100.0	32.5	60.8	6.7	60.6	34.9	4.6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100.0	37.7	54.6	7.7	90.2	7.3	2.5
방문취업(H-2)	100.0	23.3	71.6	5.0	40.9	54.3	4.8
전문인력(E-1~E-7)	100.0	34.3	44.8	20.7	61.5	20.4	17.8
유학생(D-2, D-4-1, 7)	100.0	4.1*	88.5	8.2*	4.9*	86.9	8.2*
재외동포(F-4)	100.0	33.0	62.6	4.4	49.4	46.5	4.2
영주(F-5)	100.0	39.9	55.8	4.4	51.7	43.5	4.8
결혼이민(F-2-1, F-6)	100.0	36.0	59.2	4.9	49.0	48.3	2.4*
기타	100.0	26.7	63.9	9.2	46.0	47.8	6.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6. 실업자

6-1.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실업자 합계	실업률(%)	구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이상
외국인	2016년 합계	34.3	3.9	-	-	-	-
	남자	17.1	2.9	-	-	-	-
	여자	17.2	6.0	-	-	-	-
	2017년 합계	34.5	4.0	21.4	7.9	4.3	0.9*
	(구성비)	(100.0)	-	(62.0)	(22.9)	(12.5)	(2.6)
	남자	15.6	2.7	9.7	3.1*	2.2*	0.6*
귀화 허가자	여자	18.8	6.4	11.7	4.8	2.1*	0.3*
	2017년 합계	1.8	5.1	1.0	0.6	0.2*	0.1*
	(구성비)	(100.0)	-	(55.6)	(33.3)	(11.1)	(5.6)
	남자	0.2*	2.8*	0.2*	0.1*	0.0	0.0*
여자	1.6	5.6	0.8	0.5	0.2*	0.1*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6-2. 구직경로별 실업자(복수응답)

(단위: %)

	공공직업 알선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대중매체	학교·학원	친척·친구 ·동료	외국인, 동포 지원 단체 및 기관	기타
외국인	24.9	26.4	44.1	4.3*	51.0	18.0	0.9
남자	23.7*	31.4	29.5	3.8*	58.3	23.1	1.3
여자	26.6	22.3	56.4	4.8*	45.2	13.8*	0.0*
귀화허가자	33.3	22.2	38.9	11.1*	55.6	16.7*	0.0*
남자	50.0*	0.0*	50.0*	0.0	50.0*	0.0*	0.0*
여자	31.3	25.0	37.5	12.5*	50.0	12.5*	0.0*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7. 비경제활동인구

7-1. 활동상태별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 인구 합계	육아·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진학 및 취업준비	쉬었음	기타
이민자 2017년 합계		373.7	151.1	80.3	19.5	71.9	50.8
남자		121.5	10.6	36.6	9.8	40.8	23.7
여자		252.1	140.5	43.7	9.7	31.0	27.1
외국인	2016년 합계	330.2	133.3	70.3	17.5	85.3	23.7
	(구성비)	(100.0)	(40.4)	(21.3)	(5.3)	(25.8)	(7.2)
	남자	101.2	5.8	31.9	9.0	43.9	10.7
	여자	229.0	127.5	38.4	8.6	41.4	13.1
	2017년 합계	356.6	139.8	79.0	19.1	70.3	48.4
	(구성비)	(100.0)	(39.2)	(22.2)	(5.4)	(19.7)	(13.6)
	남자	119.5	10.5	36.0	9.7	40.4	23.0
	여자	237.0	129.3	43.0	9.4	29.9	25.4
귀화 허가자	2017년 합계	17.1	11.3	1.3	0.4	1.6	2.4
	(구성비)	(100.0)	(66.1)	(7.6)	(2.3)	(9.4)	(14.0)
	남자	2.0	0.1*	0.6	0.1*	0.4	0.7
	여자	15.1	11.3	0.7	0.3	1.2	1.7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III. 교육

8. 지난 1년간 교육 또는 훈련 경험 유·무 및 목적(복수응답)

(단위: %)

	이민자 합계	교육훈련 경험 있음	교육 또는 훈련 목적						교육훈련 경험 없음
			창업	(재)취업	업무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체류자격 변경	기타	
외국인	100.0	15.4	5.2	30.8	45.0	17.6	11.2	1.9*	84.6
남자	100.0	15.9	6.1	28.6	52.3	14.6	8.0	1.2*	84.1
여자	100.0	14.6	4.1	33.9	34.3	21.8	15.5	2.8	85.4
귀화허가자	100.0	16.5	6.9	37.9	39.1	21.8	1.1*	2.3*	83.5
남자	100.0	13.2	8.3*	33.3	50.0	16.7*	0.0*	0.0*	86.8
여자	100.0	17.2	6.7	40.0	37.3	22.7	1.3*	2.7*	82.8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9. 한국에서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받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서비스					
	외국인			귀화허가자			외국인			귀화허가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한국어 교육	29.5	27.1	32.7	47.4	16.5	54.1	38.8	42.4	34.0	32.4	16.5	35.8
한국사회 이해 교육	13.5	12.9	14.2	20.5	9.9	22.7	18.1	18.4	17.7	16.7	16.5	16.7
출입국 및 체류관련 교육 또는 상담	20.4	21.0	19.6	14.0	16.5	13.5	13.2	14.4	11.7	4.4	5.5	4.1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	14.1	14.0	14.3	18.6	18.7	18.6	20.9	22.2	19.2	25.0	24.2	25.2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	11.0	11.9	9.8	14.0	9.9	14.7	32.4	33.3	31.2	31.7	35.2	31.0
생활정보 지원서비스	3.3	3.6	2.8	4.0	3.3	4.1	10.5	10.8	10.0	10.4	17.6	8.7
통번역서비스	3.0	3.5	2.4	3.6	1.1*	4.1	5.7	6.5	4.6	2.5	2.2*	2.5
사회활동지원서비스	2.9	2.8	3.0	4.9	1.1*	5.7	5.5	4.7	6.6	6.5	6.6	6.4
임신, 출산 및 가족관련 지원 서비스	3.4	1.0	6.4	18.0	3.3	20.9	3.8	2.2	5.8	7.0	3.3*	7.8
자녀의 학습 및 교육지원 서비스	2.6	1.2	4.4	17.3	4.4	20.0	8.6	4.9	13.4	27.5	14.3	30.3
의료 상담 및 진료 서비스	9.7	10.5	8.6	8.0	7.7	8.0	19.9	18.8	21.5	11.6	17.6	10.3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	3.4	4.3	2.3	3.2	4.4	3.2	16.5	15.4	18.0	18.6	30.8	16.1
기타	0.7	0.9	0.4	0.6*	1.1*	0.5*	0.1	0.1	0.2	0.4*	0.0*	0.2*
없음	41.4	43.7	38.3	28.8	50.5	24.3	1.6	1.8	1.4	1.3	2.2*	0.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IV. 주거 및 생활환경

10. 거처종류 및 점유형태

(단위: 천명, %)

	합계	거처종류				점유형태		
		일반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자기 집	전월세	무상
외국인	1,225.3	701.7	191.5	255.1	76.9	146.6	661.0	417.7
(구성비)	(100.0)	(57.3)	(15.6)	(20.8)	(6.3)	(12.0)	(53.9)	(34.1)
남자	695.7	347.8	84.7	215.3	47.8	48.9	325.3	321.4
여자	529.6	353.9	106.8	39.8	29.1	97.7	335.6	96.3
귀화허가자	52.7	33.0	18.4	0.2*	1.1	26.0	24.0	2.7
(구성비)	(100.0)	(62.6)	(34.9)	(0.4)	(2.1)	(49.3)	(45.5)	(5.1)
남자	9.1	6.4	2.4	0.1*	0.2*	2.9	5.5	0.7
여자	43.6	26.7	16.0	0.1*	0.9	23.1	18.5	2.0
외국인 전체	1,225.3	701.7	191.5	255.1	76.9	146.6	661.0	417.7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255.9	30.0	8.3	184.7	32.9	0.1*	19.0	236.8
방문취업(H-2)	201.5	171.0	11.5	11.0	8.0	5.2	164.2	32.0
전문인력(E-1~E-7)	38.5	15.6	6.7	9.1	7.2	0.4*	14.6	23.6
유학생(D-2, D-4-1, 7)	98.6	57.5	3.5	31.1	6.4	0.1*	84.8	13.7
재외동포(F-4)	277.9	206.0	50.0	11.9	10.1	38.4	198.2	41.3
영주(F-5)	102.7	71.6	28.4	1.3*	1.4*	33.9	61.6	7.2
결혼이민(F-2-1, F-6)	108.5	61.9	43.1	0.2*	3.2*	48.9	53.4	6.2
기타	141.7	88.2	40.0	5.9	7.6	19.6	65.2	56.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1. 전세보증금 규모별 전세 거주자

(단위: 천명, %)

	전세 거주자 합계	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외국인	100.9	1.1*	41.3	40.0	18.6
(구성비)	(100.0)	(1.1)	(40.9)	(39.6)	(18.4)
남자	42.1	0.4*	17.1	16.0	8.7
여자	58.8	0.7*	24.2	23.9	9.9
귀화자	7.9	0.1*	2.7	3.3	1.8
(구성비)	(100.0)	(1.3)	(34.2)	(41.8)	(22.8)
남자	1.8	0.0	0.6	0.8	0.4
여자	6.1	0.1*	2.1	2.5	1.4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2. 월세보증금 규모별 및 월세액 규모별 월세 거주자

(단위: 천명, %)

	월세 거주자 합계	월세 보증금						월세액				
		없음	3백만원 미만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외국인 (구성비)	560.1 (100.0)	66.8 (11.9)	138.9 (24.8)	76.4 (13.6)	133.3 (23.8)	124.2 (22.2)	20.4 (3.6)	68.2 (12.2)	146.4 (26.1)	190.4 (34.0)	83.5 (14.9)	71.7 (12.8)
남자	283.2	37.4	80.5	41.0	64.0	51.8	8.5	38.5	78.3	99.9	34.6	31.9*
여자	276.9	29.4	58.5	35.5	69.2	72.4	11.9	29.8	68.0	90.4	48.9	39.7
귀화허가자 (구성비)	16.1 (100.0)	0.8 (5.0)	2.3 (14.3)	1.6 (9.9)	2.9 (18.0)	7.1 (44.1)	1.4 (8.7)	4.5 (28.0)	3.7 (23.0)	4.0 (24.8)	2.1 (13.0)	1.9* (11.8)
남자	3.8	0.1*	0.3	0.5	0.7	1.7	0.4	0.8*	0.6	1.0	0.7	0.7*
여자	12.4	0.7	2.0	1.1	2.2	5.4	1.0	3.7	3.0	3.0	1.4	1.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3. 지난 1년간 거주지 이동 유·무 및 이동 지역

(단위: 천명, %)

	이민자 합계	거주지 이동 있었음	거주지 이동 지역			거주지 이동 없었음
			이전 거주지와 동일 시군구	이전 거주지와 동일 시도 내 다른 시군구	이전 거주지와 다른 시도	
외국인 (구성비)	1,225.3 (100.0)	138.4 (11.3)	66.0 (5.4)	33.6 (2.7)	38.7 (3.2)	1,086.9 (88.7)
남자	695.7	73.4	31.2	18.0	24.2	622.3
여자	529.6	65.0	34.8	15.6	14.6	464.6
귀화허가자 (구성비)	52.7 (100.0)	4.2 (8.0)	2.6 (4.9)	0.8 (1.5)	0.8 (1.5)	48.6 (92.2)
남자	9.1	0.7	0.4	0.1*	0.2*	8.4
여자	43.6	3.5	2.2	0.6	0.6	40.2
외국인 전체	1,225.3	138.4	66.0	33.6	38.7	1,086.9
비전문취업(E-9)	255.9	24.4	6.9	5.2	12.3	231.5
방문취업(H-2)	201.5	25.9	11.3	7.8	6.7	175.6
전문인력(E-1~E-7)	38.5	4.1	1.6*	1.1*	1.4*	34.5
유학생(D-2, D-4-1, 7)	98.6	14.8	8.8	3.8	2.2	83.8
재외동포(F-4)	277.9	34.8	17.7	8.3	8.8	243.1
영주(F-5)	102.7	10.4	6.7	2.1*	1.6*	92.3
결혼이민(F-2-1, F-6)	108.5	10.3	6.0	2.5*	1.8*	98.2
기타	141.7	13.8	7.1	2.8*	4.0	127.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4.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

(단위: 천명, %)

	합계	직장변경 또는 회사이사	취업	진학	가족 또는 동료와 함께 거주	주택구입 또는 거주면적 확장	더 좋은 주거환경	집세 상승	결혼	기타
외국인	1,225.3	156.0	373.0	76.0	247.6	38.7	121.9	48.8	62.1	101.2
(구성비)	(100.0)	(12.7)	(30.4)	(6.2)	(20.2)	(3.2)	(9.9)	(4.0)	(5.1)	(8.3)
남자	695.7	105.2	293.0	33.9	115.6	17.6	57.4	20.6	6.3	46.1
여자	529.6	50.8	80.0	42.1	132.0	21.1	64.5	28.2	55.8	55.0
귀화허가자	52.7	4.0	2.9	0.4	9.5	5.4	8.7	2.7	13.1	6.1
(구성비)	(100.0)	(7.6)	(5.5)	(0.8)	(18.0)	(10.2)	(16.5)	(5.1)	(24.9)	(11.6)
남자	9.1	1.1	1.0	0.3*	2.1	1.0	1.7	0.6	0.1*	1.2
여자	43.6	3.0	1.9	0.2*	7.4	4.3	7.0	2.1	12.9	4.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V. 소득과 소비

15. 지난 1년 동안 월평균 총소득

(단위: 천명, %)

	합계	없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외국인	1,225.3	287.1	82.4	365.5	394.0	96.2
(구성비)	(100.0)	(23.4)	(6.7)	(29.8)	(32.2)	(7.9)
남자	695.7	85.5	28.9	193.5	302.7	85.0
여자	529.6	201.6	53.4	172.0	91.4	11.2
귀화허가자	52.7	16.5	6.4	18.6	7.9	3.3
(구성비)	(100.0)	(31.3)	(12.1)	(35.3)	(15.0)	(6.3)
남자	9.1	1.4	0.7	1.4	3.4	2.3
여자	43.6	15.1	5.7	17.2	4.5	1.1
외국인 전체	1,225.3	287.1*	82.4*	365.5	394.0	96.2
비전문취업(E-9)	255.9	0.1	0.1	107.6	141.0	7.1
방문취업(H-2)	201.5	22.2	3.6	68.2	84.3	23.2
전문인력(E-1~E-7)	38.5	0.0	0.3*	10.1	18.6	9.5
유학생(D-2, D-4-1, 7)	98.6	33.9	36.5	25.1	2.6*	0.6*
재외동포(F-4)	277.9	75.1	14.3	74.9	87.2	26.5
영주(F-5)	102.7	22.6	6.6	27.4	32.8	13.2
결혼이민(F-2-1, F-6)	108.5	53.6	10.2	26.0	11.0	7.8
기타	141.7	79.6	10.8	26.2	16.6	8.5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6. 연간 해외 송금 횟수

(단위: 천명, %)

	이민자 합계	송금합	연간 송금 횟수								송금 하지 않음
			연 1회	연 2회	연 3회	연 4회	연 5회	연 6회	연 7회~ 연 11회	연 12회 이상	
외국인	1,225.3	494.2	35.4	47.1	32.3	26.5	17.7	29.3	33.2	272.8	731.1
(구성비)	(100.0)	(40.3)	(2.9)	(3.8)	(2.6)	(2.2)	(1.4)	(2.4)	(2.7)	(22.3)	(59.7)
남자	695.7	373.6	17.8	28.9	20.7	18.7	12.4	22.3	25.1	227.8	322.1
여자	529.6	120.6	17.6	18.2	11.6	7.8	5.3	7.0	8.1	44.9	409.0
귀화자	52.7	11.5	2.2	3.0	2.0	1.0	0.4	0.3	0.4	2.2	41.3
(구성비)	(100.0)	(21.8)	(4.2)	(5.7)	(3.8)	(1.9)	(0.8)	(0.6)	(0.8)	(4.2)	(78.4)
남자	9.1	0.9	0.2*	0.2*	0.1*	0.1*	0.0*	0.1*	0.0*	0.3*	8.2
여자	43.6	10.5	2.0	2.8	1.9	0.9	0.4	0.3	0.4	1.9	33.1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7. 연간 해외 송금액

(단위: 천명, %)

	송금하는 이민자 합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외국인	494.2	18.9	43.4	29.5	40.5	88.7	124.0	88.2	61.0
(구성비)	(100.0)	(3.8)	(8.8)	(6.0)	(8.2)	(17.9)	(25.1)	(17.8)	(12.3)
남자	373.6	8.3	24.4	15.4	22.5	59.1	103.5	81.4	59.0
여자	120.6	10.6	18.9	14.1	18.0	29.6	20.5	6.8	2.0*
귀화허가자	11.5	2.7	3.5	1.9	1.4	1.4	0.5	0.0*	0.1*
(구성비)	(100.0)	(23.5)	(30.4)	(16.5)	(12.2)	(12.2)	(4.3)	(0.0)	(0.9)
남자	0.9	0.0*	0.2*	0.2*	0.1*	0.2*	0.2*	0.0*	0.0*
여자	10.5	2.7	3.3	1.7	1.3	1.2	0.3	0.0*	0.1*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8. 총소득대비 지출부문별 구성비

(단위: %)

		합계	생활비	주거비	국내외 송금	저축	기타
	외국인	100.0	40.7	12.0	24.9	15.7	6.7
	남자	100.0	36.6	9.7	32.2	14.7	6.8
	여자	100.0	48.2	16.2	11.5	17.6	6.5
	귀화허가자	100.0	54.6	12.3	5.3	19.4	8.4
	남자	100.0	53.7	13.0	2.5	20.8	10.0
	여자	100.0	54.9	12.1	6.0	19.1	8.0
체류 자격	외국인 전체	100.0	40.7	12.0	24.9	15.7	6.7
	비전문취업(E-9)	100.0	20.9	1.5	61.9	9.3	6.4
	방문취업(H-2)	100.0	44.0	15.7	15.0	19.0	6.4
	전문인력(E-1~E-7)	100.0	35.6	9.3	21.0	25.6	8.5
	유학생(D-2, D-4-1, 7)	100.0	62.1	31.0	0.6*	3.3	2.9
	재외동포(F-4)	100.0	46.9	15.6	9.1	21.1	7.3
	영주(F-5)	100.0	52.1	13.3	6.0	19.9	8.6
	결혼이민(F-2-1, F-6)	100.0	53.8	10.9	10.3	16.5	8.4
	기타	100.0	46.6	13.5	18.6	15.6	5.7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19.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및 유형(복수응답)

(단위: %)

	합계	경험 함	경제적 어려움 유형(복수응답)					경험 하지 않음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함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음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음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음	기타		
외국인	100.0	11.6	44.6	24.6	13.7	15.5	24.5	88.4	
남자	100.0	10.7	41.9	26.8	14.1	12.0	25.0	89.3	
여자	100.0	12.8	47.6	22.3	13.3	19.3	23.9	87.2	
귀화허가자	100.0	15.9	35.7	19.0	10.7	25.0	27.4	84.3	
남자	100.0	14.3	46.2	15.4	15.4	23.1	23.1	85.7	
여자	100.0	16.3	33.8	21.1	9.9	25.4	28.2	83.9	
외국인 전체	100.0	11.6	44.6	24.6	13.7	15.5	24.5	88.4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100.0	4.8	34.4*	40.2*	7.4*	1.6*	30.3*	95.2
	방문취업(H-2)	100.0	11.6	50.0	11.1*	20.1	13.7	22.6	88.3
	전문인력(E-1~E-7)	100.0	3.6*	35.7*	42.9*	7.1*	50.0*	7.1*	96.4
	유학생(D-2, D-4-1, 7)	100.0	16.4	29.0	51.9	1.9*	21.0	34.6	83.6
	재외동포(F-4)	100.0	14.4	60.6	14.7	18.0	14.2	15.7	85.6
	영주(F-5)	100.0	15.2	38.5	28.2	14.1*	12.8*	23.1	84.7
	결혼이민(F-2-1, F-6)	100.0	12.4	22.2	31.1	12.6*	27.4	26.7	87.6
	기타	100.0	13.8	45.4	20.4	11.7*	15.3	33.2	86.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20.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유·무

(단위: %)

	합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가입	미가입	모르겠음
외국인	100.0	73.3	24.5	2.2	20.6	73.2	6.2
남자	100.0	75.7	22.0	2.3	25.4	67.0	7.6
여자	100.0	70.1	27.7	2.2	14.3	81.3	4.4
귀화허가자	100.0	95.4	4.0	0.6	39.8	57.7	2.5
남자	100.0	95.6	3.3	0.0*	48.4	50.5	2.2
여자	100.0	95.2	4.1	0.7	38.1	59.2	2.8
외국인 전체	100.0	73.3	24.5	2.2	20.6	73.2	6.2
체류 자격							
비전문취업(E-9)	100.0	90.7	7.3	2.0	30.6	57.1	12.2
방문취업(H-2)	100.0	62.7	36.1	1.1	22.4	73.8	3.7
전문인력(E-1~E-7)	100.0	84.9	10.4	4.7	43.6	44.7	11.9
유학생(D-2, D-4-1, 7)	100.0	40.3	53.3	6.4	0.0	93.9	6.1
재외동포(F-4)	100.0	73.4	25.3	1.3	23.0	73.7	3.3
영주(F-5)	100.0	90.2	8.5	1.3	26.1	69.7	4.2
결혼이민(F-2-1, F-6)	100.0	92.8	6.4	0.8	10.2	84.3	5.4
기타	100.0	49.0	46.8	4.2	6.8	87.9	5.3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VI. 자녀교육

21. 지난 1년간 자녀교육에서 어려웠던 사항(복수응답)

(단위: %)

	알림장 챙기기	숙제지도	학교생활 부적응	성적문제 및 학습부진	정서, 행동 상의 어려움	어려움 없었음	기타
외국인	13.8	16.2	5.3	5.5	3.6	64.2	9.3
남자	8.6	12.8	3.9*	4.9*	2.6*	70.1	8.1
여자	16.0	17.7	5.9	5.7	4.1	61.4	9.8
귀화허가자	18.9	30.1	4.7	7.1	5.3	54.0	8.7
남자	10.7	17.9	3.6*	3.6*	3.6*	67.9	10.7*
여자	19.7	31.3	4.8	7.5	5.4	52.7	8.5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22. 자녀 학교(유치원, 어린이집)에 참여 정도

(단위: %)

	합계	적극적으로 참여	참여하는 편임	보통	참여하지 않은 편임	전혀 참여하지 않음
외국인	100.0	16.8	23.9	19.3	17.6	22.4
남자	100.0	16.5	21.0	17.1	18.5	26.9
여자	100.0	17.1	25.2	20.3	17.1	20.4
귀화허가자	100.0	20.2	27.6	21.7	18.9	11.5
남자	100.0	17.9	17.9	17.9	25.0	25.0
여자	100.0	20.4	28.9	22.1	18.4	10.2

23. 소득대비 자녀 교육비의 부담 정도

(단위: %)

	합계	매우 부담됨	약간 부담됨	보통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외국인	100.0	17.0	24.2	23.7	18.5	16.7
남자	100.0	19.6	27.3	21.6	15.3	16.1
여자	100.0	15.7	22.8	24.6	19.9	17.0
귀화허가자	100.0	12.1	28.6	26.1	21.1	12.1
남자	100.0	17.9	28.6	17.9	17.9	17.9
여자	100.0	11.6	28.6	26.5	21.8	11.6

24. 가장 부담스런 자녀 교육비 종류

(단위: %)

	합계	학교 납입금	보충교육비	교재비	기타
외국인	100.0	30.7	67.4	0.6*	1.3*
남자	100.0	38.9	60.3	0.4*	0.4*
여자	100.0	26.1	71.4	0.7*	1.8*
귀화허가자	100.0	8.4	88.5	3.1	0.0*
남자	100.0	15.4*	84.6	0.0*	0.0
여자	100.0	7.6	89.0	3.4	0.0*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Ⅶ. 체류사향

25. 한국 체류기간

(단위: %)

		구성비 합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외국인		100.0	1.8	8.6	26.0	21.5	26.4	15.7	
	남자	100.0	1.7	8.5	26.8	22.0	26.5	14.6	
	여자	100.0	1.9	8.7	25.0	20.9	26.3	17.3	
귀화허가자		100.0	0.0	0.0	0.9	6.8	57.9	34.3	
	남자	100.0	0.0	0.0	3.3*	9.9	38.5	48.4	
	여자	100.0	0.0	0.0	0.5*	6.2	62.2	31.4	
체류 자격	2016년	외국인 전체	100.0	1.7	8.6	29.9	22.1	25.2	12.5
		비전문취업(E-9)	100.0	2.1	10.6	42.2	34.6	10.3	0.1
		방문취업(H-2)	100.0	1.5	6.7	35.3	16.8	25.8	13.9
		전문인력(E-1~E-7)	100.0	1.3	18.6	37.4	19.8	18.2	4.7
		유학생(D-2, D-4-1, 7)	100.0	2.7	19.2	46.8	21.3	9.7	0.3
		재외동포(F-4)	100.0	1.8	5.0	20.4	18.7	36.8	17.2
		영주(F-5)	100.0	0.0	0.0	1.4	12.4	43.8	42.3
		결혼이민(F-2-1, F-6)	100.0	1.0	5.1	15.2	20.0	40.2	18.5
		기타	100.0	2.6	13.9	34.5	23.5	17.0	8.5
	2017년	외국인 전체	100.0	1.8	8.6	26.0	21.5	26.3	15.7
		비전문취업(E-9)	100.0	2.0	9.3	37.1	26.3	24.3	0.9
		방문취업(H-2)	100.0	1.1*	6.2	25.0	31.0	20.5	16.2
		전문인력(E-1~E-7)	100.0	2.6*	22.9	34.3	13.2	21.8	5.5
		유학생(D-2, D-4-1, 7)	100.0	5.3	23.5	46.1	16.7	8.0	0.2
		재외동포(F-4)	100.0	0.9	4.3	17.8	18.9	35.6	22.4
		영주(F-5)	100.0	0.0	0.4*	0.9*	5.7	39.7	53.1
		결혼이민(F-2-1, F-6)	100.0	0.9*	5.2	12.4	23.9	36.7	20.9
		기타	100.0	3.2	13.1	36.2	19.8	16.4	11.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26.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연장방법

(단위: %)

		구성비 합계	계속 체류 희망	체류연장방법					계속 체류 희망하지 않음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자격 취득	한국국적 취득	기타		
외국인	2016년	합계	100.0	86.3	56.2	8.0	13.4	8.2	0.4	13.7
		남자	100.0	85.7	61.3	8.2	12.0	3.8	0.4	14.3
		여자	100.0	87.2	49.2	7.9	15.4	14.2	0.5	12.8
	2017년	합계	100.0	86.1	49.8	8.0	17.4	10.8	0.1*	13.9
		남자	100.0	84.6	55.4	8.0	15.4	5.8	0.1*	15.4
		여자	100.0	88.1	42.2	7.9	20.2	17.6	0.2*	11.9
체류 자격	2016년	전체	100.0	86.3	56.2	8.0	13.4	8.2	0.4	13.7
		비전문취업(E-9)	100.0	81.5	75.1	3.8	1.4	1.0	0.3	18.5
		방문취업(H-2)	100.0	93.5	55.9	16.7	17.9	2.7	0.3	6.5
		전문인력(E-1~E-7)	100.0	74.6	60.7	4.7	7.7	1.4	0.0	25.4
		유학생(D-2, D-4-1, 7)	100.0	66.9	43.7	16.5	4.8	0.8	1.1	33.1
		재외동포(F-4)	100.0	91.1	57.7	3.4	22.2	7.3	0.6	8.9
		결혼이민(F-2-1, F-6)	100.0	98.0	22.5	3.0	23.6	48.3	0.6	2.0
		기타	100.0	80.5	52.1	9.6	11.6	6.8	0.4	19.5
	2017년	전체	100.0	86.1	49.8	8.0	17.4	10.8	0.1	13.9
		비전문취업(E-9)	100.0	76.7	67.1	5.5	2.7	1.4*	0.0	23.3
		방문취업(H-2)	100.0	95.1	46.8	16.7	25.1	6.5	0.0	4.9
		전문인력(E-1~E-7)	100.0	79.0	57.9	7.0	11.7	2.1*	0.3*	21.3
		유학생(D-2, D-4-1, 7)	100.0	61.2	40.2	13.5	5.0	1.6*	0.8*	38.8
		재외동포(F-4)	100.0	94.5	50.5	4.2	30.0	9.8	0.1*	5.5
		결혼이민(F-2-1, F-6)	100.0	98.1	18.5	3.3	19.4	56.7	0.2*	1.9
기타		100.0	84.0	50.2	7.3	17.1	9.4	0.1*	16.0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Ⅷ.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 외국인

2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상주인구

(단위: 천명)

		2016년	2017년
전체		258.3	255.9
성별	남자	235.3	233.6
	여자	23.1	22.3
국적	캄보디아	34.8	33.9
	네팔	25.6	27.1
	인도네시아	31.8	29.2
	베트남	39.5	37.2
	필리핀	23.1	24.9
	태국	22.1	23.6
	미얀마	17.4	18.4
	기타	64.1	61.5
거주지역	수도권	116.7	115.3
	서울	3.6	3.4
	경기·인천	113.1	111.9
	비수도권	141.6	140.6
	부산·울산·경남	52.5	49.5
	대전·세종·충남북	31.8	33.9
	대구·경북	27.5	26.9
	광주·전남북	23.4	23.7
	강원·제주	6.5	6.7
연령	15~29세	127.2	123.8
	30~39세	106.2	107.3
	40~49세	21.9	22.6
	50~59세	2.1	1.8
	60세 이상	0.9	0.4

28. 해외 취업지로 한국 선택 이유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합계	임금이 높아서	작업환경이 좋아서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친구, 친인척 권고로	다른 국가에 비해 취업하기 쉬워서	기타
비전문취업 (구성비)	255.9 (100.0)	187.1 (73.1)	26.5 (10.4)	19.9 (7.8)	11.5 (4.5)	11.0* (4.3)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29. 근로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인지 정도

(단위: 천명, %)

	비전문취업 합계	매우 잘 알고 있었음	다소 알고 있었음	별로 알지 못했음	전혀 몰랐음
비전문취업 (구성비)	255.9 (100.0)	70.5 (27.5)	137.2 (53.6)	39.0 (15.2)	9.2 (3.6)

30. 지난 1년간 한국 내 직장에서 경험한 사항들(복수응답)

(단위: %)

	작업 중 부상	작업으로 인한 질병	임금체불 또는 부당해고	빠른작업 속도에 기인한 어려움	직장 내 한국인과 갈등	욕설	기타*	해당사항 없음
비전문취업	6.1	4.3	4.1	8.1	4.4	5.2	2.7	75.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1. 지난 1년간 경험한 부상의 주된 원인 및 치료비 지불방법

(단위: %)

	합계	부상의 주된 원인					치료비 지불 방법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	사용 방법을 몰라서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보호구 미착용	한국말을 몰라서	실수로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처리	사업주 전액 부담	기타
비전문취업	100.0	6.4*	5.1*	7.0*	11.5*	70.1	29.3	40.8	29.9*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2. 이전 직장 퇴사 사유

(단위: %)

	합계	임금이 낮아서	일이 힘들거나 위험해서	숙소 또는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임금이 체불되어서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기타
비전문취업	100.0	24.3	16.1	5.2	5.9	5.5	27.5	15.5*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IX. 유학생(D-2, D-4-1, D-4-7) 체류자격 외국인

33. 유학생 체류자격 상주인구

(단위: 천명)

		2016년	2017년
전체		85.6	98.6
성별	남자	37.5	44.1
	여자	48.1	54.5
국적	중국	46.8	47.8
	베트남	9.3	17.9
	몽골	5.1	6.0
	기타	24.4	27.0
연령	15~29세	78.0	90.2
	30~39세	6.9	7.6
	40~49세	0.6	0.7
	50~59세	0.1	0.1
	60세 이상	0.0	0.0
거주지역	수도권	46.2	52.5
	서울	32.6	37.1
	경기·인천	13.6	15.5
	비수도권	39.4	46.1
	부산·울산·경남	8.8	10.6
	대전·세종·충남북	12.4	13.4
	대구·경북	7.8	8.9
	광주·전남북	7.2	9.4
	강원·제주	3.2	3.7

34.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1순위)

(단위: 천명, %)

	합계	교육과정 우수해서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분야와 잘 맞아서	한국관련 공부를 위해	한국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가족, 친구, 교수 등의 권유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으로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21.3 (21.6)	23.1 (23.4)	9.9 (10.0)	10.8 (11.0)	5.2 (5.3)	7.6 (7.7)	7.3 (7.4)	13.4* (13.6)
남자	44.1	12.1	9.6	3.9	5.8	2.8	3.3	1.8	4.8*
여자	54.5	9.2	13.5	6.0	4.9	2.4*	4.3	5.6	8.7*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5.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

(단위: 천명, %)

	합계	한국학	교육, 예술 및 인문학	사회과학 연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	어학연수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9.6 (9.7)	16.8 (17.0)	30.4 (30.8)	8.1 (8.2)	14.8 (15.0)	16.3 (16.5)	2.7 (2.7)
남자	44.1	2.3	5.0	13.3	3.7	10.9	7.5	1.4
여자	54.5	7.3	11.8	17.0	4.5	3.9	8.7	1.3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6.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합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유학생	100.0	46.0	39.0	12.8	1.9*	0.2*
남자	100.0	44.4	39.5	13.2	2.7*	0.2*
여자	100.0	47.3	38.7	12.5	1.3*	0.4*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7. 한국에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 방법(1순위)

37-1. 한국에서 학비 마련 방법(1순위)

(단위: 천명, %)

	합계	한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본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모아 놓은 돈	부모님 지원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12.8 (13.0)	4.2 (4.3)	19.6 (19.9)	4.6 (4.7)	55.3 (56.1)	2.1* (2.1)
남자	44.1	7.2	2.4*	7.6	2.2*	23.8	0.9*
여자	54.5	5.6	1.8*	12.0	2.5*	31.5	1.2*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7-2. 한국에서 생활비 마련 방법(1순위)

(단위: 천명, %)

	합계	한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본국 정부 또는 기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모아 놓은 돈	부모님 지원	아르바이트	기타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10.7 (10.9)	2.9 (2.9)	8.3 (8.4)	8.1 (8.2)	61.4 (62.3)	5.3 (5.4)	1.8* (1.8)
남자	44.1	6.1	2.0*	3.1	3.6	26.0	2.6*	0.6*
여자	54.5	4.6	0.9*	5.1	4.5	35.4	2.7	1.3*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38. 졸업 후 향후 계획

(단위: 천명, %)

	합계	한국에 계속 체류	향후 계획			본국으로 출국	제3국으로 출국	향후 계획			
			취업	진학	기타			취업	진학	기타	
2016년	유학생 (구성비)	85.6 (100.0)	- (56.1)	- (33.0)	- (22.2)	- (0.8)	- (41.4)	- (2.5)	- -	- -	- -
	남자 (구성비)	37.5 (100.0)	- (57.2)	- (35.5)	- (21.0)	- (0.7)	- (39.8)	- (3.0)	- -	- -	- -
	여자 (구성비)	48.1 (100.0)	- (55.2)	- (31.0)	- (23.2)	- (1.0)	- (42.6)	- (2.2)	- -	- -	- -
2017년	유학생 (구성비)	98.6 (100.0)	40.6 (41.2)	23.7 (24.0)	16.6 (16.8)	0.2* (0.2)	47.4 (48.1)	10.6 (10.8)	3.6 (3.7)	7.0 (7.1)	0.0* (0.0)
	남자 (구성비)	44.1 (100.0)	18.1 (41.0)	11.1 (25.2)	6.8 (15.4)	0.2* (0.5)	21.1 (47.8)	4.9 (11.1)	1.3* (2.9)	3.6 (8.2)	0.0* (0.0)
	여자 (구성비)	54.5 (100.0)	22.5 (41.3)	12.6 (23.1)	9.9 (18.2)	0.0 (0.0)	26.3 (48.3)	5.7 (10.5)	2.3* (4.2)	3.5 (6.4)	0.0 (0.0)

주) 상대표준오차(RSE)가 25% 이상인 경우 「*」 표시를 하였음

부 록

-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요

- 외국인의 체류자격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직업분류

조사목적

-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한국 생활실태, 취업 및 실업현황을 파악하여 이민자관련 사회통합정책, 인력정책 등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920018호)

 모집단

- '17년 5월 15일 현재, 상주인구*기준 만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12.1.1~'17.5.15) 귀화허가자

* '17년 5월 15일 현재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체류자

** 체류자격 A와 단기 체류자격(B, C)으로 91일 이상 계속 불법체류하고 있는 **단기불법 체류자는 제외**

 조사대상

- 외국인 또는 귀화허가자 **개인**

- 외국인 : 외국인등록명부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표본 1만명)

- 귀화허가자 : 외국인으로 '12년 1월 1일 이후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자(표본 4천명)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17.5.15
- 조사대상기간 : '17.5.14(일)~5.20(토)
- 조사실시기간 : '17.5.23~6.6(15일)

 조사지역

- 조사지역 : 층화단순임의추출방법으로 선정된 17개시·도 90개 시·군·구

□ 조사방법

-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고용한 임시조사원이 표본 외국인 또는 귀화 허가자를 직접 면접조사(표본이 희망하는 경우 조사표 직접 작성 허용)

□ 조사항목

- 공통조사표 :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 7개 부문(기본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 129개 조사항목

부문	주요조사항목
기본 항목(33)	성별, 출생지, 종교, 국적, 학력, 배우자, 가구원 등
고용(51)	취업, 일한 시간, 직장, 임금, 직장만족도, 한국인과 비교 등
교육(7)	교육 또는 훈련 경험, 목적, 받은 또는 받고 싶은 교육과 지원서비스 등,
주거 및 생활환경(7)	거처종류, 점유형태, 임차료, 거주지 이동 유·무 등
소득과 소비(14)	월평균 총 소득, 지출부문별 비율, 해외 송금 횟수 및 연간 송금액, 경제적 어려움 경험 유·무 및 경험 사항 등
자녀교육(6)	자녀교육에서 겪은 어려움, 자녀학교 참여도, 교육비 부담 정도 등
체류사항(11)	한국체류기간, 체류자격 변경 유무 및 내용, 향후 계속 체류 희망 여부 및 체류연장 방법 등

* '18년은 6개 부문(기본항목, 고용, 보건 및 정보화, 한국생활, 한국어 능력, 체류사항) 조사예정

- 부가조사표 : 비전문취업(E-9) 또는 유학생(D-2, D-4-1, D-4-7)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조사

* '18년은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조사 예정

- 비전문취업 부가조사표 : 취업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직장에서 경험한 사항, 이전 직장 퇴사 사유 등 16개 조사항목 조사
- 유학생 부가조사표 :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 공부하고 있는 주전공, 졸업 후 계획 등 21개 조사항목 조사

□ 주요 용어

- 이민자 :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총칭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음
- 귀화허가자: 외국인으로 법무부로부터 한국으로 귀화를 허가 받은 자 (국적법 4조~8조에 해당)
- 15세 이상 인구 : '17년 5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취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 동일 가구 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100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를 유형화한 것으로 크게 8개 계열의 36개 체류자격이 있음
- 유학생 : 체류자격 유학(D-2), 한국어연수(D-4-1) 및 외국어연수(D-4-7)에 해당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 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 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 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7. 삭제 <2011.11.1>	
8.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단기취업(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유 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2.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13.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유학(D-2)·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 전문(全文) 임<개정 2016.7.5.>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6. 주재(D-7)	<p>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 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p> <p>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 받으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17. 기업투자(D-8)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p>
18. 무역경영(D-9)	<p>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18의2. 구직(D-10)	<p>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19. 교수(E-1)	<p>「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p>
20. 회화지도(E-2)	<p>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p>
21. 연구(E-3)	<p>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22. 기술지도(E-4)	<p>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p>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5의2. 삭제 <2007.6.1>	
25의3. 비전문취업 (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5의4. 선원취업 (E-10)	<p>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나.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p>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p>
26. 방문동거(F-1)	<p>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바목 또는 영주(F-5) 가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거주(F-2)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 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 동반(F-3)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8의2. 재외동포 (F-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8의3. 영주(F-5)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p>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p>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8의3. 영주(F-5)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p> <p>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 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品行,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品行,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品行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28의4. 결혼이민(F-6)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29. 기타(G-1)	<p>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30. 관광취업(H-1)	<p>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p>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31. 방문취업(H2)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p>나. 활동범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소금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체류자격 (기 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31. 방문취업(H2)	<p>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p> <p>카) 산동물 도매업(46205)</p> <p>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p> <p>파) 가정용품 도매업(464)</p> <p>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p> <p>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p> <p>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p> <p>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p> <p>러) 무점포 소매업(479)</p> <p>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p> <p>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p> <p>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p> <p>어) 여관업(55112)</p> <p>저) 일반 음식점업(5611)</p> <p>처) 기타 음식점업(5619)</p> <p>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p> <p>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p> <p>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p> <p>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p> <p>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p> <p>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p> <p>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p> <p>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p> <p>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p> <p>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p> <p>소) 욕탕업(96121)</p> <p>오) 산업용 세탁업(96911)</p> <p>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p> <p>초) 가구 내 고용활동(97)</p>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08 광업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 14 의복,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1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6 전자·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정밀·광학기·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D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 35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 36 수도사업

E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 37 하수·폐수·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처리·원료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42 전문직별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 소매업

H 운수업

- 49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 58 출판업
- 59 영상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통신업
- 62 컴퓨터·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 부동산업
- 69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예술·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는 자기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9차 개정(2008년) 기준

1 관리자

-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이미지·예식·의료보조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판매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직
- 53 방문·노점·통신 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8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처리관련 기계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직
-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 제6차 개정(2007년) 기준

